

발간등록번호

2009-서울건강가정-문화다문화가족사업-09

서울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한  
**2009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교재**

- 일 시 : 2009년 6월 17일(수)~6월 19일(금) 09:30~17:30
- 장 소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층 교육실
- 주 최 :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주 관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 후 원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보급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교재

진행: 다문화가족팀

◆ 일 정 ◆

월 일	시간	내 용	비 고
6.17 (수)	09:10 ~09:40	등록 접수 센터장 인사 (송향섭 센터장)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안내 및 일정소개	등록 및 진행 김연화, 윤송희(다문화가족팀)
	09:40 ~12:30	o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통합을 꾀하는 문화교양자 - 최근 결혼이민자 현황 - 다문화 가족 관련법과 서비스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다문화 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내용과 역할  - 서울시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실태	양심영 교수 (송의여자대학 사회복지과)  장명선 연구위원 (서울여성가족재단)
	12:30 ~13:30	중식	
	13:30 ~15:30	o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자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실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과정-	강기정 교수 (백석대학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15:30 ~15:50	휴 식	
	15:30 ~17:30	o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인권 실천가 - 국제결혼 현황 - 가정폭력 실태 및 이를 조장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 정착과정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법적 쟁점 -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형태의 문제 -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장서연 변호사

월 일	시간	내 용	비 고
6.18 (목)	09:10 ~09:30	등록 및 밀정안내	다문화가족팀
	09:30 ~12:30	<b>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b> - 생활 및 생활설계 - 가정생활 영역에 따른 가정생활진단: 다양한 삶의 영역 - 생활설계의 방법	이영호 센터장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12:30 ~13:30	중 식	
	13:30 ~15:30	<b>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자</b> - 이민법, - 의료, 출산/양육, 자녀지도, 고용, 생활보장, 그외 정보	홍미기 교수 (송의여자대학 사회복지과)
	15:30 ~15:50	휴 식	
	15:30 ~17:30	<b>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사례</b> - 일본, 베트남, 중국 결혼이민여성 3인 사례발표 - 질의 응답	진행: 다문화가족팀장 사례발표: 중구, 중랑구 센터 등 이용자

월 일	시간	내 용	비 고
6.19 (금)	09:10 ~09:30	등록 및 밀정안내	다문화가족팀
	09:40 ~12:30	<b>다문화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1</b> <b>: 가족관계</b> -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관계 - 가족 의사소통	박정운 교수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12:30 ~13:30	중 식	
	13:30 ~15:30	<b>다문화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2</b> <b>: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비생활교육</b> - 필요성 - 소비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 재정관리에 대한 이해 - 조별 토론: 결혼이민자 가족대상 소비생활, 경제교육	계선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15:30 ~15:50	휴 식	
	15:50 ~17:15	<b>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를 위한 사업 안내 및 토론</b> - 사업개요, 관련서식 소개 및 문서작성요령 - 자치구 센터, 서울시센터, 다문화가족과의 관계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토론 및 발표	김연화 다문화가족팀장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7:15 ~17:30	○ 센터장 인사말 ○ 공지사항 ○ 수료식 및 평가	진행: 김연화 팀장 윤송희 주임	

\* 보수교육: 자치구 센터별 7월~10월 중 3시간/ 시센터 주관 보수교육 및 사례관리 9월 9일(3시간) 예정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양 심 영 교수(승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 1. 최근 결혼이민자 현황

### ○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 '08. 5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가 144,385명으로 주요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임
- '07. 12월 현재 총 혼인 건수 중 국제결혼이 11.1%이고, 이중 한국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8.4%임(통계청, 2008)
- 2007년도 전체 이혼건수 중 국제결혼부부의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1%인데, 이는 2005년의 3.3%, 2006년의 5.0%보다 크게 늘어난 것임(통계청 2008)
-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은 경기(27.3%), 서울(25.3%), 인천(5.8%) 등 수도권에 58.3%가 집중 거주함
- 다문화가족 자녀는 58,007명으로 전체 아동의 6.5%에 해당하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06년 25천명 → '07년 44천명 → '08년 58천명)
- 6세 이하는 57.1%, 만 7~12세가 32.2%로 영·유아가 대다수를 차지

### ○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함.

- 재중동포 이외에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며, 시부모와 갈등도 언어소통, 문화차이(45%)로 인해 발생(보건복지가족부 실태조사, 2005)
- 저소득 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이며, 결혼이민자는 취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
- 전체 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3.7% 임(복지부, 2005)
-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률은 34% 임(여성가족부 실태조사, 2006)
-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함
- 이민자가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로움”(22.3%)과 문화차이”(14.6%)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문제”(13.8%), “경제문제”(12.1%), “언어문제”(11.5%), “가족갈등”(3.5%), “주위의 시선이나 태도 등을 의식하는 것”(3.1%), 음식이나 기후(3.0%) 등임(여성가족부, 2006).

### ○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학교·사회 적응곤란으로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

있음

-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인지발달 지체 발생 가능성
- 아동 언어지능 및 학업수행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임( '07년 국제결혼가정 자녀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 다문화 영유아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17%)은 일반가정의 1/3 수준으로 매우 취약함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2006)
- 학교·사회의 차별,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 우려
- 다문화 아동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 경험(교육과학부, 2006)
- 결혼이민자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중학생 10명 중 2명 중도탈락(교육과학부, 2006)

○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 보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

- 이혼 후 자녀를 무단으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주호치민총영사관이 파악 중인 호치민일대 외가집에 버려진 한국 아동은 16명( '08, 5월)

## 2.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 가족

### 1) 다문화주의

-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모든 집단이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이념. 그러므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늠하는 기준은 외국인 집단에 대한 지원정도의 양적규모나 총합이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성의 원리에 얼마나 충족되느냐임.
- 다문화주의는 시민으로 하여금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도록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행위를 시행하는 것임.
- 대통령 산하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정부 주도형 다문화주의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음

### 2) 개인차원에서의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Berry(1997)는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제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받았음. 문화적응 모델은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사회정체감 이론을 근거로 하여 발달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두 가

지 차원이란 첫째,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둘째,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임.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을 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sation)가 됨.

이를 그림으로 설명으로 다음 표와 같음.

< 표 1 > 개인차원에서의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2차원		1차원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 3) 집단사회 차원에서의 Berry의 문화적응유형

거대한 사회가 다양성을 받아들여지면 다원화된 문화주의를 표방하게 됨(Berry, 1980). 거시사회가 주류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문화집단의 정체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화개조주의로 나아갈 것이고, 주류문화와의 관계보다는 하나의 문화집단의 정체성과 특성을 존중하면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고, 주류사회와 각각의 문화집단의 특성과 정체성이 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배제주의인 것임. 거시사회가 문화적 사회통합에 있어 다원화문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함.

< 표 2 > 집단사회 차원에서의 문화적응유형

2차원		1차원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문화개조(Melting Pot)
	아니다	분리(Segregation)	배제(Exclusion)

### 4) 이민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정책 유형

- 이민유입국 사회의 이민자 통합 정책의 유형은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세 범주로 구분됨.

첫째, 차별 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3D 직종의 노동시장과 같은 특정 경제적 영역에만 받아들이고, 복지혜택, 국적, 시민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사회적 영역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함.

1960년대 독일에서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때, 사용한 손님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는 차별배제모형의 전형적인 예이다. 한국사회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 역시 이러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음.

둘째, 동화모형(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완전히 포기해 주류 사회의 성원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음. 동화모형은 유입국 사회가 자국 사회의 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민자에게 문화적 동화를 대가로 치르는 조건으로 “국민”으로 합류하는 것을 허용함. 즉 다양한 나라 출신의 이민자는 주류 사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용광로에서 섞여져 결국은 그 출신국별 고유성을 잃고 단일한 성격의 국민으로 용해된다. 프랑스 사회가 대표적인 사례임.

셋째,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만의 문화를 지켜가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의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아닌 공존에 둠. 1970년대 이후 캐나다, 호주, 미국 사회는 그 전까지 추구했던 동화모형을 포기하고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이민자 통합방식을 변경했음. 다문화주의 모형은 다양한 문화나 가치, 다양한 민족 집단과 그들의 개별적인 언어와 습관들을 그대로 한 나라 속에 공존시키는 정책임. 다문화주의 모형은 타문화, 타언어, 이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국민통합 정책으로 파악됨.

한편, 다문화주의 모형은 문화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세분할 수 있음. 이 두 개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제로 하는 조건과 실현방법이 다름.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는 주류사회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지만,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인정돼야 함을 강조함. 미국에서는 문화다원주의를 사회통합의 원리로 적용하고 캐나다, 호주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고 있음.

##### 5)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1997년 전면 개정된 국적법에서부터 한국은 가족 성원에 대한 국적 다양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그 전 국적법의 경우 가족국적 동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음. 그 결과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할 때 그 처와 미성년의 자녀는 본국법에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음.

이 제도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것으로서 인권을 무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97년 개정 국적법 이후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은 가족성원의 국적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일민족



국가에서 다인종 국가임을 인정한 의미를 담게 됐다.

그러나, 세계일보 설문조사에서 “소수민족이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소수집단이 그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기(34.8%)보다는 전체사회에 적응하고 섞이는 것이 사회에 더 좋다(50.5%)라고 나온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다문화주의 모델에 이르고 있지는 못하는 것을 보여줌. 또는 다문화주의 모델에 접근하더라도 다문화주의보다는 문화다원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 3. 다문화가족 관련 법과 서비스

#### 1)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현황

< 표 3 >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의 현황 ( 2008 기준)

관련 제도	해당부처	제정일시 (시행일시)	제도 목적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2005.8.4. 개정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무부	2007.5.17. (2007.7.18.)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적응하여 개인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국적법	법무부	2007.7.5.개정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 가족부	2007.12.14 (2008.6.15.)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 가족부	2008.3.21. (2008.9.2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결혼이민자 등 재한 외국인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법임
-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크게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를 들 수 있는데, 재한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제2조 제1항)’를 의미하며,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험이 있거나 혼인상태에 있는 재한외국인(제2조 제3항)’을 의미함
- 이 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처우는 ①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제10조), ② 재

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제11조), ③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제12조), ④ 영주권자 및 난민의 처우(제13조, 제14조), ⑤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관한 내용(제18조, 제19조) 등의 내용을 포함함.

### 3)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9 시행)

-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해교육과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 ②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이 원만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제공한다.
- ④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제8조)  
외국어통역서비스를 갖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⑤ 산전 산후 건강관리를 도와준다. (제9조)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다문화가족의 자녀 교육을 지원한다. (제10조)  
다문화가족 아동의 취학 전 보육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 ⑦ 다국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다국어로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한다.
- ⑧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한다. (제12조)  
전국 80여 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 4) 현행 서비스

####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 ①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결혼이민예정자에게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 결혼이민자 입국 전·후 지원 프로그램 연계
  - 한국인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체계화

○ 한국인 예비배우자의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㉔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

- 한국어교육 다각화, 전문화
- 통·번역 요원 파견서비스 등 제공
- 보건소 통역서비스 확대
- 생활, 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
- TV 등 방송매체 활용 정보제공 활성화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건강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확대
- 자활사업 적용 대상 확대
- 긴급 지원제도 적용 대상 확대
- 배우자·부부교육 및 가족통합교육 강화
- 가족위기 상담 강화
- 가족위기개입 네트워크 강화

**㉕ 자녀 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 지원**

- 임신·출산 방문 지원 서비스 실시
-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
- 임신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보건소)
-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효율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육아정보 나눔터 설치
- 부모-자녀 자긍심 향상 프로그램 실시
- 아버지 육아교육 실시
-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검토
- 농어촌 지역 소규모 보육사업 실시
-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강화
- 아이돌보미사업 연계 강화
- 무료 건강검진사업 추진
-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 자녀의 예방접종률 제고

**㉖ 자녀 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 개발 지원**

- 취학전 영·유아 기본언어·학습능력 지원

- 방과 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성장 지원
-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추진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사회·문화역량 강화 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전문기관 육성
- 빈곤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강화
- 위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부모의 학교상담시 통역요원 파견
- 부모의 자녀교육 능력 강화 프로그램 활용

**⑤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모델 개발·보급
-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결혼이민자 직업교육·훈련 강화
- 결혼이민자 취업 연계 강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강화
-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확대

**⑥ 가족 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지원**

- 다문화가족 이혼 후 실태 파악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한부모가족 수혜대상에 포함
- 무연고·방치아동 보호
- 무단출국 자녀의 교육권·생활권 보장대책 검토

**⑦ 전(全)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다문화가족 등록·서비스 관리 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담기관 확충
- 도시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
- 관련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민간 자원과의 연계 확대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공무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강화
- 다문화사회 전문강사 양성

-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
- 다문화가족 친화지수 개발·활용
-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어 교육
  - 목적: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인 조기정책 지원
  - 내용: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교육 실시
-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 목적: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가정, 지역사회, 학국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도록 지원
  - 내용: 우리나라의 법률 및 인권, 결혼과 가족의 이해, 다문화가족생활교육 등을 강의·체험 방식 등을 병행하여 진행
- 가족교육
  - 목적: 의사소통 미숙 및 부재로 인한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가족구성원 교육을 통해 가족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내용: 가족전체 통합교육,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 자녀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 가족·개인 상담
  - 목적: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심리·정서적 지원 상담을 통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와 자존감 향상을 지원
- 취·창업 지원사업(다문화가족 직업교육)
  - 개요: 지역별, 센터별 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내용: 취·창업지원 상담
    - 해당지역의 취·창업가능 일자리 탐색 및 개별센터에서 추진 가능한 직종 분석
    - 예시) 다문화·원어민강사 등 교육서비스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 제조업 등
    - 취·창업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시) 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 향상교육 등
    - 취·창업 연계 및 알선프로그램

지속적 취·창업자 상담 및 정보제공(자조모임 운영 등)

○ 통·번역 서비스 자조모임 운영

- 목적: 기정착한 이민자가 같은 출신국 초기 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정착 지원 강화  
다양한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이민자를 사업 활동가로 육성함으로써 사회인으로서의 주체적 영향 강화
- 활동내용: 초기 이민자들의 통역·정서지원 및 한국생활 멘토 역할  
가족갈등, 행정·사법기관 방문, 병원진료 등 통역 지원  
기타 한국어가 서툰 이민자의 생활현장 동행 등 다양한 지원 활동

○ 멘토링, 자원봉사당 등 지역사회·민간자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목적: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게 함
- 사업내용: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 음식체험, 의상체험, 전통공연 등  
다문화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  
다문화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개요: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기관 연계 강화
- 사업추진 내용: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 담당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  
일선서비스 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 간 협력네트워크 구성

○ 정보제공(홍보)

- 생활·정책 정보매거진 보급 확대
- TV 등 방송매체 활용 정보제공 활성화
- 외국인 남편 대상 정보제공사업 활성화
- 건강보험 가입 안내 홍보 강화

○ 육아정보나눔터 설치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사용 가능하나 다문화가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 4.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다문화 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내용과 역할

##### 1)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다문화 가족사업: 전개의 의의

-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에 의거하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방문교육사업(한국어교육 및 아동 양육지도),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 운영,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임.
- 그러나 서울에서는 2008년에 오직 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었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를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서비스(한국어교육, 문화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멘토·멘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센터를 대상으로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여성가족재단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멘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2008년 결혼이민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례집), 2009년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송파구(서포터즈), 구로구와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멘토 멘티 사업이 실시중이며, 그 외 21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서울시 2009년 공통필수 사업인 지역사회 연계망 사업으로 “이웃사촌 브릿지” 사업에서 다문화가족과 멘토-멘티 사업으로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다른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중.
- 2009년 5월 현재,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약 80여 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에 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좋음을 의미함. 즉,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 가족에게 프로그램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쉽게 할 수 있는 1차 세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미 다양한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상담 프로그램의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어려움 없이 수행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재정과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유급자원봉사자 모집과 실무적 교육제공을 통하여 이들이 건강가정사와 다문화가족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다양한 서비스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의 생활문화적응, 자녀양육, 생활도우미 등 결혼이민자 가족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멘토인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필요함.

## 2) 생활코디네이터의 정의 및 역할

### ○ 생활코디네이터의 정의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원조하는 자원봉사자

### ○ 생활코디네이터의 역할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지원 업무이해 및 역할
- ② 다문화 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자
  - 사정도구 이해
  - 대상자에게 사정 실시
  - 사정 결과의 자료화 및 전달
- ③ 지역사회 생활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서비스 연계자
  - 생활정보 제공
  -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
- ④ 다문화 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 다문화가족의 생활진단
  - 다문화가족의 생활설계
  - 생활 기구 및 생활기술(가계재무, 육아, 조리 등) 노하우 소개
- ⑤ 다문화 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세부과업 프로그램 연계
  - 다문화가족관계 향상
  -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비생활교육
- ⑥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의 관계 숙지
  - 다문화사회와 문화충격완화
  - 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지원

## 3)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기대효과

### ○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의 자존감 향상 및 생활적응에 기여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학습기회와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그들의 한국어, 생활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그들이 가족문화체험 등 다양한 특별활동의 기회를 받게 하면 결혼이민 여성과 그 가족의 자존감은 향상되고, 가족적응 및 친밀감은 강화되며, 생활적응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여성의 잠재 능력 및 지도력 개발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격을 갖춘 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및 유급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여성의 잠재 능력과 지도력을 개발하여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음.
  
- 자원봉사운동의 저변 확대 및 실질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  
 자원봉사를 통해 생활코디네이터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자원봉사 운동의 저변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임.

# 서울시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실태

: 2008 서울여성가족재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장 명 선 연구위원(서울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 서울시 결혼이민 여성의 생활실태

: 2008 서울여성가족재단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은

## 설문조사 결과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조사규모	- 결혼이미여성 842명, 한국인 배우자 177명
조사방법	-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민자의 지역별, 국적별 분포를 고려한 비례확률 표집
조사일자	- 2008. 8. - 10.
설문지 형식	-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울시 관련담당자의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5개 다국어로 번역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표본오차	- 95% ± 3.1%p
분석도구	- SPSS 12.0K

## 1. 국제결혼과정

### 1) 국제결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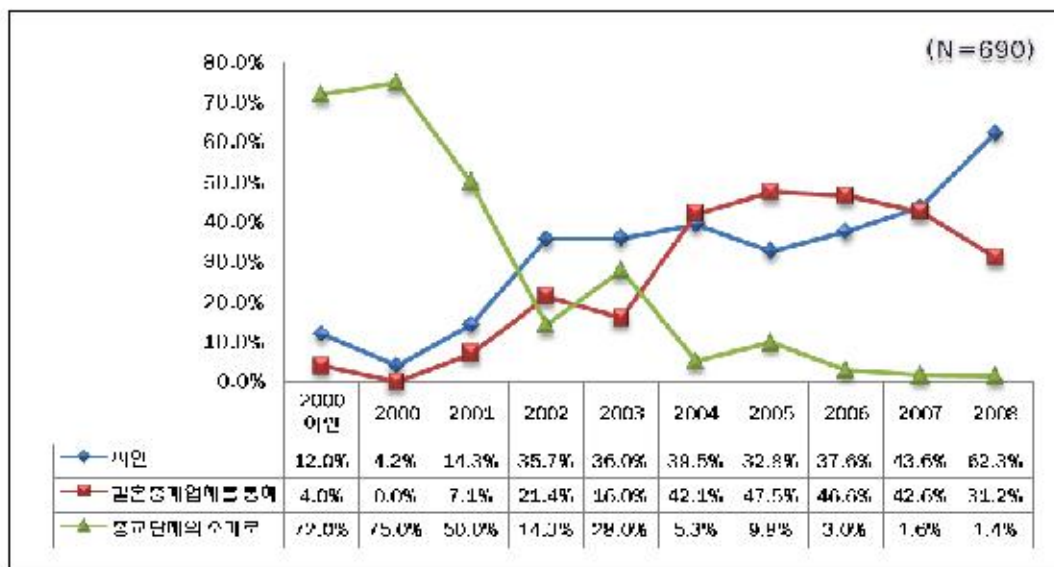
- 결혼이민여성의 29.8%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현재의 한국인 배우자와 만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 아는 사람의 소개(28.4%)’, ‘종교단체의 소개(13.4%)’, ‘소개 없이 직접 만남(12.4%)’, ‘부모, 형제, 친척의 소개(10.9%)’ 순으로 나타남.
- 출신국적 별로 한국인 배우자와의 소개경로를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는 베트남 출신(47.2%)과 캄보디아 출신(73.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친구, 아는 사람을 통해 만나게 된 경우는 중국 한족 출신이 43.7%

로 많고, 종교단체의 소개는 일본 출신(63.4%)과 필리핀 출신(41.2%)에서 많았으며, 부모, 형제, 친척의 소개로 만나게 된 경우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 25.0%로 많았음

< 표 1 > 출신국적별 배우자 소개경로

구분	사례수	배우자 소개경로(%)							
		부모, 형제, 친척소개	친구, 아는 사람소개	결혼 중개업체	종교단체소개	행정기관	소개 없이 직접 만남	기타	무응답
합계	842	10.9	28.4	29.8	13.4	0.4	12.4	3.2	1.5
중국조선족	72	25.0	27.8	22.2	1.4	0.0	18.1	4.2	1.4
중국한족	190	9.5	43.7	26.3	1.1	0.5	12.6	5.3	1.1
일본	82	0.0	14.6	1.2	63.4	0.0	14.6	2.4	3.7
베트남	252	13.1	29.8	47.2	0.4	0.8	6.0	0.4	2.4
필리핀	119	9.2	17.6	13.4	41.2	0.0	10.9	6.7	0.8
캄보디아	41	4.9	22.0	73.2	0.0	0.0	0.0	0.0	0.0
기타	86	11.6	22.1	22.1	9.3	0.0	31.4	3.5	0.0
$\chi^2$ -검정	$\chi^2=495.776$ p-value=.000								

종교단체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2000년 이후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지인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는 경우는 2001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인 2006년부터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혼중개업체의 이런 추세는 최근 위법성 국제결혼에 대한 처벌 강화와 결혼중개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그림 1) 입국시기별 배우자 소개경로(국제결혼)

## 2) 국제결혼 당시의 어려움

결혼이민여성의 75.8%가 결혼당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언어소통의 문제’ 78.1%,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35.4%, ‘가족의 반대’ 16.8%,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13.3%, ‘짧은 결혼결정기간’ 11.6%,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당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의 문제’ 71.0%, ‘짧은 결혼결정기간’ 27.6%,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24.8%,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22.1%, ‘가족의 반대’ 11.7% 순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가 응답한 국제결혼 당시의 어려움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언어소통의 문제’는 양자 모두에서 1순위를 차지한 반면, 2순위부터는 결혼 당사자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즉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35.4%, ‘가족의 반대’ 16.8%,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13.3%, ‘짧은 결혼결정기간’ 11.6% 순으로 나타남데 반해, 한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짧은 결혼결정기간’이 27.6%,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24.8%,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22.1%, ‘가족의 반대’ 11.7%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표2 > 국제결혼 당시 어려움(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복수응답)

구분	외국인 배우자 (n=638)		한국인 배우자 (n=145)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가족의 반대	107	16.8	17	11.7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	226	35.4	36	24.8
언어소통의 문제	498	78.1	103	71.0
국제결혼비용	58	9.1	15	10.3
제한된 배우자선택의 자유	33	5.2	9	6.2
짧은 결혼결정기간	74	11.6	40	27.6
배우자에 대한 결혼중개업체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	47	7.4	32	22.1
까다로운 입국심사와 절차	85	13.3	15	10.3
기타	38	6.0	5	3.5

### 3) 결혼동기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동기에 대한 복수응답에서 응답자의 80.5%는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했다고 응답했음. 그 다음으로는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라는 응답이 15.7%, ‘경제적 안정을 위해’ 라는 응답 12.2%,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라는 응답 7.1%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가 35%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배우자와의 결혼동기를 출신국별로 분석해 보면, 베트남 출신의 경우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32.9%로 타 출신국적의 응답에 비해 많았음. 일본 출신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1.2%로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했다는 응답이 4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따라서 결혼동기가 출신국적별로 유의미하게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욕구조사를 근거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표 3 > 출신국적별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동기(복수응답)

구분 (n=842)	전체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기타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80.5	75.0	81.1	86.6	76.6	87.4	70.7	84.9
모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15.7	8.3	7.9	0.0	32.9	10.1	19.5	9.3
경제적 안정을 위해	12.2	12.5	11.6	1.2	10.3	13.4	41.5	14.0
한국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	7.1	8.3	7.9	0.0	6.3	11.8	12.2	4.7
한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5.7	6.9	6.3	0.0	7.5	2.5	19.5	1.2
기타	4.4	5.6	7.4	8.5	1.6	4.2	0.0	3.5

한국인 배우자에게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유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는 응답이 38.1%,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30.3%,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서’ 24.5%, ‘배우자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16.8%, ‘종교적인 이유로’ 14.8%,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10.3%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이 현재 한국사회의 가부장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이나 모국가정의 경제적 지원 내지 취직을 위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결혼동기가 다른 데서 오는 부부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부부갈등이나 가족상담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과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표 4 >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동기(복수응답)

구분(n=155)	사례수	비율(%)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59	38.1
배우자 출신국가 사람들의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해서	26	16.8
배우자의 출신국가 사람들이 순종적이고 부모에게 잘 할 것 같아	38	24.5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절차가 수월해서	5	3.2
배우자 출신국가의 국제결혼비용이 적게 들어서	8	5.2
결혼중개업체의 권유로	16	10.3
배우자 출신국가의 사람과 결혼한 친구나 아는 사람들의 권유로	47	30.3
종교적인 이유로	23	14.8
기타	7	4.5

#### 4) 배우자와의 연령차

< 표 5 > 출신국적별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sup>1)</sup>

구분	사례수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연령 차이(세)
		동갑 및 연하	1~5세 연상	6~10세 연상	11~20세 연상	21세(+) 연상	무응답	
합계	842	8.0	15.1	24.6	41.1	8.6	2.7	11.00
중국조선족	72	13.9	18.1	41.7	19.4	1.4	5.6	7.29
중국한족	190	3.7	13.2	35.3	44.7	1.6	1.6	10.20
일본	82	29.3	52.4	13.4	3.7	0.0	1.2	2.90
베트남	252	1.6	2.0	9.9	61.5	20.2	4.8	16.36
필리핀	119	5.9	15.1	37.0	36.1	3.4	2.5	9.67
캄보디아	41	2.4	0.0	9.8	65.9	22.0	0.0	17.10
기타	86	16.3	26.7	30.2	22.1	4.7	0.0	7.26
$\chi^2$ -검정	$\chi^2=416.034, p\text{-value}=,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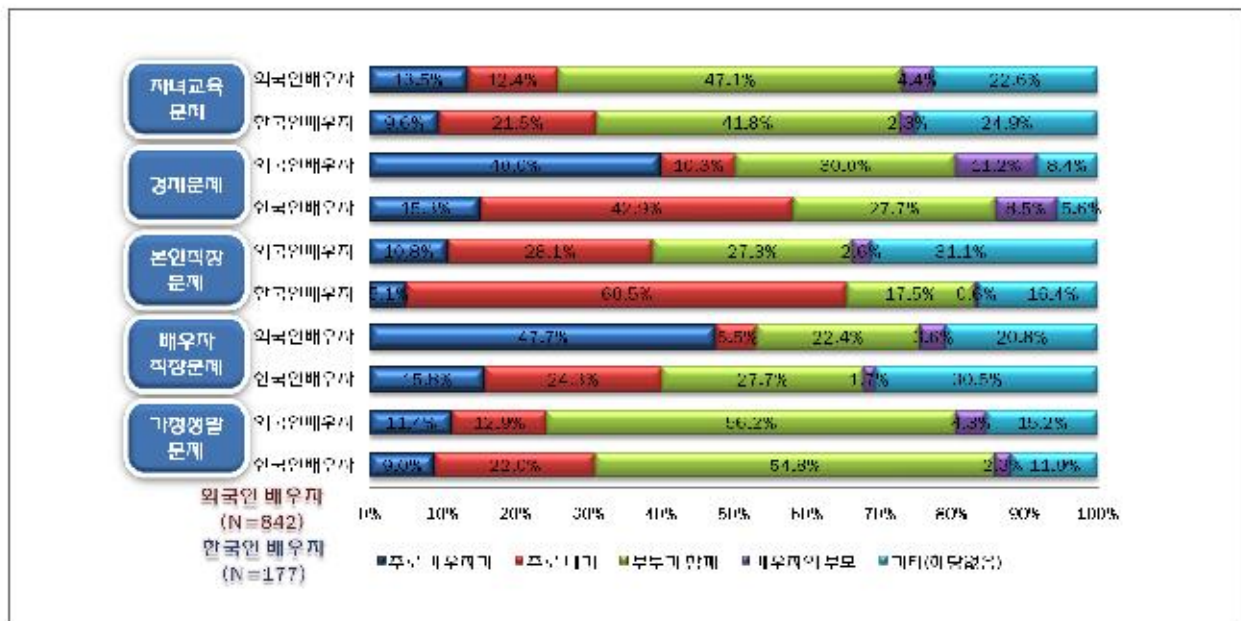
1) 연령 차이는 외국인 배우자들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결혼이민여성 과 그 배우자의 연령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세의 연령 차이 보임.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평균 17.10세, 베트남이 16.36세로 연령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 출신은 2.90세의 연령 차이를 보였음.

배우자간의 연령차가 너무 커 부부간의 세대차를 느끼게 하고 이것이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나이가 많은 한국인 배우자 대신 외국인 배우자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2.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 1) 가정 내 의사결정



( 그림 2 ) 영역별 의사결정주체(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교육문제에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 의사결정을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응답이 각각 47.1%, 41.8%로, 일상적인 가정생활문제는 ‘부부가 함께 한다’가 56.2%, 54.8% 높게 나타났으나, 재산관리 및 생활비 지출 등 가정 내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주로 배우자가 한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인 배우자도 ‘주



로 내가 한다' 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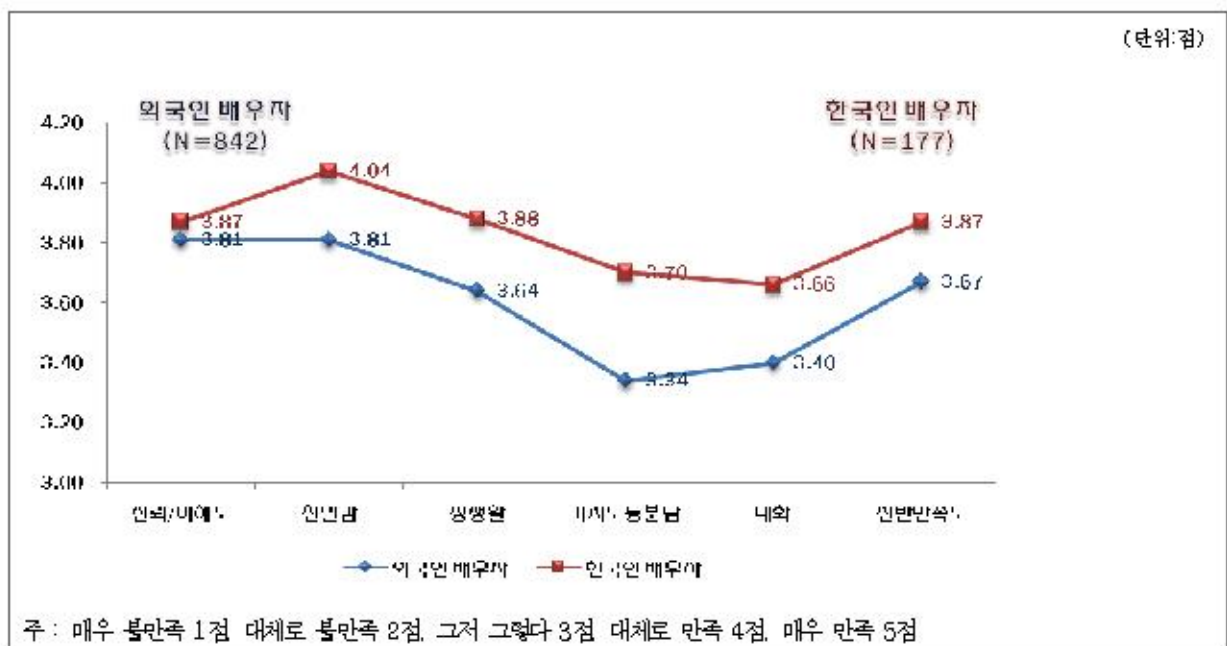
취업이나 직장 이전 문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본인이나 부부가 함께 한다가 28.1%, 27.3%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한국인 배우자는 본인이 결정한다가 60.5%로 높게 나타남.

### 3) 문화적 차이

결혼이민여성 응답자의 86.3%, 한국인배우자의 85.3%가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여성은 '식습관(55.3%)',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1.3%)', '자녀양육 방식(8.0%)', '부모부양 방식(6.2%)'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인배우자는 '식습관' (60.8%),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20.9%)', 자녀양육 방식' 과 '부모부양 방식' 각각 6.5% 등으로 나타남.

### 4) 부부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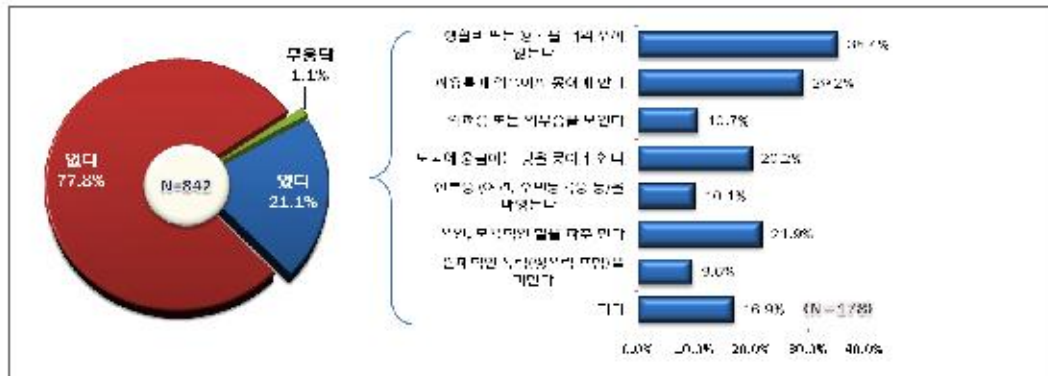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부부관계 만족도는 6개 영역(신탁 및 이해도, 친밀감, 성생활, 가사노동분담, 부부간 대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3.87, 3.67로 나타났으며, 가사노동분담에서의 가장 커다란 차이를 보임



(그림 3) 부부관계 만족도(외국인 배우자, 한국인 배우자)

5)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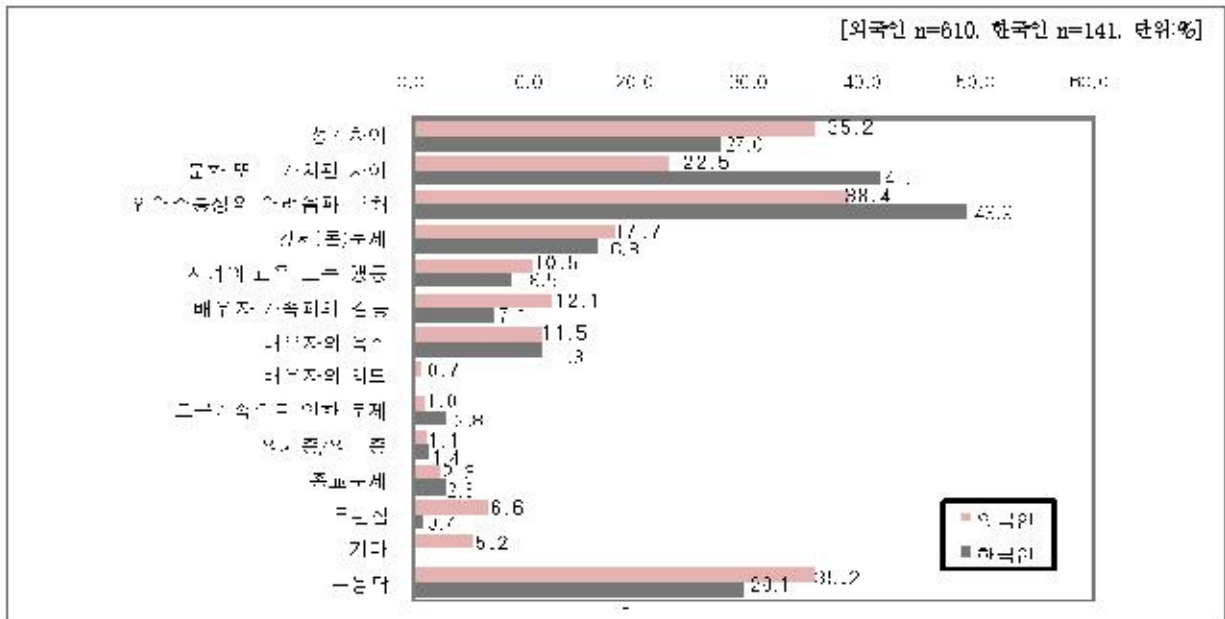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통제와 같은 부당한 대우경험이 21.1%에 이르러 높은 편이며, 그 유형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생활비 또는 용돈을 거의 주지 않는다’ 35.4%, ‘자유롭게 외출하지 못하게 한다’ 29.2%, ‘폭언,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 21.9%, ‘모국에 송금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20.2%, ‘의치증을 보인다’ 10.7%,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을 빼앗는다’ 10.1%, ‘신체적인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한다’ 9.6% 등으로 나타남.



(그림 4) 배우자의 폭력 및 통제경험 유형(복수응답)

6) 부부싸움

응답자 중 결혼이민여성 72.4%, 한국인 배우자 79.7%가 부부싸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원인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가 38.4%, 성격차이(35.2%),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22.5%)’, ‘경제(돈)문제(17.7%)’,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국인 배우자는 ‘언어소통상의 어려움과 오해’(48.9%),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41.1%)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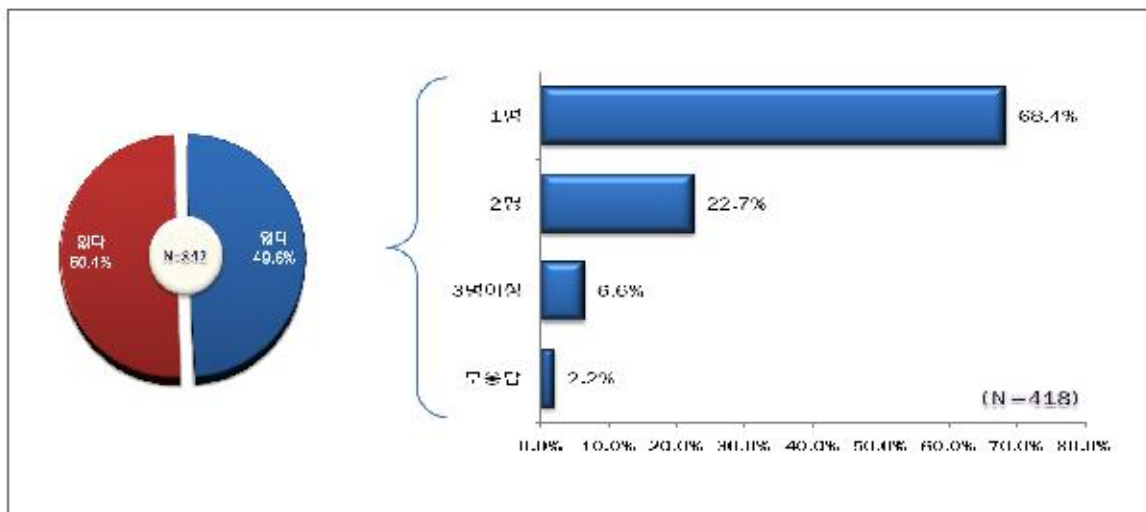


( 그림 5 ) 부부싸움의 원인(복수응답)

### 3. 자녀와의 관계

#### 1) 한국에서의 출산자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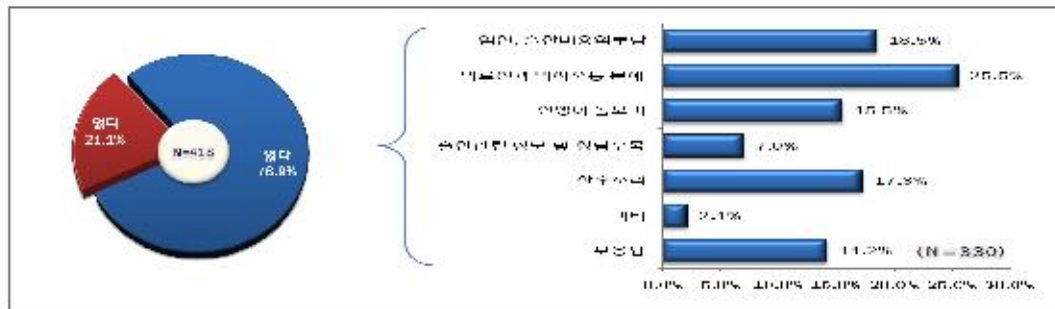
결혼이민여성 중 한국에서 출산경험이 있는 418명(49.6%)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명 미만(1.55명)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출산하였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명(22.7%), 3명(5.0%), 4명(1.4%), 5명(0.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한국에서의 출산자녀 수

## 2) 출산 시 어려움

결혼이민여성은 출산 시 78.9%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대답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가 2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임신, 출산비용의 부담(18.5%)’, ‘산후조리(17.3%)’, ‘신생아 돌보기(15.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출산 시 어려움

## 3) 자녀와의 언어사용

동거 자녀와의 언어사용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모국어’가 4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어(36.0%)’,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8.7%)’ 순으로 나타남.

< 표 6 > 출신국적별 자녀와의 사용언어

구분	사례수	자녀와의 사용 언어(%)					무응답
		한국어	모국어	한국어 + 모국어	한국어 + 모국어 + 제3외국어	기타	
합계	470	36.0	5.1	41.9	8.7	5.5	2.8
중국조선족	47	63.8	2.1	31.9	2.1	0.0	0.0
중국한족	70	34.3	10.0	50.0	2.9	1.4	1.4
일본	60	40.0	10.0	46.7	1.7	0.0	1.7
베트남	140	37.9	0.7	51.4	4.3	0.7	5.0
필리핀	85	17.6	1.2	25.9	27.1	25.9	2.4
캄보디아	15	60.0	0.0	33.3	0.0	0.0	6.7
기타	53	26.4	15.1	37.7	15.1	3.8	1.9
χ <sup>2</sup> -검정		χ <sup>2</sup> =191.924, p-value=.000					

출신국적별로 보면, ‘한국어+모국어(41.9%)’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베트남(51.4%)과 중국 한족(50.0%)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어+모국어+제3외국어(8.7%)’의 경우는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필리핀 출신(27.1%)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5.1%)’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 한족과 일본 출신에게서 각각 1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따라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 4)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

미취학 자녀의 보육실태는 ‘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돌본다고 한 응답비율이 5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보육시설(17.1%)’, ‘유치원(1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육시설이용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보육시설 미사용이유로는 ‘자녀 나이가 어려서’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때문에(17.6%)’, ‘내 가족 또는 친구가 더 잘 봐줄 것 같아서(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5) 자녀양육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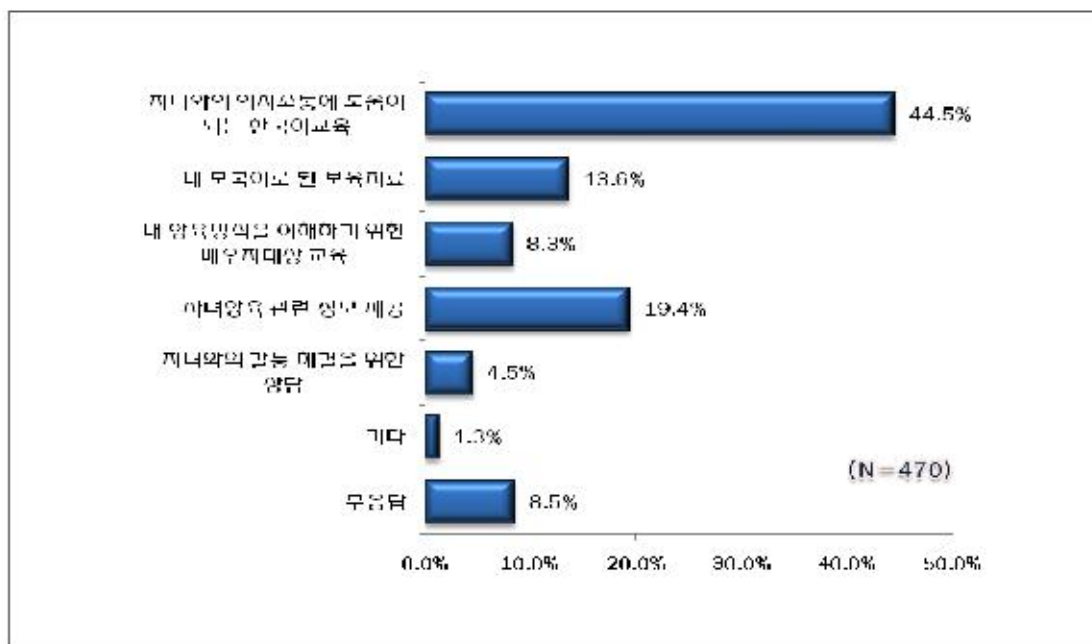
< 표 7 > 자녀 양육 시 어려움(복수응답)

구분	외국인 배우자 (n=363)		한국인 배우자 (n=77)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자녀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145	39.9	6	7.8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	61	16.8	12	15.6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지 않는다	3	0.8	0	0.0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49	13.5	18	23.4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	67	18.5	32	41.6
자녀와 사고방식 및 가치관이 다르다	7	1.9	0	0.0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어려움이 있다	10	2.8	1	1.3
자녀를 맡길 적합한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5	1.4	3	3.9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1	0.3	0	0.0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	3	0.8	0	0.0
기타	10	2.8	1	1.3
무응답	2	0.6	4	5.2

결혼이민여성 중 75.5%가 자녀양육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39.9%), ‘사교육비나 양육비가 부담된다(18.5%)’, ‘배우자와 양육방식이 다르다(16.8%)’, ‘자녀양육과 교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1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6)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자녀 양육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교육’ 이 4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 제공(19.4%)’, ‘내 모국어로 된 보육자료(13.6%)’, ‘내 양육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배우자 대상 교육(8.3%)’,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4.5%)’ 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림 8 ) 자녀양육 시 필요한 지원

## 4. 경제활동

### 1) 직업유무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는 81.2%로 나타나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8명은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07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여성취업률 48.9%와 서울시 여성취업률 49.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동기에서 나타났듯이 모국의 경제적 지원 내지 경제적 안정, 취업 등이 주된 결혼이유이므로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비해 취업률은 대단히 낮은 상태임.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취업욕구에 따라 그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창업프로그램이나 관련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짐.

## 2) 직업유형

결혼이민여성의 직업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업주부(64.1%)와 무직인 경우(16.0%)를 제외하고는 기술/생산직(3.9%)과 강사/교사직(3.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신국적별로는 기술/생산직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7.3%)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강사/교사직의 경우는 일본 출신(12.2%)과 필리핀 출신(9.2%)이 높으며, 서비스직의 경우는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비율(12.5%)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업주부의 경우는 베트남 출신(77.4%)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3) 구직경로

< 표 8 > 구직경로

구분	사례수	비율(%)
합계	156	100.0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21	13.5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34	21.8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21	13.5
외국인 상담소를 통해	4	2.6
공공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6	3.8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13	8.3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을 통해	18	11.5
기타	24	15.4
무응답	15	9.6

구직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구직하게 된 경우가 2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13.5%)'와 '가족 및 친척의 소개(13.5%)',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11.5%)', '민간 직업알선기관(8.3%)'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공공 행정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공공행정기관이 구직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인터넷, 미디어매체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 내지 홍보 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됨.

#### 4) 취업동기

결혼이민여성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생활비 보충'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20.5%, '자녀의 양육비 총당' 16.0%, '자기발전을 위해' 11.5%, '모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9.0%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10명 중 1명은 '장래 노후 준비(7.7%)'과 '여가시간 활용(3.8%)'을 직장에 다니는 이유로 꼽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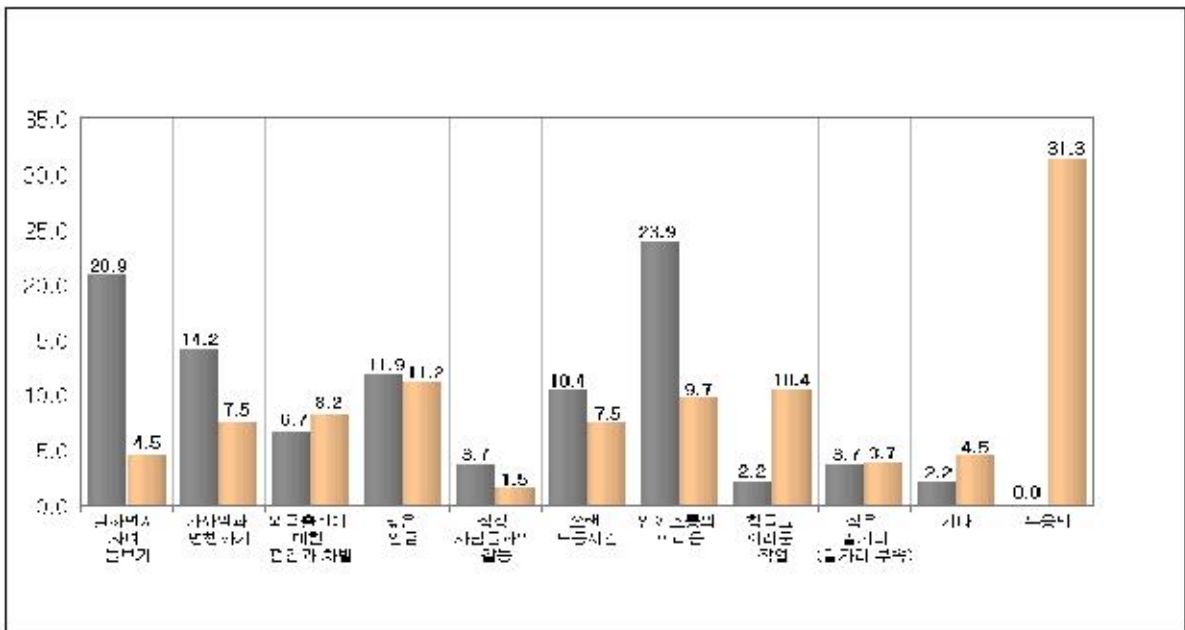
#### 5) 월평균 개인소득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알아본 결과, 50~100만원 미만(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21.8%), 50만원 미만(14.1%), 150~200만원 미만(5.8%) 순으로 많았다. 또한 '소득이 없다'고 한 응답도 5.8%나 있었으며, 개인소득이 250~300만원 미만과 200~25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각각 2.6%, 1.3%, 0.6%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다수(83.4%)가 15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6)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는 1순위로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3.9%로 가장 많았으며, '일하면서 자녀돌보기(20.9%)', '가사일과 병행하기(14.2%)', '낮은 임금(11.9%)', '오랜 노동시간(10.4%)' 등의 순으로 많았음. 한편, 2순위로 꼽은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이 1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작업' 10.4%, '언어소통의 어려움' 9.7%,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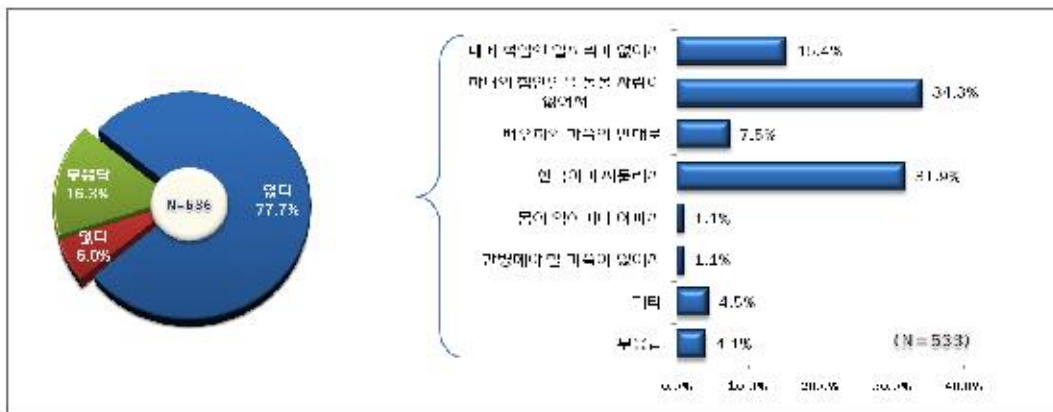


( 그림 9 )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1순위, 2순위)

### 7) 희망직종

직업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향후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533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종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강사/교사직 희망이 1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17.8%), 기술/생산직(13.5%), 서비스직(11.6%), 관리/사무직(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8) 미취업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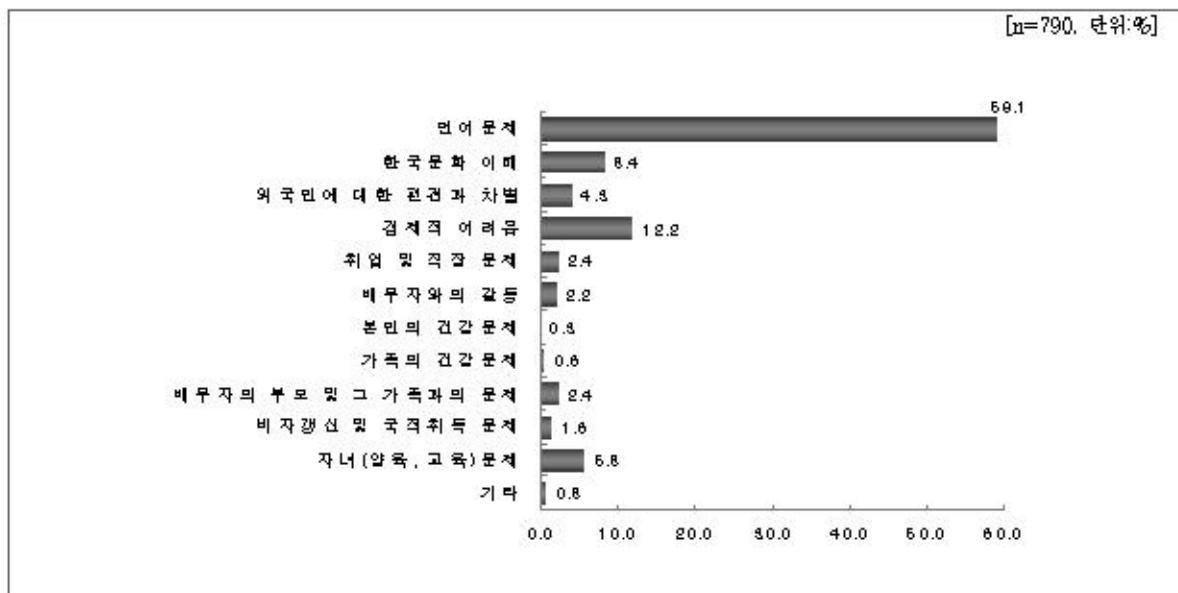
( 그림 10 ) 미취업 사유

결혼이민여성이 미취업의 사유로는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서툴러서(31.9%)’,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15.4%)’,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 한국문화적응 및 사회통합

### 1)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1순위로는 ‘언어문제’가 5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12.2%)’, ‘한국문화 이해(8.4%)’, ‘자녀(양육, 교육)문제(5.8%)’,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4.3%)’ 순으로 나타남. 한편, 2순위로는 ‘한국문화 이해’가 16.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교육)문제(13.8%)’, ‘취업 및 직장 문제(12.7%)’, ‘경제적 어려움(8.9%)’, ‘언어문제(8.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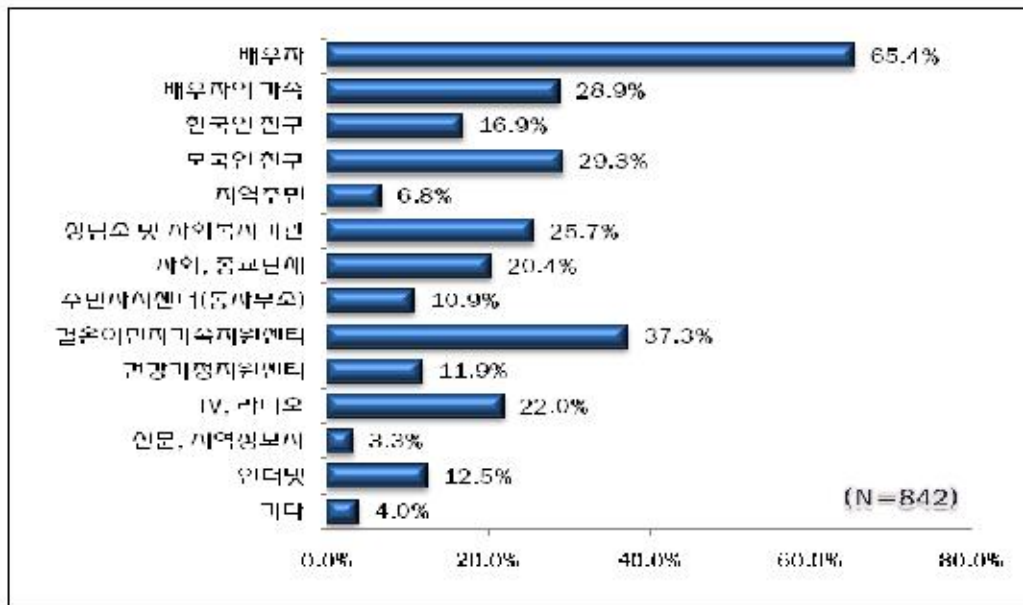


( 그림 11 ) 한국생활의 어려움(1순위)

### 2)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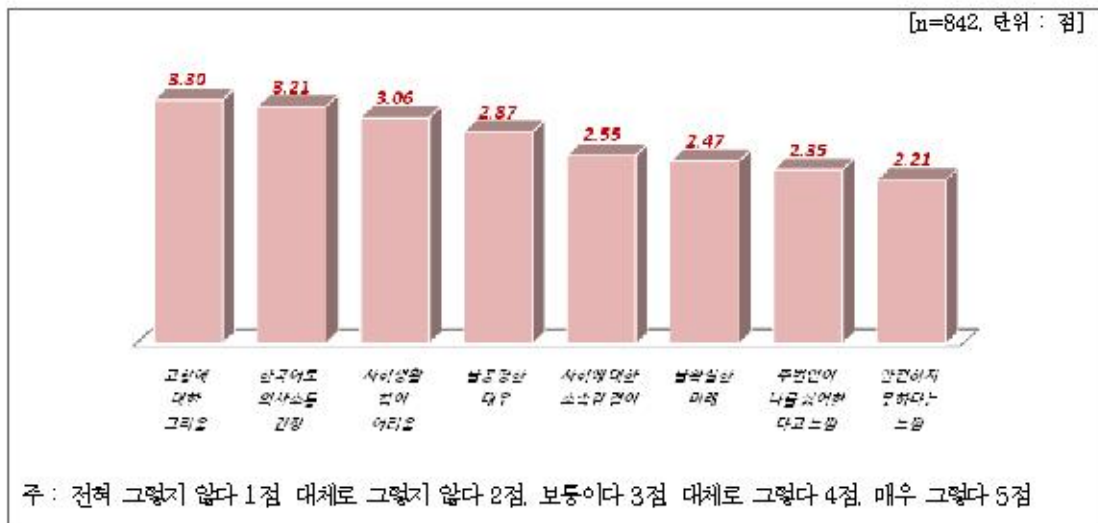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배우자(65.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모국인 친구(29.3%)’, ‘배우자의 가족(28.9%)’, ‘한국인 친구(16.9%)’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6.8%)’이라는 응답은 일부에 불과했음. 외국인 배우자에게 사회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7.3%로

가장 높았으며, ‘상담소 및 사회복지기관(25.7%)’ 과 ‘사회, 종교단체(20.4%)’ 도 상당수 있었음. ‘주민자치센터’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0.9%와 11.9%였음. 대중매체로는 ‘TV, 라디오’가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인터넷(12.5%)’ 과 ‘신문, 지역정보지(3.3%)’ 의 도움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림 12 )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복수응답)

### 3) 문화적응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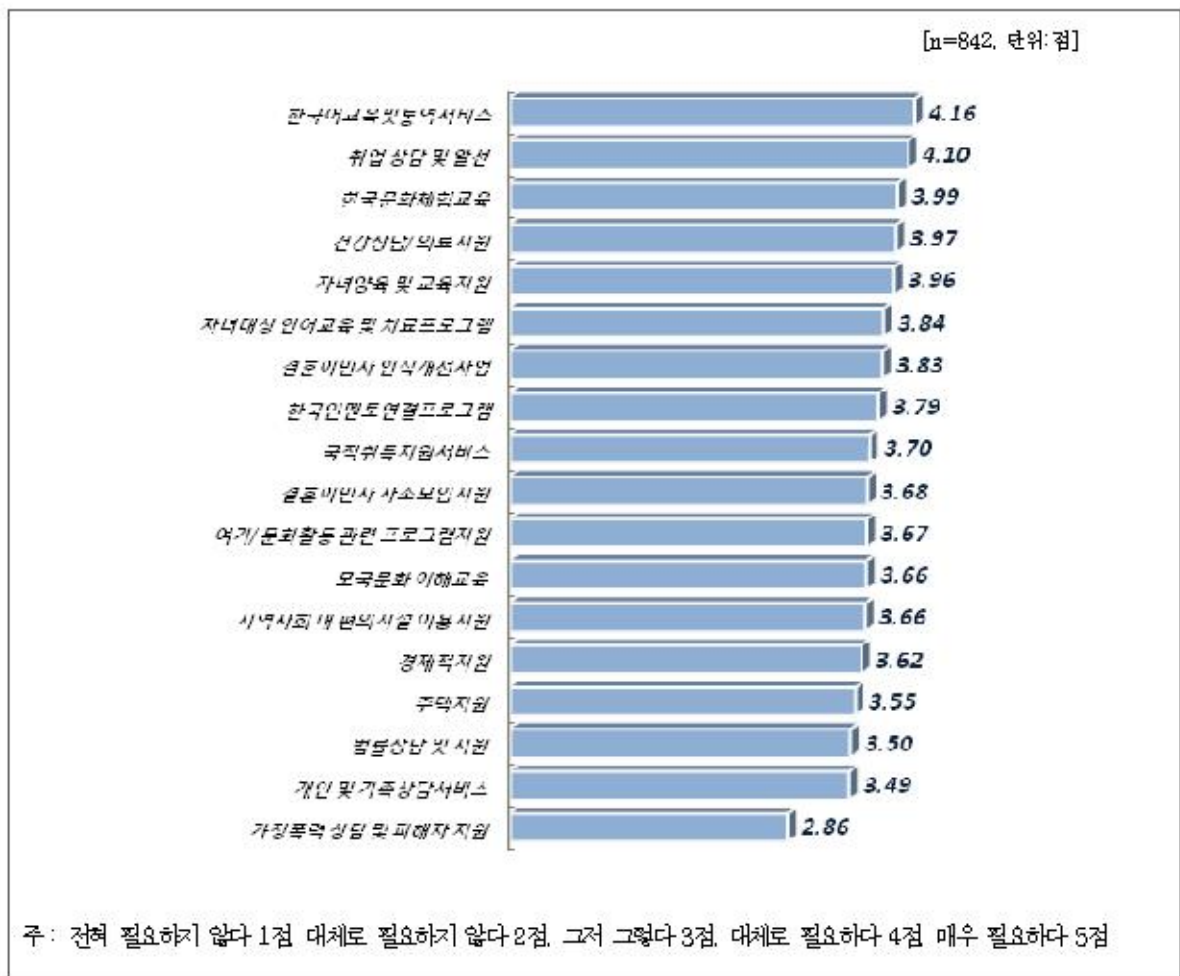


(그림 13) 문화스트레스 정도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2.75점으로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항목별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3.30점, ‘불공평한 대우’ 2.87점, ‘의사소통 시 긴장감’ 3.21점, ‘사회활동 참여의 어려움’ 3.06점,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 2.35점, ‘안전하지 못한 느낌’ 2.21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 2.47점, ‘사회적 소속감 결여’ 2.55점으로 나타남.

#### 4)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는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 4.16,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 4.10, ‘한국문화체험교육’ 3.99, ‘건강상담/의료지원’ 3.97,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3.96, ‘자녀대상 언어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3.84, ‘결혼이민자인식개선사업’ 3.83, ‘한국인멘토연결프로그램’ 3.79 등으로 나타남.



( 그림 14 ) 사회복지서비스 필요도



#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자**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실제**

**강기정 교수(백석대학교,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자

##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의 실제

### 1.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사업의 개요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사업은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기위해, 생활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원조하는 서비스임.

□ 생활코디네이터의 역할은

- 첫째,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 둘째,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자,
- 셋째, 지역사회 생활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서비스연계자,
- 넷째,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 다섯째, 다문화 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임.

#### 1)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의 필요성

- 최근 한국남성과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008년도 국제결혼 건수는 36,204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 327,715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9), 이 중에서도 2008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혼인한 남자 6천 5백 명 중 38.3%인 2천 5백 명이 외국 여자와 혼인하여 전국적인 추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국제결혼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부부간의 의사소통 곤란과 생활방식의 차이, 자녀양육방식의 차이, 그리고 시부모 및 친인척 문제, 자녀의 언어 학습부진 문제,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 및 신분상의 불안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현재 운영중인 방문지도사, 학습지도사, 멘토 프로그램과는 차별화하여,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원조하는 것임. 결혼이민자 여성의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해소, 문화적 차이 이해 등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며, 가정생활관리 및 설계를 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함

## 2)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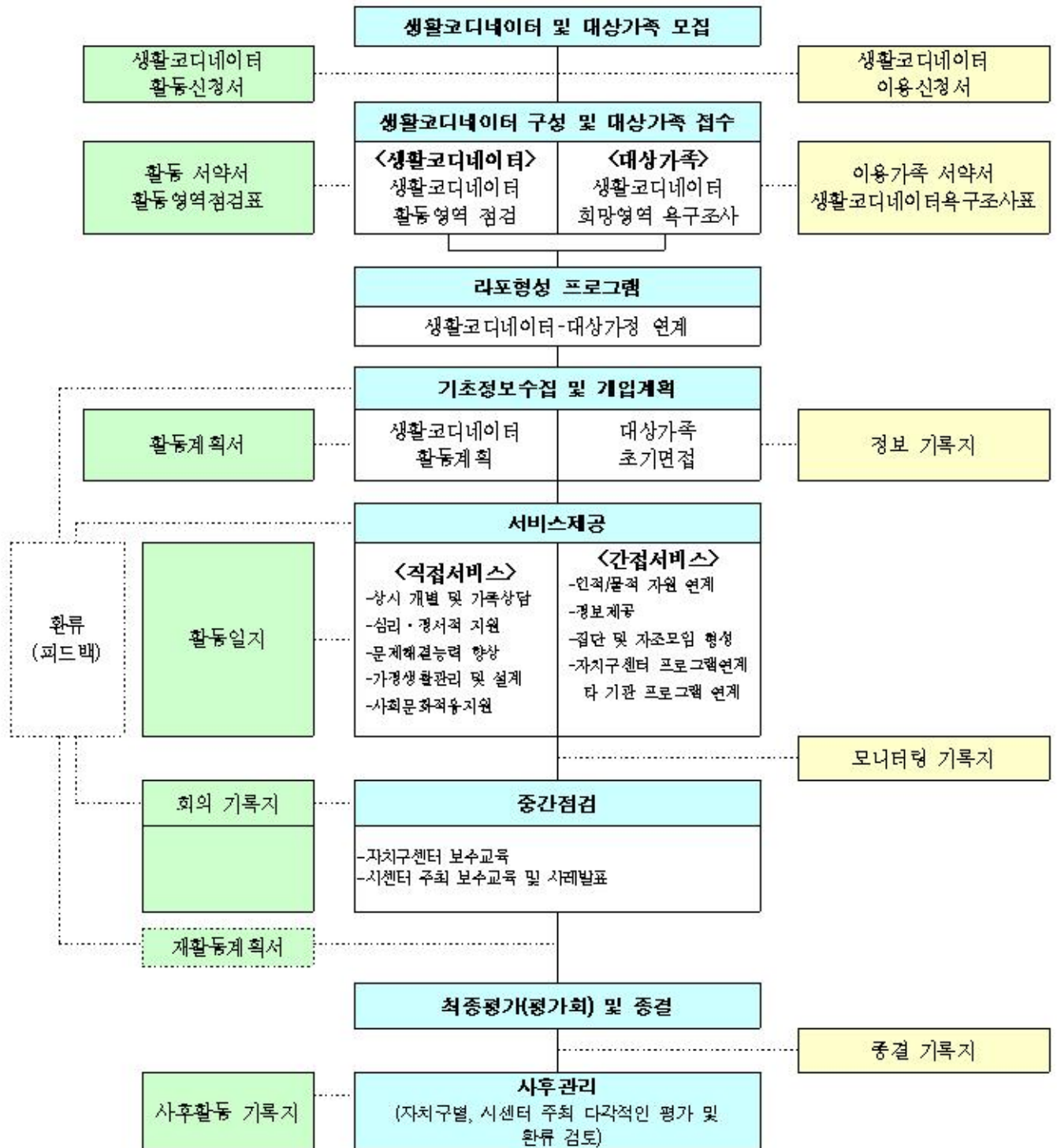
- 다문화가족의 기능강화,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해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는 원조하는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분야 등의 개별 욕구나 가족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및 연계

## 2.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과정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그림 1-1) 생활코디네이터 흐름도를 기준으로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모집, 생활코디네이터 구성 및 대상가족 접수, 리포형성 활동, 기초사정 및 개입계획, 서비스제공, 중간점검, 최종평가 및 종결, 사후관리 순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생활코디네이터 흐름은 크게 ① 대상가족 모집과 함께 생활코디네이터 모집(활동신청서, 이용신청서), ② 생활코디네이터 팀을 구성하여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본교육과 활동영역점검(활동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영역점검표), ③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를 희망하는 희망가족의 욕구조사(이용가족신청서, 서약서, 희망영역욕구조사표), ④ 리포형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연계 기반 구축(필요시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과정 포함), ⑤ 연계된 생활코디네이터-대상가족의 초기 면접을 통한 기초사정 및 개입계획 수립(활동계획서, 정보기록지), ⑥ 개입계획 과정에서 파악된 직·간접 서비스 제공(활동일지), ⑦ 대상가족 모니터링 및 활동일지 점검을 통한 중간점검(회의기록지) 실시, ⑧ 대상가족의 새로운 욕구나 서비스 발견시 재사정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 제공(재사정기록지), ⑨ 최종평가를 통해 합의된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종결(종결 기록지), ⑩ 사후의 정기적인 관리(사후활동기록지)를 통해 진행된다.





( 그림 1-1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흐름도

※ 상기 흐름도는 일부 자치구 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소 가감하거나 흐름도를 바꿀 수 있음

## 1)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모집

다문화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그 대상가족을 발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입국초기에 주 보호자가 관광 서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 문의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특히, 먼저 입국한 자국민이 관련 기관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부족, 가족의 비협조 등의 사각지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는 대상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각도의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본 서비스에 부합하는 대상가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모집된 대상가족이 바로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즉시 서비스기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서비스 활동가 기준에 부합되는 예비생활코디네이터를 대상가족과 함께(혹은 사전에) 모집하여야 한다.

### (1)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홍보

홍보는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 과정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공급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지나 광고문, 대중매체,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가족 모집 홍보에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제공기준, 신청 절차, 자원의 형태, 사정, 개입 등에 관한 최신화된 정보를 제시하고 대상가족의 권리, 선택권, 참여방법, 도움의 요청 방법, 장소(기관), 시간, 비용 등에 대해서 전체 지역사회 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중심이다.

생활코디네이터 모집 홍보에는 본 서비스의 취지,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및 개념정의, 신청 절차, 활동 종류 및 형태, 활동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여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돕고자 하는 희망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이 중심이다.

### (2)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신청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신청서 및 생활코디네이터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본 서비스의 활동가 및 대상가족의 공급과 수요를 파악한다.

대상가족의 이용신청은 다문화가족 신청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연락처, 동거가족정보, 희망 서비스 등의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쉽게 신청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서식1).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신청은 희망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연락처, 활동경험 및 관련자격 사항, 활동가능 지역, 활동가능 시간, 참여동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담당자가 신청서의 내용만으로도 본 서비스 활동가로서의 기준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서식2).

신청방법은 내방, 팩스, 전화접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며, 더불어 신청단계에서 신청경로를 조사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알게 되었는지 파악하여 사후에 본 서비스의 추가 홍보 시 홍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 접수

모집홍보를 통해 신청되어진 생활코디네이터 및 대상가족에게 본 서비스의 개시를 알리는 활동이다. 본 단계에서는 본 서비스의 취지와 서비스 제공(활동)형태 및 내용을 생활코디네이터와 대상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본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이때 생활코디네이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으로서의 훈련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여야 하며, 활동영역점검표(서식3)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활동 가능한 영역을 체크함으로써 활동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서약서 작성(서식4)을 통해 활동가로서의 약속절차를 갖는다.

대상가족은 생활코디네이터 욕구조사표(서식5)를 통해 본 서비스에 대한 희망영역을 체크함으로써 가족이 필요로 한 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센터에서 공급량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서약서 작성(서식6)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로서의 약속절차를 갖는다.

## 3) 라포형성 프로그램 운영

본 단계는 본격적인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 활동가와 다문화가족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낯설음을 감소시켜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미 생활코디네이터단과 대상가족들간에 라포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본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서비스 이용희망자와 제공인력에게 오리엔테이션 및 정보제공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숙지의 시간이 필요로 하며, 가족의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가족-생활코디

네이터, 가족-센터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합의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본 단계의 취지를 살려 센터는 생활코디네이터와 대상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임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 **4) 기초정보수집 및 개입계획**

생활코디네이터와 대상가족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라포형성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생활코디네이터-다문화가족이 연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계획하고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대상가족 초기면접 및 정보기록지 작성**

대상가족 초기면접은 생활코디네이터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대상가족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센터는 대상가족이 작성한 생활코디네이터 이용신청서와 이용가족 서약서, 욕구조사표를 연계될 생활코디네이터에게 공유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대상가족과 초기면접을 통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기록지(서식7)에 작성하도록 한다.

대상가족과 생활코디네이터가 면접과정에서 정보기록지를 함께 작성하면서 대상가족의 욕구를 좀 더 정확히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욕구정도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제공될 수 있는지 서로간에 희망하는 서비스량과, 제공시간대 등을 협의하며, 이렇게 작성된 정보기록지는 대상가족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이후 생활코디네이터 활동 중의 중간점검, 회의,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 **(2) 생활코디네이터 개입계획 수립과 활동계획서 작성**

생활코디네이터 개입계획수립은 대상가족과 초기면접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가족의 욕구, 문제, 성취될 결과, 목표달성을 위해 추구되는 서비스 등에 관해 대상가족, 센터, 생활코디네이터가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생활코디네이터는 합의된 내용을 활동계획서(서식8)에 작성하는 작업을 통해 대상가족과 약속한 목표를 확고히 하고,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된다. 이때 센터는 활동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실제활동량과 계획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는 무엇인지 등을 생활코디네이터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작성되어진 활동계획서는 반드시 대상가족과 함께 내용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더불어 활동계획서에 작성되는 내용은 ① 대상가족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정서적으로도 합의된(committee) 서비스를 기초로 설정하여야 하며, ②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③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④ 활동내용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일치해야 한다. 또한, 활동계획에 생활코디네이터 본인의 직접서비스와 함께 센터의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하는 센터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실질적인 원조를 위해 외부기관에 대상가족을 연결시키는 일 등을 포함하는 간접적인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는 대상가족의 초기 적응에 바람직한 지원방법 등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며 각 욕구에 대한 지원의 종류, 공급주체, 필요한 시간 및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5) 서비스 제공

이 단계에서는 대상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생활코디네이터 활동계획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로 크게 직접 서비스와 간접서비스로 구분되는 계획의 실행이 전개된다.

### (1) 직접 서비스

직접 서비스는 생활코디네이터가 대상가족과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 상담, 문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생활코디네이터가 대상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코디네이터-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생활코디네이터가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2) 간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는 대상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연계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정보 이외의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제공, 센터에서 실시되지 않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생활코디네이터나 센터가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즉시적인 욕구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생활코디네이터 개인 스스로가 발굴하는 것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복지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보유하여, 생활코디네이터의 요청 시 협의를 통해 제공절차에 함께 개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3)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일지**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일지(서식9)는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생활코디네이터의 투여시간과 노력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생활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개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 파악해 낼 수 있다. 더불어 활동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도구이며, 대상가족의 새로운 욕구 발생이나 종결을 파악하기에도 매우 적절하다.

## **6) 중간점검**

중간점검이란 생활코디네이터의 서비스 내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대상가족의 만족도 및 새로운 욕구가 있는지,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중간점검은 대상가족의 서비스 신청내용과 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계획 내용,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일지와 대상가족의 서비스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실시한다.

### **(1) 정보기록지-활동계획서-활동일지 점검**

대상가족이 필요로 한 서비스의 내용과 활동계획서의 일치성, 실제 활동계획 대비 수행되는 서비스의 제공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기록지와 활동계획서, 활동일지의 점검이 필요하다.

센터는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일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상황을 파악하고, 이차적으로 모니터링, 면접, 중간 평가회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 **(2) 모니터링 실시**

일차적인 점검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은 가정방문, 전화통화, 설문지 발송 관찰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본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통해 조사되는 것이 원칙이며, 모니터링 내용은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0)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본 내용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가족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서비스 내용

이 만족스러운지, 새로운 서비스 욕구는 없는지 등을 직접 파악하는 자료로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자료로 활용된다.

### **(3) 중간점검 회의 및 회의기록지 작성**

일차 점검(문서중심)과 이차 모니터링 내용을 토대로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여 생활코디네이터가 본인의 활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코디네이터 간의 활동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중간점검 회의는 현재의 활동상황들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정해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회의의 내용은 회의기록지에 기록·정리하여 회의자료와 결정사항 등을 함께 편철한다. 후에 회의기록지의 내용은 차후 생활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과 추진방향성 제시, 생활코디네이터 평가의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 **(4) 활동계획 수정**

중간점검 단계에서 대부분의 활동계획과 활동내용이 확정되어 진행되어지지만, 일부 대상가족이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추가를 희망하거나 서비스 철회,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생활코디네이터는 대상가족과 함께 수정되어야 할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재수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재활동계획서는 별도의 서식이 아닌 기존의 활동계획서(서식8)를 사용하여, 바뀌는 활동내용을 어려움 없이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7) 최종평가(평가회) 및 종결**

최종평가는 중간점검을 통해 재정비 된 서비스가 계획된 활동내용 어느정도 달성하였는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점검하는 단계로서 가족단위의 최종평가 및 종결과 평가회로 나눌 수 있다.

### **(1) 최종평가 및 종결 기록지 작성**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는 이용가족, 생활코디네이터별로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종결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어 가족단위별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평가방법은 중간점검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적인 활동을 평가하고, 생활코디네이터-대상가족-센터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기록지(서식11)를 작성한다.

종결 기록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개입기간에 투입된 다양한 자원과 생활코디네이터의 개입활동, 활동계획 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하고, 최종목적인 대상가족의 궁극적 변화를 대상가족과 함께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단순히 자원 투입 수와 목표 달성 여부로 효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코디네이터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가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향상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 (2) 최종평가회

최종평가회를 무리하게 실시하기 보다는 가족단위별 최종평가가 어느정도 마무리 된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회 내용은 활동서비스를 통해 배운 내용 발표회, 서비스 이용수기,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수기, 보상의 시간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본 평가회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이용자 및 제공자가 서로 확인하고, 차후 본 서비스 이용희망자에게 정보제공이 되는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다.

## 8) 사후관리

서비스 종료는 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계획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 다문화가족이 제시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와 관련된 사회체계들의 연계가 마무리 된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생활코디네이터와 대상가족간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다.

대상가족인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투입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만 한국생활에 있어 자립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소통능력, 문화적 차이, 가족간의 갈등 해소와 같은 문제들은 서비스가 종결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 서비스 제공 당시의 많은양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때 사후관리에서 발생되어진 새로운 내용들이나 대상가족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을 실시하여 또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사후활동기록지(서식12)에 작성하여, 대상가족의 한국생활적응과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결국, 사후관리는 생활코디네이터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서비스 및 자원 그리고 새로운 욕구의 생성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식1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신청서 - 다문화가족용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신청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핸드폰		비상전화		이메일			
주소							
출신국가/ 국적취득여부							
가족 구성원	no	성명	관계	나이	성별	직업	비고(국적 등)
	1						
	2						
	3						
	4						
	5						
희망 서비스	희망 서비스내용(희망기간)						
	(예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매주 월, 금요일 2시간씩 / 3개월)						
활동참여경로	<input type="checkbox"/> 관련신문 <input type="checkbox"/> 인터넷(경로:                   ) <input type="checkbox"/> 주변권유 <input type="checkbox"/> 홍보전단지(리플렛)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의견							

우리가족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시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귀하



<서식3>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영역 점검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영역 점검표 ■

생활코디네이터 성명				
활동가능 범위	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시간	9시-12시( ) 12시-18시( ) 18시 이후( ) 기타( )		
	지역			
희망분야	활동순서	코드	활동가능한 세부내용(해당할 경우 모두 체크)	제시활동 외 기타활동(서술)
여성결혼 이민자 학습지원		1	<input type="checkbox"/> 한국어지도(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	
		2	<input type="checkbox"/> 위생(치아관리, 쓰레기분류, 냉장고관리, 세탁법 등)	
		3	<input type="checkbox"/> 요리(상차림교육, 시장보기, 김치담그기, 반찬만들기 등)	
		4	<input type="checkbox"/> 예절(인사, 높임말 등)	
		5	<input type="checkbox"/> 육아(임신·출산교육, 목욕시키기, 분유타기 등)	
		6	<input type="checkbox"/> 교통(대중교통이용법, 길건너기, 신호지키기 등)	
		7	<input type="checkbox"/> 관공서(우체국, 동사무소 등), 금융, 의료기관, 생활시설 이용법	
		8	<input type="checkbox"/> PC(사용법, 메일작성법 등)	
		9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탐방(지역문화 체험, 역사 알기 등)	
자녀 학습지원		10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지도	
		11	<input type="checkbox"/> 학교 수업내용 및 숙제 지도	
		12	<input type="checkbox"/> 학교 및 학원 등의 준비물 점검	
		13	<input type="checkbox"/> 놀이지도(실내, 실외)	
가사활동 지 원		14	<input type="checkbox"/> 세탁 및 관리	
		15	<input type="checkbox"/> 청소 및 정리정돈	
		16	<input type="checkbox"/> 주거시설 환경 점검(고장여부, 안전상태, 위생상태 등)	
		17	<input type="checkbox"/> 식사준비(장보기) 및 취사(상차림보조·생신상, 명절상 등)	
		18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보조(목욕시키기, 분유, 이유식먹이기 등)	
정서 및 외출지원		19	<input type="checkbox"/> 말벗	
		20	<input type="checkbox"/> 체육활동	
		21	<input type="checkbox"/> 관공서, 금융·의료기관, 생활시설 이용 동행	
		22	<input type="checkbox"/> 국적취득 절차 동행(출입국관리소, 법원 등) 지원	
자원지원		23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필요정보제공(생활·문화정보, 임신·출산정보 등)	
		24	<input type="checkbox"/> 전문가관연계(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연계)	
		25	<input type="checkbox"/> 상담연계(부부 및 부모상담, 친인척, 시부모 상담, 취업상담 등)	
기타서비스 (구체적으로 기입)		26	<input type="checkbox"/> _____	
		27	<input type="checkbox"/> _____	
MBO				

<서식 4>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서약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서약서 ■

본인은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엄수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수 사항 -

1.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본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대상가족을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
3.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대상가족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
4.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가족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5. 대상가족과 약속한 시간(혹은 서비스 내용)이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거나 제공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해당 가족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6.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서비스 제공 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7.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로서 활동 중에는 절대로 음주나 흡연 및 대상가족에게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기타행위를 할 수 없다.
8. 대상가족이 신청한 서비스 내용을 변경(혹은 중단)하고자 할 경우나 예상외의 서비스 활동이 제공될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9.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활동 중이나 활동이 종결되었을 경우 모두 비밀보장 하도록 한다.
10.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인의 사정 변경에 따라 활동이 어려운 경우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시 (        구) 건강기정지원센터장 귀하

<서식5>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욕구조사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희망서비스 욕구조사표 ■

이용가족 대표자명				
서비스 이용 희망범위	요일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시간	9시-12시( ) 12시-18시( ) 18시 이후( ) 기타( )		
	지역			
희망분야	희망순역	코드	희망하는 세부내용(해당할 경우 모두 체크)	기타 희망서비스(서술)
여성결혼 이민자 학습지권		1	<input type="checkbox"/> 한국어지도(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	
		2	<input type="checkbox"/> 위생(치아관리, 쓰레기분류, 냉장고관리, 세탁법 등)	
		3	<input type="checkbox"/> 요리(상차림교육, 시장보기, 김치담그기, 반찬만들기 등)	
		4	<input type="checkbox"/> 예절(인사, 높임말 등)	
		5	<input type="checkbox"/> 육아(임신·출산교육, 목욕시키기, 분유타기 등)	
		6	<input type="checkbox"/> 교통(대중교통이용법, 길건너기, 신호지키기 등)	
		7	<input type="checkbox"/> 관공서(우체국, 동사무소 등), 금융, 의료기관, 생활시설 이용 법	
		8	<input type="checkbox"/> PC(사용법, 메일작성법 등)	
		9	<input type="checkbox"/> 지역문화탐방(지역문화 체험, 역사 알기 등)	
자녀 학습지권		10	<input type="checkbox"/> 기초학습지도	
		11	<input type="checkbox"/> 학교 수업내용 및 숙제 지도	
		12	<input type="checkbox"/> 학교 및 학원 등의 준비물 점검	
		13	<input type="checkbox"/> 놀이지도(실내, 실외)	
가사활동 지 권		14	<input type="checkbox"/> 세탁 및 관리	
		15	<input type="checkbox"/> 청소 및 정리정돈	
		16	<input type="checkbox"/> 주거시설 환경 점검(고장여부, 안전상태, 위생상태 등)	
		17	<input type="checkbox"/> 식사준비(장보기) 및 취사(상차림보조·생신상, 명절상 등)	
	18	<input type="checkbox"/> 자녀양육보조(목욕시키기, 분유, 이유식먹이기 등)		
정서 및 외출지권		19	<input type="checkbox"/> 말벗	
		20	<input type="checkbox"/> 체육활동	
		21	<input type="checkbox"/> 관공서, 금융·의료기관, 생활시설 이용 동행	
		22	<input type="checkbox"/> 국적취득 절차 동행(출입국관리소, 법원 등) 지원	
지역자권 연계지권		23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필요정보제공(생활·문화정보, 임신·출산정보 등)	
		24	<input type="checkbox"/> 전문기관연계(다문화가족 관련 프로그램 참여 연계)	
		25	<input type="checkbox"/> 상담연계(부부 및 부모상담, 친인척, 시부모 상담, 취업상담 등)	
		26	<input type="checkbox"/> _____	
기타서비스 (구체적으로 기입)		27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_____	
MBO				

<서식6>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가족 서약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가족 서약서 ■

우리가족은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준수사항들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우리가족은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적극 협조한다.
2. 우리가족은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를 존중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다.
3. 우리가족은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에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한다.
4.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에게 무리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다.
5.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생활코디네이터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지하도록 한다.
6.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와 약속한 시간(혹은 서비스 내용)이 우리가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생활코디네이터 개인시간을 활용을 위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7.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와 우리가족이 협의한 활동계획 이외의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한다.
8.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가 우리가족이 신청한 서비스 내용을 협의 없이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그 사실을 센터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9.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의 활동기준 위반이나 개인의 사정 등에 따른 경우나 혹은 우리가족이 본 서비스 이용기준 위반이나 가족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반드시 서약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가족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시 (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8>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계획서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계획서 ■

▪ 계획서 유형 :  신규  추가  전체수정  부분수정

코디네이터		성 명		작성일자		관리번호			
이용거점		주이용자 성명						국 가	
		주 소						연 락 처	
희망서비스 정 보		희망기간						희망장소	
		서 비 스 영 역		이주여성 학습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가사활동 지 원	정서 및 외출지원	지역자원 연계지원	기 타 서 비 스
		체크코드							
횟수	제공예정일자	해당근	활동계획				센터에 요청사항 (활동자원, 정보 등)		비고
1			-						
2			-						
3			-						
4			-						
5			-						
6			-						
D A T E	서비스영역		이주여성 학습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가사활동 지 원	정서 및 외출지원	지역자원 연계지원	기 타 서 비 스	총 건수
	예상제공횟수								
기타향후계획 (계획추가, 수정 사유)									



<서식9>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일지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활동일지 ■

코디네이터 성명			관리번호								
이용가정 주이용자 성명			센터 실무자책임 (인)								
횟수	제공일자	해당근	활동내용						활동시간	총시간	
			-							시 분 ~	
			-							시 분	
			-							시 분 ~	
			-							시 분	
			-							시 분 ~	
			-							시 분	
			-							시 분 ~	
			-							시 분	
DATE	서비스영역	이주여성 학습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가사활동 지 원	정서 및 외출지원	지역자원 연계지원	기 타 서 비 스	총 건수	총 방문 횟수	총 활동 시간	
	5회당 합계										
	전체 누계										
기타보고사항											



<서식11>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종결 기록지

■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종결 기록지 ■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이용가정 정보		주이용자명						관리번호			
		주 소						출 신 국			
										연 락 처	
서비스제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서비스영역		이주여성 학습지원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가사활동 지    원	정서 및 외출지원	지역자원 연계지원	기    타 서    비    스	총연계된 코디네이터수 /연년	총지원횟수 /가정명문횟수	총제공 시간	
서비스제공량 (활동일지 총계 참조)											
서비스 종료상태		서비스기간종료		서비스중지 또는 취소(사유기술)							
만족도 응답결과		만족정도	서비스 적합성	도움정도	재이용의명정도	추천의명정도	평균				
<p>우리가족은 위와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이에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이용을 종결합니다. 20    년    월    일</p> <p>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이용가족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p>											
<p>본인은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을 종결합니다. 20    년    월    일</p> <p>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_____ (서명 또는 인)</p>											
<p>서울시 (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귀하</p>											
다 문화 가 족 생활코디네이터 담당자 보고란											

※ 위 종결기록지를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및 이용가족과 공유함.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장 서 연 변호사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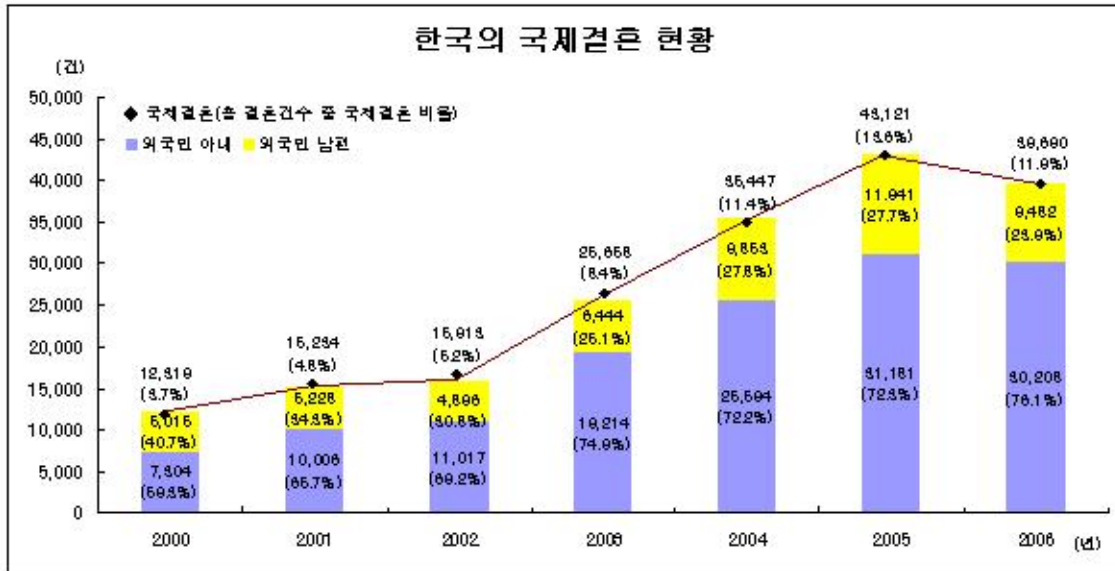
2007년 9월 베트남 여성이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국인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유용되어 두 아이를 출산과 동시에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빼앗기고 “축출 이혼”을 당한 사례가 보도되어 한국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국인 부부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하기 1달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베트남 여성과 이혼한지 1달도 채 안되어 재혼신고를 하였다는 정황을 통하여 그들이 베트남 여성을 대리모로 유용하고자 사전 의도하였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같은 해 7월에는 19세의 결혼이주여성이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 사채로 발견되었다. 결혼중개업체 소개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을 기다린 것은 지하 월세방에서 감금과 다름없는 생활이었다. 한 달 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이주여성에게 되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범인으로 검거된 남편은 수사과정에서 “돈 들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자꾸 돌아간다고 해 찾김에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은 사례는 국제결혼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집적되어 표출된 사안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인권의 절규이다. 현재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유지하며 평온한 듯 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의 긍정적 힘의 발현에 의한 것이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정비와 지원에 의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인권 피해사례는 우리 사회가 결혼 이주를 받아들일 사회제도적 준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2. 국제결혼 현황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보면 국내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7%, 2003년 8.4%, 2005년 13.6%로 급증하고 있다.(표1참고)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이상으로 절대적이다.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 비율이 2005년 2,885건으로 35.9%를, 2006년에는 3,525건으로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절대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1 >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 한 이주여성의 국적별 통계를 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2001년 1.3%, 2003년 7.3%, 2005년 18.7%, 2006년 33.5%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 표 2 참고 >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약” 과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의 활약을 들 수 있다.

< 표 2 > 한국남성과 혼인신고 한 이주여성의 국적별 수 (2007, 통계청)

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0,006	100	11,017	100	19,214	100	25,594	100	31,180	100	30,208	100.0
일본	976	9.8	959	8.7	1242	6.5	1224	4.8	1,255	4	1484	4.9
중국	7,001	70.0	7,041	63.9	13,373	69.6	18,527	72.4	20,635	66.2	14,608	48.4
필리핀	510	5.1	850	7.7	944	4.9	964	3.8	997	3.2	1,157	3.8
<b>베트남</b>	<b>134</b>	<b>1.3</b>	<b>476</b>	<b>4.3</b>	<b>1,403</b>	<b>7.3</b>	<b>2,462</b>	<b>9.6</b>	<b>5,822</b>	<b>18.7</b>	<b>10,131</b>	<b>33.5</b>
몽고	118	1.2	195	1.8	318	1.7	504	2	561	1.8	593	2.0

### 3. 정착과정에서의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법적 쟁점

#### - 가정폭력 실태 및 이를 조장하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

##### 1) 가정폭력의 실태

2005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13~14%,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받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비율이 각각 14%, 9.5%로 나타났다. 적어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10명 중 한명은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하거나 성행위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별거나 이혼을 한 사람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이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 성행위 강요는 40%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인 남편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약 13%가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거나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외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11%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이 8.2%, 본국에 송금을 못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빼앗는 남편도 각각 7~8%정도로 나타나고 있다.<sup>2)</sup>

##### 2) 폭력에 대해 이주여성이 대처하는 방식

창원 여성의 전화가 실시한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식을 빼앗길까봐’ ((42.1%),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서 (10.5), 모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서(10.5%) 등이 나왔다.<sup>3)</sup>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원치 않는 일의 강요를 당한 경우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약 30%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그냥 참고 산다.”고 나타났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8% 정도로 폭력을 경험한 수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2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14%), 신고해도 경찰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13%), 체류자격 불안정에 대한

2)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2005, 127쪽

3) 창원여성의 전화,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복지욕구조사」, 2006.

두려움(10%)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이혼을 생각해야 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국적 취득 여부나 자녀의 문제 등에 있어서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하므로 대부분 참게 되는 것이다.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과 관련된 법적 지위

#### (1) 2004년 국적법의 개정

2004년 이전의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sup>4)</sup>

2004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였다.<sup>5)</sup>

#### (2) 2005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 소지자가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에서 전면적으로 자유

---

#### 4) 국적법 제8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9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5)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로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할 것이다.

또한 예전에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비자) 소지자가 영주비자(F-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5년 동안 거주하도록 했던 것에서 2년 동안 국내 거주하면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이는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취득을 위한 국내거주요건 기간(2년)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이다.

### (3) 그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이외에도 최근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분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① 귀화 신청 시 경제적 능력 입증 요건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도 가능하도록 추가한 점, ② 이혼 소송 진행시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취업활동이 가능하도록 F-2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점, ③ 이혼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에 대한 면접권 보장을 위해 F-2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조치 등이다.

## 4. 법률지원의 실태

2007년 11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6년을 기준으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은 통계는 총 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무료 법률구조사업 중 가정폭력 관련 처리건수는 3,668건으로 이중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1.3%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10명 중 한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2006년 통계 기준으로 결혼이주자의 수가 12만 6천여명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잠재적 폭력 피해 여성의 사례를 약 1만 3천여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에 비교해보았을 때 연 49건의 법률구조 건수는 매우 미비하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정보의 부재 및 통역 서비스 불충분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 사건 담당자들의 인식 및 관련 법률정보의 미약함 등 종합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 5)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과제

### (1) 국내거주기간 요건의 완화를 통한 안정적 신분보장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 체류하는 것으로 국적 취득 전에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귀국해야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처해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적법 제6조에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거주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98년 국적법 개정으로 요구된 국내거주기간 요건에는 외형적으로는 남녀 차별적인 요소를 철폐한다는 목적이 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국제결혼 가정을 2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것은 그 적정성과 합리성이 의심된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가정에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고 이는 부부 간 협상과 타협을 불가능케 하여 가족 내 발생하는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위장결혼 단속’이라는 목적은 이후 국적 심사 과정의 실질화 및 위장결혼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통하여 사후 단속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로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 후 1년이 지난 후 신고를 통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국적 신고일 당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배우자 또한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인 전 또는 후에 자녀가 출생했다면 ‘결혼 후 1년’이라는 국내거주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프랑스 민법 제21조-2)<sup>6)</sup>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경우 노동을 통한 이주와 달리 국내 법·제도적으로 ‘정주’가 허용·전제되어 있다는 점, 가족이라는 매우 친밀하고 사적인 공간으로 유입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혼 이주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신분 보장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실질적 법률지원 구조 마련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미숙하고,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2004년에 개정된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조항에 따라 스스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한 후 국적신청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내국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도 여성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외국인이고 국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신설된 국적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아가 계속 개선되어가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누리기 위해서는 법률 지원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내국인의 가정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력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내국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기금 등을 형성하여 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6) 박원섭, 2007.2,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4. 유입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및 법적 쟁점

#####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중개 행태의 문제

###### 1) 중개업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와 순종적인 기질의 여성을 선호하는 지역 정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농촌 총각 가정 이루기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미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하여 발달되어 있는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크고 작은 한국의 국제결혼중개업자, 브로커들의 활약을 무시할 수 없다.

과다경쟁 구조 속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남성을 모집해서 결혼 성사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많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보다 많은 남성 고객을 호객하기 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유포하고 있다. 그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는 국제결혼에 대하여,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맞아 죽은 베트남 여성” 사례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를 자신이 지급한 금전과 맞바꾼 반대급부인 ‘소유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소유물로서 자신에게 종속된 것으로 인식했던 이주여성이 자유의지를 드러내며 자신을 거부하자 ‘살해’해버린 것이다.

###### (1) 차별적인 광고 행위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국제 결혼할 당사자인 한국 남성을 모집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 차별적·인종 차별적인 광고(예: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현수막은 재혼과 장애라는 결혼시장에서 주변화된 신체들, 위계화된 글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의 주변성,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 한국 사회에 깊게 내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매매혼적 성적 결합이라는 현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 7)

## (2) 부정확한 정보제공

‘국제결혼’ 자체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주의 한 형태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그래서 공간적으로 격리된 두 당사자를 매개해주는 매개자로서 ‘중개업’자의 출현과 개입 또한 필요악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국제결혼 중개” 행위가 “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불균형하고, 부정확하고, 때때로 허위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최종 선택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필리핀 여성 안나(22)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한국인과 결혼했다. 마닐라의 한국인 운영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을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다음날 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 한국에 왔더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엔지니어라는 남편은 트럭 야채상이었고, 나이는 결혼 전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 어떤 결혼업체는 물정 모르는 여성들에게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한다. 8)

또한 통역서비스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을 야기하며, 불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 (3) 자율적인 배우자 결정권의 침해

2005. 3. 당시 가정폭력으로 총남의 한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던 베트남 여성(23세)의 예는

7) 김정선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론: 차이의 문제로서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초래된 가족, 인종, 민족, 국가의 변화들', 2006.

8) 조선일보, 2005. 3. 22. 자.

결혼정보업체가 추천하는 집단 맞선으로 결혼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호치민에서 버스로 남쪽으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짱촌’ 출신이다. 부모 형제 8명과 함께 농사를 짓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현지 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돼 ‘탈 베트남’을 위해 호치민에 올라왔다. 그녀는 결혼정보업체가 추천하는 한국 남성과의 집단 맞선에 참석했다. 이날 선은 며칠 전 대만 남성과의 맞선에 이어 두 번째 선이었다. 그녀는 운이 좋아 200명이 넘는 여성 중에서 1차로 압축된 10여명에 들어가 다시 5명-> 2명-> 1명 순으로 좁혀진 ‘미인 대회식 신부 선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하반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외국 며느리를 보기 위해 찾아온 시어머니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그 선택에 동의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호치민에 올라온 지 9일 만에 결혼이 확정됐다.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마친 후 남편은 출국했다. 그녀는 두 달 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행복하고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중개업자들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해야 하며, ‘일대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 중에 한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 (4)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현재의 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 맞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부채 예측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9) 조선일보, 2005. 8. 22.자.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금’ 뿐 아니라 추가로 200만원을 한국 중개업체에게 변상해야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국제결혼 여성(사례34)은 자신의 부모가 받은 약 25만원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되어왔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베트남의 농가에서는 물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약 25-30만원의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이다.

## 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외 입법·정책

### (1) 베트남

베트남은 2002년 발표된 68호 명령 (Decree No. 68)은 결혼과 가족법 중 국제결혼, 해외입양 등 국외요소가 관련된 조항의 세부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명령 제2조는 국제결혼이 보호됨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국제결혼을 통해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폭행, 기타 착취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하고 (2조 1항), 또한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를 엄중히 금지하였다 (2조 2항)

### (2) 필리핀

필리핀은 1990. 6. 13. 우편주문 신부 금지법 (Anti-Mail Order Bride Law)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는 ① 우편주문방식이나 개인적 소개의 방식으로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과의 결혼을 알선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사업을 하는 행위 ②전술한 금지된 행위들을 조장할 목적으로 소책자등의 선전물의 광고, 출판, 인쇄, 배포를 하는 행위 ③필리핀 여성으로 하여금 영리를 위해 우편주문방식이나 개인소개를 통해 외국인과의 결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협회의 회원이 되도록 소개, 유혹, 등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6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또는 8,000페소이상 20,000페소이하의 벌금을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대만

최근 대만에서도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광고 행위 및 중개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

었다. 대만 정부는 대외적으로 인신매매적 국제결혼과 같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에 대하여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에 대한 광고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결혼 중개행위는 대만에서 금지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대만 정부는 NGO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제결혼 서류 작업만을 대행하는 것 이외 국제결혼 중개 행위 및 국제결혼 광고 행위를 전면 불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sup>10)</sup>

#### (4) 미국

미국은 2006. 1. 5. 양원 합의 발의에 의하여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이 입법·발효되었다. 미국에서도 최근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industry가 급증하여 매년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이 9,500에서 14,500건으로 통계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선정적인 광고 전략에 의하여 과거 가정폭력 등의 폭력 전과를 가진 남성들이 국제결혼 시장으로 쉽게 유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입법의 배경이 되었다. 위 법안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외국인 여성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제공의 범위 및 정보 수집 방법, 정보 제공시 정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여성에게 인권보호 안내 책자 배포 등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 3) 우리 정부의 대응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중개업은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며 2005년 4월 기준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포함해 결혼상담소는 1,000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업체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제결혼 중개행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 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①계약 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법안 제10조) ②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법안 제11조) ③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법안 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10) Allison Lee, '매매혼적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시아 이주여성전략회의', 2006. 11.



#### 4) 앞으로의 과제

현재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 내재되어있는 반인권적이고 여성인권 침해적인 속성은 이후 결혼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혼인 생활을 파탄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한 왜곡된 국제결혼 광고 행태 등은 국제결혼에 대한 도구적 접근과 자국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을 조장·확산시킴으로서 일반 소시민들까지 나서서 국제결혼을 탈법적인 대리모를 구하는 장으로 악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한국 남성의 ‘정신지체’ 장애 사실을 이주여성 측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이다. 정신적 장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장애의 특성과 대량속성으로 이루어지는 맞선 및 성혼 과정과 부족한 통역서비스 제공과 같은 국제결혼 중개 구조 아래에서 은폐된다. 이주여성이 혼인동거생활을 통해 배우자의 정신지체 장애를 확신하게 된 이후 그 가정은 급속한 속도로 파탄의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 및 정보의 은폐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결혼을 결심한 이주여성의 탓으로 여겨지며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안’은 ‘정확한 정보 제공의 내용, 시기, 절차, 방법’ 과 같은 핵심 사항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어 법 시행 이전부터 그 효력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sup>11)</sup>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1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 5.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 을 통해 드러나는 국제결혼에 대한 왜곡된 접근 관점의 문제

### 1) '농어민 지역 국제결혼 비용 지원 사업' 의 실태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농·어촌 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어촌 결혼 기피” 및 “저출산 추이 및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구 감소” 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민 후계자 생활안정과 영농의식 고취” 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05년부터 소위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일정기간(1년~3년) 거주한 일정 연령(30세~35세) 이상의 미혼 남성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결혼중개 수수료의 반액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비용 지원은 대부분 혼인신고 또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3개월 내 사후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sup>12)</sup> 2007. 6. 기준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 관련 정책” 은 3개 광역시도와 60개의 시군에서 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246개 중 24.7%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자치지자체 현황(2007, 여성가족부)

시도	사업시행 기초지자체(A)	전체 기초지자체(B)	비율(A/B)
충북	영동, 괴산, 단양(3)	12	25.0%
충남	보령, 금산, 연기, 부여, 청양(5)	16	31.3%
전북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9)	14	64.3%
전남	강진, 해남, 장성, 진도, 신안(5)	22	22.7%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군위, 의성,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봉화, 울진(19)	23	82.6%
경남	창원, 마산,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김해, 밀양, 양산, 고성, 의령, 함안,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19)	20	95.0%
전국 계	60	246	24.7%

### 2) 사업의 위법 부당성 검토

12)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중 '전국 국제결혼농어민 지원 정책현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7. 6. 7.

## (1) 사업의 목적 부적합성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농·어촌 환경으로 여성들의 농어촌 결혼 기피” 및 “저출산 추이 및 노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위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들의 농·어촌 기피 현상은 열악한 농·어촌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제 개발,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이지 한국 여성이 정착하기를 기피하는 농·어촌에 동남아시아 여성을 이주하도록 하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동남아시아 여성의 농어촌으로의 유입을 통한 농어촌의 인구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며 농어촌 인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동아시아 여성을 대체함으로써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 부적합성이 현저히 결격된 사업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한국여성이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의 신부 자리를 베트남 등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마치 돈만 있으면 아시아 지역의 여성을 데려올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서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에 대한 인종 차별적이고 성 차별적인 왜곡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위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공무원에게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래 문구는 한 지역의 사업 담당 공무원이 하부 지방자치단체로 보낸 사업 안내문의 문구 중 일부이다.

### - A 지역의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사업 안내 공문 내용 중 -

“(중략) 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고 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함을 지닌 천사와도 같으며, 남편에게 헌신적이고 모성애가 강하며, 몸매가 환상적이고 소식하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어 살이 찐 여성이 거의 없다. (중략)”

## (2)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 중개행태의 방조 및 조장

“농어민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은 결국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여성을 상품화하는 진행방식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현실이다. 그런

데도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한국의 남성들을 “인신매매” 적인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업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심각한 인권침해적인 문제점은 2006년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베트남·필리핀 현지 실태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다.

### (3) 한국 남성들에게 현지법 상 불법행위 조장

해남군이 주요하게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가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남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상대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 행위를 지원·조장하고 있으며, 자국민 남성들이 해외에서 불법행위를 하도록 내몰고 있는 것이다.

### (4) 예산 편성의 부당성

베트남 여성을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여성들은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해온다. 그러나 그녀들을 맞이하는 한국 남성들 역시 경제적 능력이 어려워 결혼비용마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남성들이다. 이 두 당사자가 결합한 가정생활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는 데에는 주위 가족과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해보면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정착지원 예산에 비하여 평균 6~7배 이상, 최대 38배까지 격차가 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정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결혼만 시키고 보자는 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책정은 문제적인 국제결혼을 단기간동안 급성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정착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급증 양산된 국제결혼 가정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풀어야할 사회적 갈등의 장이 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의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경시한 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근시안적인 당해 사업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 표 5 >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 예산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예산 비교  
(2007. 여성가족부)13)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구	이민자및가족지원 예산액(A)	국제결혼비용지원 예산액(B)	비용예산비율 (B/A)	결혼이민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예
충북	괴산군	4.5	73	16	결혼이민자가정 한국전통문화체험 캠프
	단양군	20	64	3	산모도우미 지원, 방문교육 사업
충남	보령시	0	50	-	-
	금산군	0	120	-	-
	연기군	0	60	-	-
	부여군	0	90	-	-
	청양군	17	50	3	재녀 국어학습지 지원
전북	정읍시	29	35	1	한글및컴퓨터 교육, 생활교육, 가족 교육, 가족사랑 나누기 행사
	남원시	39	50	1	전통혼례 및 친정가족 모셔오기, 한글교육 및 상담 등
	진안군	10	40	4	가족화합 프로그램 및 교육, 정착지원
	무주군	6	50	8	사회적응프로그램, 전통문화체험 교실
	장수군	41	100	2	한글교육 및 문화교실, 사립캠프, 공무원 결연맺기, 합동결혼식
	임실군	8	60	8	한글교육, 전통체험 및 예절교육
	순창군	46	100	2	한글교육, 문화체험, 재녀학습도우미, 합동결혼식, 교육도우미 등
전남	해남군	21	150	7	각종 교육, 문화체험, 베트남의날행사등
	장성군	14	100	7	문화체험 및 가족캠프, 어울림마당 및 멘토링 행사, 한글교육 등
	진도군	29	42	1	사회적응교육, 외국문화 체험장 등
	신안군	15	18	1	공동체교육, 한마음 체육대회
경북	포항시	10	32	3	가족캠프 운영, 문화유적 탐방
	경주시	0	24	-	-
	김천시	5	12	2	대모결연 및 화합행사
	안동시	0	24	-	-
	구미시	0	12	-	-
	영주시	0	63	-	-
	영천시	4	12	3	대모결연 행사
	상주시	12	24	2	문화체험, 이주여성도우미 운영
	경산시	20	12	1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군위군	2	24	12	어울림 한마당 및 대모결연
	의성군	0	16	-	-
	영양군	0	24	-	-
	영덕군	0	40	-	-
	청도군	2	24	12	우리말 솜씨자랑 대회, 배우자교육
	고령군	0	24	-	-
성주군	0	24	-	-	

13)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중 '전국 국제결혼농어민 지원 정책현황',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2007. 6. 7.

	칠곡군	0	8	-	-
	봉화군	0	24	-	-
	물진군	0	12	-	-
경남	창원시	3,6	21	6	교육도우미
	진주시	0	54	-	-
	통영시	0	10,5	-	-
	사천시	8	10,5	1	정착지원사업
	거제시	0	7	-	-
	김해시	5	16,8	17	국적별 언어교육
	밀양시	1	10,5	11	결혼기념일 축하카드 전달사업
	양산시	2	16,8	17	국제결혼가정 교육 캠프
	의령군	0	44	-	-
	함안군	0	56,4	-	-
	고성군	0	24	-	-
	남해군	0	174	-	-
	하동군	0	14	-	-
	산청군	12	20	2	한글교육
	합양군	4	150	38	여성결혼이민자 자매결연
	거창군	12	54	5	생활문화교육
합천군	0	94	-	-	
계	402,1	2,465	6		

### 3) 소결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UN여성차별철폐협약 제 1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정책으로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 할 것이며, 이 밖에도 보조금 집행과 결산 과정에 있어서도 위탁 기관의 비위가 현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또는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폐지청구, 주민감사청구,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 6. 배타적인 정부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 1) 행정부의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sup>14)</sup>’ 과 법무부의 ‘제한외국인체우기본법<sup>15)</sup>’

14)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①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조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자체별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을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하고,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을 표창하는 한편, 명예시민으로 예

## 의 패타성

최근 정부는 외국인 100만 시대, 10쌍 중 한 쌍이 국제 결혼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 생산에 분주하다.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과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법무부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그 산물이다. 그런데 양 법 모두 법 적용의 대상을 “합법” 체류자로 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불법 체류 외국인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 2)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적 시선

### (1)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절실하다.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200시간)를 의무화할 것이며 이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류 상 불이익도 부가하겠다고 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

---

우할 수 있다.

- 1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①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야하며(제5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제8조), ③주요 외국인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서 ④재한외국인의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노력하여야하며(제10조), ⑤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11조), ⑥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⑦난민과 영주권자에 대하여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 14조) ⑧제20조에서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적응 현상은 국제결혼 2세에게 영향을 미쳐 언어능력의 취약함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이와 같은 ‘문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이유 중 ‘의사소통 어려움’의 문제는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이주자 당사자가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한글 습득은 너무도 절실하다. 이와 같은 문제 진단과 당사자들의 수요에 따라 많은 지자체와 지역 NGO들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양산해내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불균질하다는 지적도 함께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표준화하여 우리사회 이주자들에게 균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구상은 반갑다.

## **(2) 결혼이주자에 대한 한글필기시험 부활 타당한가**

법무부는 현재 필기시험이 의무화되어 있는 일반귀화자의 경우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예상문제집을 단순 암기하는 등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법무부자료 p.8) 그런데 법무부는 결혼이주자의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기 때문”에 한국어, 우리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분석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자인하고 있듯 현재 일반귀화자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필기시험은 매우 형식화·형해화되어 있어 한국사회로의 적응정도와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유용하지 않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한국 가족제도로의 편입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정책 담당자들은 귀화 거주요건의 간이화(2년) 및 필기시험 면제라는 정책적 결단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필기시험의 의무화가 이주자의 한국사회로의 사회통합을 가능하기에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한글필기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3) 사회통합교육의 이수화·의무화 방식이 적절한가**

정부의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이 스스로 표명하고 있듯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서 이주여성의 ‘인권’ 적 측면에서 ‘지원’ 서비스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패널티’ (국적 취득 불허, 체류상 불이익)를 추가하는 방식의 통합 교육 ‘의무화’ 정책은 부적절하며 그 취지에 역행한다. 결혼 이주자와 그 가족에게도 한국어 습득은 당연한 최대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능력 취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사회통합 정책은 시작되어야 한다.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프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중략)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려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 후안마이 사망 형사사건 판결문 전문 중 -

한글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가족들의 인식 부족, 한글교육 정보 및 장소에 대한 부족한 접근성, 교육 내용의 불균질성 등이 결혼이주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현주소라면 이와 같은 취약한 환경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은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채 일단 사회통합교육을 ‘의무화’ 하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너무나도 안일하고 단순하다.

결혼 이주자는 아내로서 가사돌봄,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나아가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중 삼중의 과중한 부담을 안고 결혼 이주자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선 한국사회에서 생존하고자 홀로 고분분투하고 있다. 그러한 결혼이주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한국인 가족들과 한국사회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현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는 정반대로 그러한 과중한 짐이 놓여있는 이주여성의 어깨에 “사회통합 교육 이수” 라는 또 다른 돌덩이를 얹으려 하고 있다.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해야할 국가의 책무를 결혼이주자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혼이주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문제시하는 시선에 대하여

통합교육 의무화 정책은 국제결혼 가정의 2세들의 더딘 한국어 취득 능력을 ‘문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배타적이다. 국제결혼 가정 2세의 한국어 능력의 취약함이 ‘이국어’를 쓰는 모(母) 또는 부(父)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단을 통해 외국인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을 단기간내 높여야한다는 발상에서 사회통합의무화 정책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사회통합의무화 정책은 나와 다름을 구별하고 문제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내포한다. 부와 모의 언어가 다른 가정에서 출생한 2세들이 부 또는 모 일국의 언어를 취득하는 속도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가진 2세와 비교했을 때 더딘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더딘 한국어 능력을 ‘문제시’하는 접근 방법이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에게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부 또는 모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아동의 사회적 인격 형성에 장애로 작용하여 오히려 문제를 심화 왜곡시킨다. 국제결혼 2세들의 더딘 한국어 취득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모 또는 부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부터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 교육은 출발되어야 한다.

## 7. 나가며

지난 8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내 인신매매적인 국제결혼 증가와 국제결혼 가정 내 만연한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결혼중개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과 결혼중개업자와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이주여성에게 그들의 권리와 구제방법,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을 알려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기에 발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권고문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우려와 권고가 제기되었다.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집중된 국제화된 이슈인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지수가 그 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의 인권실태로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야말로 ‘이주민’으로, ‘여

성'으로, '빈곤층'으로 겹겹으로 차별받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찾대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사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안아 국제결혼의 성립과 정착의 전 진행과정이 국제 사회의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후안마이 (남편구타로 사망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 의 편지**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픉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한국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국에서도 부인이 기뻐 보이지 않으면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왜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는지, 당신은 아세요?

남편이 어려운 일 익는해 주고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아내를 제일 아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저는 당신의 일이 힘들고 지친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저도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나중에 더 좋은 가정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은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하고, 그럴 때마다 이혼을 말하고, 당신처럼 행동하면 어느 누가 서로 편하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한 여성의 삶에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좋으면 결혼하고 안 좋으면 이혼을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진실된 남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결혼에 대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누구든지 원망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물론 부부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가 너무 많아 결국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사람의 감정을 존경하고 이해하는 사람에게서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상황들과 원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자존심이 있고 자신을 '정답'에 서게 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부부가 행복할 수 없고 위협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중략) 당신은 저와 결혼했지만, 저는 당신이 좋으면 고르고 싫으면 고르지 않을 많은 여자들 중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깐요.

당신은 아세요?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호치민 시에서 일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을 위해서 일을 나가야 했고,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봉급은 얼마 못 받았지요. 저는 노동이 필요한 일도 했었어요. 그 일은 매우 힘들었어요. 그것이 가족을 기르는 일이든, 농작을 하는 일이든. 가족들은 노동일로 벼를 심고 베는 일을 했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입을 것과 먹을 것만 겨우 충당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더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고, 단지 당신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만을 바랬을 뿐이에요. 저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고 또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베트남에 돌아가게 되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저 말고 당신을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는 여자를 만날 기회가 오기를 바래요. 당신이 잘 살고 당신이 꿈꾸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저는 베트남에 돌아가 저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하여 다시 처음처럼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이제 이것뿐이에요. 당신과 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대화를 할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정말로 하느님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더 이상 무엇을 적을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 글씨 또한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인데요....

##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이영호 센터장(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 1. 생활 및 생활설계 : “사는게 무엇인지?”

삶은 곧 생활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생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의 생활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생활을 포함하는 광의의 생활을 지칭하여 “생존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존을 포함한 행위의 총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 글자의 어원적 의미에서 보면 生이라는 글자의 뜻은 발아생성(發芽生成)의 모습, 즉 생명을 의미하고, 活은 생기(生氣)를 의미한다. (지영숙외, 1995)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활의 단계를 나눈다면 노동과 휴양만으로 순환하는 생활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위락이 더하여 순환하는 생활, 최고의 단계는 나아가 교양이 더해져서 순환하는 생활이 있다. (大森和子 외, 1981)

생활이란?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생활 vs 생존	생존(生存)	생명의 유지 및 계속의 기능이 영위되는 것
	생활(生活)	생존의 개념 + 주체성, 목적의식
생활의 단계	1단계	노동 + 휴식
	2단계	노동 + 휴식 + 오락
	3단계	노동 + 휴식 + 오락 + 교양

생활은 우리가 그냥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내 삶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영위해야 하며, 우리의 생활도 교양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의 의미와 단계를 생각하며 우리는 자신의 삶에 과연 주인공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제 행복이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때 내 삶의 점수는 얼마나 될지 또한 나는 몇 점 짜리의 미래를 희망하는지 아래 표에 표시하여 보자.

< 표 1>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삶의 연속선 상에서 확인하는 점수

100점									100점
90점									90점
80점									80점
70점									70점
60점									60점
50점									50점
40점									40점
30점									30점
20점									20점
10점									10점
점수	30년 전	20년전	10년 전	현재	10년 후	20년후	30년 후	40년후	점수

자신이 표시한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하여 보고, 그 점수가 과거 10년 전에 희망했던 10년 후의 점수인지도 생각하여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 희망한 10년 후의 점수는 10년이 지난 현재가 되었을 시점에서 동일한 점수일지도 생각하여 보자.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생활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과거에 자신이 기대했던 삶과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고 미래의 삶이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

내 자신의 삶의 점수에서 나아가 가정이라는 단위를 두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가족이 되어 함께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족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이 새롭게 하나의 생활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고, 또 서로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그 가운데 각자의 존재성이 삶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가정을 경

영해 나가야 한다.

생활이란 일정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적 존재로서 생명, 생존을 포함하는 일상적 행위의 통합체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생활체는 바로 가정으로서 가족은 그 주체이다. 생활하는 주체로서 개인 및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 라는 존재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을 생활설계라 한다. 생활설계란 앞으로 일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써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생애를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생활과 관계되는 여러 요소들을 어떻게 상호 관련 짓느냐와 관계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정된 일생을 살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때 ‘보다 나은 생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좋은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에 대한 가치적 규명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나은 생활이란 보다 충실하고 안정된 생활**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생활을 설계한다는 것은 생활 주체와 관련하여 실제적이어야 하며, 사회, 경제, 문화, 규범과의 관계에서도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이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어야하는 생활방식을 유도해야 한다. 생활설계는 삶의 연속선위의 어느 시기, 어느 누구에게도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필요한 것이다.

## 2. 가정생활의 영역에 따른 가정생활진단 : “다양한 삶의 영역”

여기에서 소개하는 진단지는 보건복지부 후원 아래 사단법인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에서 2003년도에 개발한 것으로 9개의 영역(① 우리 가정의 생활양식 ② 나의 가정경영 스타일 ③나는 어떤 주부인가 ④ 우리 부부의 시간사용 스타일 ⑤우리 부부의 여가 ⑥우리 가정의 주거생활 ⑦ 우리 가정의 경제생활 ⑧우리 가정의 가족건강도 ⑨가정생활만족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가정생활 영역별 진단 문항과 함께 진단 결과가 주어진다.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영역 : 우리 가정의 생활양식**

다음의 문항을 통해 귀하가 평상시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행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실생활에서 **필수 실천하시는 비**에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생활양식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
건강 중시형 생활	1) 영양상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식사준비를 한다.					
	2)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여 외식, 인스턴트 식품을 자제한다.					
	3) 건강,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실천한다.					
	합계점수	( ) 점				
여가 중시형 생활	4) 여가를 위해서는 기꺼이 지출한다.					
	5) 여가, 교양 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6) 가족이나 친구와의 여가를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한다.					
	합계점수	( ) 점				
노후 중시형 생활	7) 주위에서 노인을 보면 나의 노년에 대하여 생각한다.					
	8) 가족, 친구들과 나의 노년기에 대한 대화를 한다.					
	9) 이전부터 노후준비(정서적, 경제적, 기타)를 해오고 있다.					
	합계점수	( ) 점				
자기개발 중시형 생활	10) 나와 우리 가족은 독서, 교양강좌 참여 등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한다.					
	11) 나와 우리 가족은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					
	12) 나와 우리 가족은 자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활용한다.					
	합계점수	( ) 점				

채점평가	<p>건강 중시형/여가 중시형/노후 중시형/자기개발 중시형 각각의 세 영역에 있는 문항의 점수를 합하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을 중시하는 생활태도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점수의 순서를 통하여 귀하께서 무엇을 보다 중시하는 생활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	---



**2영역 : 주부 정체성**

귀하는 (자신의) 주부역할과 가사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 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
(1) 나는 전업주부로서의 가정 내 지위나 역할에 만족한다.					
(2) 가사일을 함으로써 많은 보람을 느낀다.					
(3) 내가 가사일을 하는 데 대해 가족들이 고맙게 생각한다.					
<b>합계점수</b>	<b>(     ) 점</b>				

채점평가	<p>9점 이하 : 당신은 보통의 다른 주부들보다 주부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p> <p>혹시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에 불만이 있나요? 주부 일을 하면서 경제적 소득이 없어 불안하거나 불만족스럽나요? 가족들이 당신에게 별로 고마워하지 않나요? 나는 별로 전업주부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부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과 사회에서 전업주부의 가치, 내가 날마다 하는 가사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부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p> <p>10점-11점 : 당신은 주부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해 보통의 다른 주부들과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주부들에 비해서는 주부역할이나 가사노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불만이 있다면,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업주부의 역할, 내가 날마다 하는 가사노동은 참 중요합니다.</p> <p>12점 이상 : 당신은 보통의 다른 주부들보다 주부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업주부라는 것에 만족을 하며, 날마다 하는 가사노동에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고 계시군요.</p>
------	---

**3영역 : 가정경영 스타일**

다음의 문항을 통해 얼마나 합목적적으로 가정을 경영하는지 분석,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매일매일 가정살림을 하면서 다음 사항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런 편이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
(1)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중요한 일부터 한다.					
(2)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					
(3) 가족들의 요구에 맞추어 비목별로 예산을 세운다.					
(4)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자녀교육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6) 은퇴나 노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합계점수	(      ) 점				

채점평가	<p>18점 이하 : 당신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시간을 계획 있게 사용하지 못하며, 자주 미루는 편입니다.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해 보통의 주부들보다 잘 모르고 있는 편이며 총동구매를 할 소지도 있고 기록하는 습관도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쓸데없는 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않도록 주의하고 가족의 요구에 맞춘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19-25점 : 당신은 시간관리, 금전관리 및 노후준비, 자녀교육을 할 때 보통의 다른 주부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p> <p>26점 이상 : 당신은 약속도 잘 지키는 편이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도 하면서 목표에 따라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고,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예산 내에서 소비를 하거나 가게부 등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이나 은퇴,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고 있군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정경영 스타일에 만족하고 있고 가정생활에 만족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p>
------	---

**4영역 : 시간사용**

다음의 문항에서는 부인과 남편이 가족원 돌보기, 가족단란, TV시청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생활시간사용의 균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나의 시간사용**

최근의 생활을 돌아볼 때, 귀하는 다음의 생활내용에 대하여 하루 평균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써 주십시오.

활 동	시 간
(1)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 (아이돌보기, 놀아주기, 숙제 봐주기, 남편똥바라지, 노인 돌보기 등)	하루 _____ 분
(2) 가족과의 단란(가족/자녀와의 대화, 잡담 등)	하루 _____ 분
(3) TV시청(비디오 보기 포함)	하루 _____ 분

채점 평가	(1)	<p>-149분 이하 : 당신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다른 주부들과 비교하여 적습니다. 혹시 가족에게 내가 주부로서 너무 소홀히 하는 점이 있지는 않은가 생각될 때가 있나요? 자녀들이 커서 엄마에게 큰 요구가 없거나, 남편도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내가 귀찮아서 가족원에게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p> <p>-150분 ~ 179분 : 당신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다른 주부들의 평균시간과 유사합니다. 즉 가족원을 돌보는 시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180분 이상 : 당신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주부들과 비교하여 더 많습니다. 가족원을 돌보는 것이 귀찮고 힘들 때가 있는지, 혹시 시간압박이나 부담을 느끼는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가족원 돌보기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럴지도 모르니까요.</p>
	(2)	<p>- 119분 이하 : 당신이 가족과 단란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적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시나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p> <p>- 120분 ~ 135분 : 당신이 가족과 단란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보통의 다른 주부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사용에 만족하는 주부들보다는 적습니다. 혹시 전반적인 시간사용에 불만족이 있다면, 가족단란시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으므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p> <p>- 136분 ~ 164분 : 당신이 가족과 단란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보통의 다른 주부들보다 많은 편이지만, 자신의 시간사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주부들과는 유사합니다. 전반적인 시간사용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 165분 이상 : 당신이 가족과 단란하게 함께 보내는 시간은 다른 주부들보다 많은 편입니다.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좋지만, 적절한 균형을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단란시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p>
	(3)	<p>-149분 이하 : 당신의 TV시청시간은 다른 주부들에 비해 적습니다. TV시청시간이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대신 다른 어떤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p> <p>-150-179분 : 당신의 TV시청시간은 보통의 다른 주부들보다 유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사용에 만족하는 주부들보다는 많습니다. 혹시 시간압박을 갖고 있거나 당신의 시간사용에 불만족하고 계신다면, TV시청시간이 너무 많아서일지도 모릅니다.</p> <p>-180분 이상 : 당신의 TV시청시간은 다른 주부들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간사용에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TV 시청시간을 다소 줄이면 좋겠습니다.</p>

## (2) 남편의 시간사용

최근의 생활을 돌아볼 때, 귀하의 남편께서는 다음의 생활내용에 대하여 하루 평균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써 주십시오.

활 동	시 간
(1) 자녀나 가족원 돌보기 (아이 돌보기, 놀아주기, 숙제 봐주기, 남편 뒷바라지, 노인 돌보기 등)	하루 _____ 분
(2) 가족과의 단란(가족/자녀와의 대화, 잡담 등)	하루 _____ 분
(3) TV시청(비디오 보기 포함)	하루 _____ 분

채 점 평가	(1)	-34분 이하 :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습니다. 남편께서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35분 ~ 45분 :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보통의 다른 남편들과 유사합니다. -46분 이상 : 귀하 남편의 가족원 돌보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른 남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가족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그 때문에 혹시 다른 시간사용에 불균형이 있지는 않은지, 시간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59분 이하 : 남편이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남편과 비교하여 적은 편입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0-89분 : 남편이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는 시간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편이지만, 남편의 시간사용에 만족하는 주부들의 남편과 비교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님께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께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90-119분 : 남편이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는 시간은 보통의 다른 남편들에 비해서는 많고, 남편의 가족 단란시간에 만족하는 주부들의 남편과는 유사합니다. 따라서 큰 문제가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가족원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120분 이상 : 남편이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다른 남편에 비해 무척 많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남편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귀하의 남편께서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군요.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 다른 시간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런 문제가 있나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119분 이하 : 남편의 TV시청시간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습니다. TV 시청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하여 불만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120-149분 : 남편의 TV시청시간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편입니다. 큰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0분 이상 : 남편의 TV시청시간은 보통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시간활용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남편의 TV시청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5영역 : 여가생활**

다음의 문항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여가생활을 진단, 분석함으로써 여가생활의 합목적성과 균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나의 여가생활**

최근의 여가활동을 기억하여 해당되는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운동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2) 모임이나 교제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3) 강습이나 취미활동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4) 종교활동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5) 음악회, 영화감상, 전시회 등의 문화활동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6) 여행이나 가족나들이	① 거의 하지 않음 ② 6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이상

채점 평가	(1)	일반 주부들은 3-4달에 1번 가량 운동을 하고,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2-3달에 1번 가량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운동은 건강과 생활 전반에 필요한 것이니, 운동에 관심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2)	일반 주부들은 1달에 2-3번 가량 모임을 갖고,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1달에 2-3번 가량 모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시고,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불만스럽다면 모임이나 교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 많고 그래서 개인적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모자라고 이에 불만을 느끼신다면 모임이나 교제를 다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3)	일반 주부들이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3-4달에 1-2번 가량 강습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신 후, 강습이나 취미활동에 큰 관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습이나 취미활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강습이나 취미활동이 너무 많아 다른 여가활동이나 시간활용에서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자신의 종교를 갖고 있는 주부는 전체의 57%입니다. 종교가 있는 주부들은 대개 1주일에 1-2번 가량의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른 여가활동과는 달리 참여도가 많고 적응에 따라 문제가 있다거나 혹은 괜찮다거나 하는 평가를 내리기 힘든 항목입니다. 내가 다른 주부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만 이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일반 주부들이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1달에 1-2번 가량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쉼시 문화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불만이 경우에는 문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문화활동시간이 너무 과해서 가정생활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일반 주부들이나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주부들은 1달에 2-3번 가량 여행이나 가족나들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족나들이에는 돈도 필요하지만 시간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중요합니다. 혼자 혹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여행이나 가족나들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가족과 함께 이 점에 대해 대화해 보고 여행과 나들이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부부공유여가

최근에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기억하여 해당되는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운동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2) 모임이나 교제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3) 강습이나 취미활동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4) 종교활동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5) 음악회, 영화감상, 전시회 등의 문화활동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6) 사회봉사활동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7) 여행이나 가족나들이	① 부부가 함께 함 ② 함께 하지 않음

채점 평가	(1)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운동을 함께 하는 비율은 약 18%,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은 26%입니다.
	(2)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모임이나 교제를 함께 하는 비율은 37%,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은 46%입니다.
	(3)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강습이나 취미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은 28%이며,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 함께 강습이나 취미활동을 하는 비율은 36%입니다.
	(4)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종교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은 22%이고,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활동을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은 30%입니다.
	(5)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문화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은 27%,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문화활동을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은 36%입니다.
	(6)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활동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비율은 2%,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부가 함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비율은 4%입니다.
	(7)	보통의 다른 부부들이 여행을 함께 하는 비율은 41%, 가정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여행을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은 55%입니다.

**6영역 : 주택과 주거환경**

다음의 문항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와 구조, 주거환경을 분석, 진단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적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하신 집에 함께 살고 계신 가족은 몇 명입니까? (      명)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보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_\_\_①자가 \_\_\_②전세 \_\_\_③월세 \_\_\_④사글세 \_\_\_⑤기타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규모와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면적(      평) (주택은 건평 기준) 방(      개) 화장실(      개)

귀하 가족이 살기에 현재의 주택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_\_\_①매우 좁다 \_\_\_②좁은 편이다 \_\_\_③적당하다 \_\_\_④넓은 편이다 \_\_\_⑤매우 넓다

귀하는 귀댁의 주택, 주거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_\_\_①매우 불만족한다 \_\_\_②불만족하는 편이다 \_\_\_③보통이다 \_\_\_④만족하는 편이다  
\_\_\_⑤매우 만족한다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신 거주지의 주거환경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나쁘다 (1점)	별로 좋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좋은 편이다 (4점)	매우 좋다 (5점)
1) 소음의 유무					
2) 재래시장, 근린상가, 백화점 이용의 편리성					
3) 출퇴근의 용이성					
4) 대중교통 이용의 용이성					
5) 학군					
6) 교육환경 저해요인(유형가, 러브호텔 등) 유무					
7) 놀이방,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편리성					

채 점 평가	(1)	1,2점 : 당신은 일반 가정에 비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3점 : 당신 가정의 소음 수준은 일반 가정과 유사합니다. 4,5점 : 다른 사람들보다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2점 : 당신 가정의 시장 이용 편리성은 낮은 수준입니다.. 3점 : 시장이용의 편리성이 일반 가정과는 유사하지만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사람들보다는 떨어진다. 4점 : 일반 사람들보다는 시장이용성이 편리하지만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사람들과는 유사한 정도입니다. 5점 : 당신 가정의 시장이용 편리성은 높습니다.
	(3)	1,2,3점 : 일반 가정보다 출퇴근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점 : 일반 가정보다는 출퇴근의 용이성이 다소 높고,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5점 : 당신 가정의 출퇴근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4)	1,2점 : 일반 가정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3점 : 일반 가정과는 대중교통 이용의 용이성이 유사하지만,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보다는 다소 불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점 : 일반 가정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지만,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5점 : 당신 가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5)	1,2점 : 일반 가정에 비해 학군에 대한 불만이 큰 편입니다.. 3점 : 학군에 대한 만족은 일반 가정과 유사하지만,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에 비하면 약간 떨어집니다. 4점 :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의 학군 만족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점 : 당신 가정은 학군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1,2점 : 다른 가정에 비하여 교육시설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3점 :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과 유사한 정도로 평가하며,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4점 : 당신의 가정은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과는 유사한 정도로 교육시설에 대해 만족합니다. 5점 : 다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보다 교육시설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7)	1,2,3점 : 다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보다 보육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4점 : 다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과 유사한 정도로 보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점 : 다른 가정 그리고 자신의 주거에 만족하는 가정보다 보육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영역 : 경제생활**

다음의 문항에서는 소득, 지출, 저축, 부채 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 가정경제상태를 분석, 진단함으로써 가계경제의 안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귀 가정의 기본적인 경제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비목	액수
(1) 월평균 소득액	월 _____ 만원
(2) 월평균 지출액	월 _____ 만원
(3) 월평균 저축액	월 _____ 만원
(4) 월평균 부채상환액	월 _____ 만원
(5) 유동자산 * 현금, 예금액, 주식 및 채권, 등을 더한 액수	총 _____ 만원
(6) 고정자산 * 주택, 토지, 건물의 가치, 전월세보증금 등을 더한 액수	총 _____ 만원
(7) 총부채 * 채무, 외상 및 할부금 잔액 등을 더한 액수	총 _____ 만원
(8) 순자산 (유동자산+고정자산-총부채) * 위의 (5)유동자산과 (6)고정자산을 더한 액수에서 (7)총부채를 뺀 액수	총 _____ 만원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의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치
(1) 월평균 지출액 / 월평균 소득액 (월평균지출액을 월평균 소득액으로 나누세요)	
(2) 유동자산 / 월평균 지출액 (유동자산을 월평균 지출액으로 나누세요)	
(3) 유동자산 / 순자산 (유동자산을 순자산으로 나누세요)	
(4) 유동자산 / 총부채	
(5) 총부채 / 순자산	

채점 평가	(1)	본 비율은 소득에 대한 소비비율로서 초과지출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1.0을 넘으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보통 가정의 수치는 0.76이고, 가계정제에 만족하는 가정의 수치는 0.61입니다.
	(2)	본 비율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적어도 3~6개월의 지출을 견딜 수 있는 비상자금이 필요하므로 수치가 3.0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수치가 3.0을 넘어야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통 가정의 수치는 16.2이고, 가계정제에 만족하는 가정의 수치는 21.13입니다.
	(3)	본 비율은 순자산 중에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산은 크게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배분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현금유동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0.25를 넘어야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통 가정의 수치는 0.25이고, 가계정제에 만족하는 가정의 수치는 0.37입니다.
	(4)	본 비율은 갖고 있는 유동자산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가계의 재정적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수치가 1.0을 넘어야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통 가정의 수치는 1.85이고, 가계정제에 만족하는 가정의 수치는 3.65입니다.
	(5)	본 비율은 가계의 지불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총 부채액이 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가계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치가 1.0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수치가 1.0 미만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보통 가정의 수치는 .15이고, 가계정제에 만족하는 가정의 수치는 .16입니다.

#### 8영역 : 가족관계

다음의 문항에서는 가족원간의 친밀성, 의사소통, 가치공유, 문제해결능력을 분석, 진단함으로써 가족관계의 건강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나쁘다 (1점)	별로 좋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좋은 편이다 (4점)	매우 좋다 (5점)
친밀성	1)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외식, 여가, 여행, 취미, 산책 등)을 즐긴다.					
	2) 우리 가족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점수합계	( ) 점				
의사소통	4)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5) 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점수합계	( ) 점				
가치지향	6)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 신념을 갖고 있다					
	7)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일치한다.					
	점수합계	( ) 점				
문제해결 능력	8)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9)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함께 나누어 한다.					
	점수합계	( ) 점				

채점평가	친밀성	8점 이하 : 다른 가정 그리고 행복도가 높은 가정에 비하여 가족원 간 친밀성이 낮은 편입니다. 9-10점 : 다른 가정과 친밀성 정도가 유사하지만, 행복도가 높은 가정보다 다소 낮습니다. 11-12점 : 다른 가정보다는 친밀도가 높고, 행복도가 높은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13점 이상 : 당신의 가정은 친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소통	6점 이하 : 다른 가정보다 의사소통의 질이나 정도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점 : 다른 가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행복도가 높은 가정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8점 : 다른 가정보다 의사소통의 질과 정도가 약간 높으며, 행복도가 높은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9점 이상 : 당신 가정의 의사소통의 질과 빈도는 매우 높습니다.
	가치지향	5점 이하 : 다른 가정보다 가족이 공유하는 가치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6-7점 : 다른 가정과 유사한 정도의 가족공유가치를 갖고 있으며, 행복도가 높은 가정보다는 다소 적습니다. 8점 : 다른 가정보다 가족공유가치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행복도가 높은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9점 이상 : 당신의 가족은 가족간에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6점 이하 : 다른 가정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점 : 다른 가정과 문제해결능력이 유사하고, 행복도가 높은 가정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8점 : 다른 가정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다소 높으며, 행복도가 높은 가정과는 유사합니다. 9점 이상 : 당신 가정의 문제해결능력은 높습니다.

### 3. 생활설계의 방법 : “생활의 주인공이 되는 다문화여성”

생활설계란 장래에 예상되는 새로운 미래상을 향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운영계획으로 생활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 생활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체성, 변화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계획성이다. (오카무라, 1993)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주체의 형성”이다. 생활설계의 필요성은 첫째, 생활의 자율성 확보, 둘째, 급변하는 생활구조에 대응, 셋째,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생활의 경영능력 실천에 있다.

생활설계는 횡적인 시각과 종적인 시각이 어우러져서 나타난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는 종적, 시간적인 개념과 그에 대한 실천은 현 시점의 생활의 각 영역에서 횡적으로 펼쳐져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요구되는 가정생활영역에 대한 이해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생활목표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을 기록하고 없다면 만들어 보자. 평소에 해보지 않은 경우라면 쉽지 않으므로 아래표에 따라 빈 칸을 채우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 \_\_\_\_\_의 생활목표 정하기

기간	세부목표
단기	나의 일일목표는 _____ 이다.
	나의 주간목표는 _____ 이다.
	나의 월간목표는 _____ 이다.
중기	나는 1-3년 이내에 _____ 을 이룰 것이다.
	나는 3-5년 이내에 _____ 을 이룰 것이다.
장기	10년 후에 나는 _____ 살이 된다.
	그때에 나는 _____ 한 생활을 할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specific)이어야 한다. 가령 행복한 중년이 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하여 행복한 중년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더 좋다. 목표를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측정가능(measurable)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가 되겠다 라는 목표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상, 또는 일주일에 8시간 봉사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더 좋다. 측정 가능한 목표를 만들려면 단위를 사용하면 된다.

셋째, 달성가능(achievable)하여야 한다. 자신의 자원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노력 봉사하는 자원봉사는 하기 힘들 것이다.

넷째, 결과지향적(result-oriented)이어야 한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봉사를 하기 위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봉사를 하면서 나 자신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므로 과정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서로 상생하는 목표가 더 좋다.

다섯째, 시간을 정해 두어야 (time-bounded) 한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이를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한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상태에 맞는 새로운 목표가 다시 창출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기도 한다. 시간을 정하여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큰 우주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근기에 맞게 시간을 정한다.

#### 구성원의 협력을 이끄는 계획과 실천

설정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가정의 생활설계는 당연히 가족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구성원의 협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1) 가족 비전은 반드시 가족 전원이 함께 모여 만든다.

누가 시켜서 갖게 되는 비전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생활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족 비전을 만들어야 실천의지를 갖게 되고 구속력도 생긴다.

2) 가족 비전은 명문화하여 가족이 늘 볼 수 있는 자리에 둔다.

월별로 또는 요일별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목표를 적는다. 세부목표 또는 비전 지침서를 만들어 ①냉장고에 붙여두거나, ②지갑에 넣어두거나, ③식탁유리 밑에 깔아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3) 가족 비전은 가족이외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포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 내 가족의 비전을 말하고 가족의 단합을 스스로 없이 선포함으로써 스스로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이웃과 함께 동참할 기회를 제공한다.

## 우리 가족의 사명

우리 가족의 사명은 \_\_\_\_\_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 사명을 실천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_\_\_\_\_을 할 것입니다.

2009년 월 일

가족 전원 서명 \_\_\_\_\_, \_\_\_\_\_, \_\_\_\_\_

※ 가족서명 대신 가족사진 붙이기도 가능

**4) 가족 비전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격려한다.**

일주일에 한번 온가족이 모여 실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서로에게 각자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가족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른 가족원의 실천의지를 자극할 것이다. 만일 변화에 반응이 없는 가족원이 있다면 그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만든다.

**5) 가족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목록을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실현되는 꿈은 없다. 하루 하루 직접 실천한 행동이 하나, 하나 쌓여서 목표에 도달하고 비전을 실현하고 더 큰 비전을 갖게 한다. 이를 위하여 세부목표에 대한 행동표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행동표준은 수정될 수 있다.

세부목표	행동표준	실천여부
체중감량하기	하루 줄넘기 100번하기	O, X
사랑이 가득한 가정 만들기	하루 한번이상 스킨쉽하기	O, X
화목한 가정 만들기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O, X
		O, X
		O, X

**6) 가족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생활철학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가족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가정을 잘 지키려면 가정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을 갖는다. 실존사상은 가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김외숙외, 1996). 다른 곳도 아닌 나의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미 가정, 가족의 의미가 상실한 것이다. 가족원에게 존재감을 실어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곳이 가정이다. 나아가 우리의 이웃도 그 각각이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느끼게 하여야 한다.

**7) 가정운영자로서의 자질을 스스로 갖추도록 노력한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특히 결혼이민자는 생활을 설계하는 계획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자, 바람직한 소비자,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지도, 격려해주는 지도자, 창의성을 보유한 창조적 경영인,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성숙한 경영인,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을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경영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자

홍미기 교수(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 지역사회 생활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서비스 연계자

## 1. 이민법

### 1) 외국인 등록

외국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머물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장기체류를 하므로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한 뒤,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해야 한다.

#### ○ 언제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 ○ 어디서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신청서, 사진(3x4cm)2매,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배우자 또는 자격이 있는 제3자, 공증불필요), 혼인관계증명서

#### ○ 재발급

분실, 훼손, 기재사항(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등) 변경 등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재발급 시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재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구 외국인등록증 (분실한 경우에는 소명자료 첨부),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만원)

### 2) 체류기간 연장

결혼이민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함께하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 언제: 체류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 어디서: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제출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수료(정부수입인지 2만원)

▶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면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 3) 영주자격신청

한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살았다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체류기간연장을 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출신국가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언제: 한국 체류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 어디서: 거주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체류자격부여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이름이 있어야 함)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관련서류(다음 중 1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수수료(정부수입인지 5만원)

▶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 또는 별거를 하게 되었을 경우,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문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영주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배우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지 한국공관에서 배우자자격을 다시 신청해 입국한 뒤 2년을 체류해야 영주자격부여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발은 외국인 등은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없다.

- ▶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4) 귀화(국적취득)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는 간이귀화를 신청,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간이 귀화허가를 받으려면 본이 또는 배우자(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가 직업이 있거나 자산을 소유해 생계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상식이 있어야 한다.

##### ○ 신청요건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로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 또는 별거,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공통]

귀화허가신청서(사진(4x5cm)부착) 작성 후 첫 장 사본/ 여권사본/ 귀화진술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 또는 이혼사실 등재) 및 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유지 시)/ 신원진술서 및 사본/ 재산관련서류(다음 중 1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000만원 이상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수수료(정부수입인지 10만원)

###### [개인사유별 추가서류]

- 이혼 또는 별거 중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중단된 사유서(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및 법원판결문, 공인된 여성단체(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참고) 확인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한국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판결문, 남편 또는 남편의 4촌 이내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등 양육사실입증서류 첨부

○ 어디서

국적업무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취급한다.

서울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6 319-2 tel) 02-2650-6212~4

- ▶ 귀화허가신청을 할 때는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동행이 불가능할 때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 5) 귀화(국적취득) 절차

○ 자격조사 및 면접

- 신청을 하면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접심사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 면접심사일 2~4주 전에 통지서가 도착하므로 신청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결혼이민자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면접을 통해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 심사한다.
- 면접에서 떨어질 경우 2회 더 면접심사를 받을 수 있다.

○ 귀화허가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 외국국적 포기, 주민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신고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가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는 귀화허가통지서와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 외국국적포기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이민여성의 외국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서 국적포기신고를 하고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담당자에게 제출한 뒤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 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취득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 한국 내에 해당국의 대사관이 없거나 본국의 관련법 상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연장을 해야 한다.

○ 주민등록

- 귀화허가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 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이 발급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귀화허가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 ▶ 귀화허가통지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한국국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한국국적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 국적취득신고서,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신청인의 기본증명서<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면서 외국이름을 한글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서 등본을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2. 의료

### 1)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내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병·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이 적다.
-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사망한 때에는 장제비 일부를 지급한다.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한다.

○ 이렇게 가입한다.

-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는다.
-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된다.
-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부부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에서 가입한다. 가입방법은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 보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낸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임금의 5.08%(2008년 적용)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각 2.54%)부담을 하게 된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적용점수에 148.9원(2008년 적용)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각지사 (1577-1000)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 (02-3270-9161, 9338, 9835), 홈페이지: [www.nhic.or.kr](http://www.nhic.or.kr)

2) 의료급여

○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 질병·부상 및 출산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불한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누구나 의료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의료급여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수급대상자 및 혜택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목적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된다.

- 수급권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있다.

구분	1종	2종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li> <li>•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희귀난치성 질환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li> <li>•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li> </ul>
입원	급여비용 면제	급여비용의 15%(식비:680원/1식) *암 등 중증질환자는 10%
외래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의료기관: 1,500원 3차의료기관: 2,0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 *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입산부, 18세 미만 아동 등은 본인부담금 없음	보건소: 없음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 3차의료기관: 급여비용의 15% (만성질환자의 2차의료기관 외래진료는 1,000원)
약국	처방전 당 500원	처방전 당 500원

\* 문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기관 인력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건강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가구를 방문하여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사업이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소득 고위험 가족을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가족을 중점대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노인이 1순위이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은 3순위에 해당한다.
  - 본인의 해당 여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관련부서에 확인해 본다.
  
- 어떤 것을 관리하나요?
  - 뇌졸중, 고혈압, 당뇨, 암, 치매, 정신질환 등 주요한 건강문제 관리
  - 만성질환, 장애, 사고 등 가족의 건강문제 관리
  - 임신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성장발달 지도
  - 건강교육 및 상담, 판단에 따라 정기적인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한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 내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관련 부서에 신청한다.
  - 신청하면 담당자가 신청자 가족의 건강문제 및 방문 필요성 정도 등을 파악한다.
  - \* 문의: 시·군·구·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각 지역 보건소

### 4) 무료진료

- 무료진료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게 입원비 및 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어디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립의료원, 각 지역의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 어떻게 이용하나요?

-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등에 이용신청을 한다.
- 신청할 때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쉼터와 연계되어 무료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결혼이민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으로 건강보험 등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임을 관련단체에서 확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지원비용

-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사유서를 제출하면 500만원까지 추가지원
- 1회당 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

\*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의료원,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먼저 상담한다.

○ 무료진료기관 명단

지 역	의료기관 전화번호
서 울	국립의료원 02)2260-7114
	서울의료원 02)3430-0201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외국인노동자의원 02)863-9966
	시립동부병원 02)920-9114

### 3. 출산/ 양육

#### 1) 임신과 건강

○ 임신 확인은 어떻게?

- 임신호르몬 검사: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구입해 소량의 소변을 테스트용기에 떨어뜨리거나 막대를 소변에 담가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성관계 후 2주가 지나면 임신진담이 가능



하다. 의료기관에 가서 피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알 수 있다.

- 초음파 검사: 성관계 후 2~2.5주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4주 정도 지난 후에는 태아의 심장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임신부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혈액검사	일반혈액검사	빈혈, 에이즈, 풍진 등의 질병 여부를 검사한다.
	혈액형검사	ABO혈액형과 Rh인자를 검사한다.
	매독검사	태아사망 및 유산을 초래하는 매독을 검사한다.
	간염검사	산모가 간염이 있으면 신생아도 감염될 위험이 크다.
소변검사		임신중독증, 당뇨병, 요로감염 여부 등을 진단한다.
초음파검사		자궁 내부를 보면서 태아 성장발육 정도, 태아의 위치나 모양, 기형유무 등을 알 수 있다.

○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꼭 주의할 점들

-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다. 질병이 있다면 꼭 치료를 받는다.
- 약을 먹을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의한 뒤에 복용해야 한다.
- 술이나 담배는 절대 금지한다.
- 칼로리와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다. 보통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철분은 임신 5개월부터는 별도로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 무리한 중노동이나 위험한 작업을 피해야 한다.
-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한다.

2) 보건소

- 산전검사: 보건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임신조기진단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임신부체조교실, 출산준비교실, 아가마사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임신, 태교, 분만 관련 서적 및 CD, 비디오 등을 대여한다.
- 철분제 등 지원: 임신 5개월 이상이면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한다.

○ 임신부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저소득층 임신부와 영유아는 필요한 보충식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구로서 임신, 출산 후 5개월 이내, 수유단계의 여성(12개월까지), 영유아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영양식품 패키지(6종)를 무료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굴 등 대상자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적합한 식품을 제공</li> </ul> </li> <li>• 무료 영양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달에 1번 이상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 가정방문교육을 함께 (야간이나 주말에도) 시행</li> </ul> </li> </ul>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처: 보건소</li> <li>• 필요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사본</li> <li>-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 등</li> </ul> </li> </ul>

○ 선천성대사이상 무료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정신지체 등 장애를 초래하는 무서운 병이다.
- 모든 신생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며, 이 질환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간단한 검사를 통해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등 6항목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유무를 알 수 있다.
- 검사 후 병이 있으면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나 특수조제 분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모든 신생아는 출생한 연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p>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인 가정의 아픈 신생아는 특수조제 분유 및 의료비를 지원한다.</p> <p>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명되면 검사비용을 지원한다.</p> <p>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조제 분유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p>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처: 보건소</li> <li>• 필요한 서류: 의사진단서(처음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영수증(특수조제 분유 구입비, 의료비, 약값), 입급계좌통장 사본(처음 신청할 때), 건강보험 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li> </ul>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체중이 2.5kg 미만이거나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 하며, 선천성이상아는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으로 인해 신생아 때 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기를 말한다.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미만인 가정의 신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인 경우(단,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셋째 이상 아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li> </ul>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숙아: 출생 때 체중에 따라 지원(500~1,000만원)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확인한다.</li> <li>•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이면 전액, 100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1인당 최고 지원액은 500만원이다.</li> </ul>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처: 보건소</li> <li>•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li> <li>• 필요한 서류: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신고서(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li> </ul>

3)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 신생아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 기간: 2주(12일), 짝둥이(18일)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처: 거주지 보건소</li> <li>•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li> <li>• 필요한 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li> </ul>

○ 가구원 수 별 소득수준 (2008년도 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 4) 예방접종

○ 예방접종의 종류와 접종 시기 및 횟수

(나이는 만 나이임)

	대상전염병	백신	접종횟수	시기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	BCG	1회	생후 4주 이내 (1회)	
	B형간염	HepB	3회	0-1-6개월 (3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기초 4회 추가 1회	2-4-6개월 (3회) 추가 15~18개월 4~6세	
		Td	추가 1회	추가 11~12세	
	소아마비(폴리오)	IPV	기초 3회 추가 1회	2-4-6개월(3회) 추가 4~6세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기초 1회 추가 1회	12~15개월 (1회) 추가 4~6세	
	일본뇌염	(사백신) JEV	기초 3회 추가 2회	12-24개월 (2회)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추가 6세, 12세	
	수두	Var	1회	12~15개월 (1회)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Flu	6개월~9세 미만 2회 이후 매년 1회	6개월 이상
	장티푸스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경구용	3~4회	6세 이상
			주사용	기초 1회 추가 1회	2세 이상
	신증후군출혈열		3회	0개월	
기타 예방 접종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 b	4회	2-4-6개월 12~15개월	
	A형 간염	HepA	기초 1회 추가 1회 (기초접종 후 6~12개월 후)	1~16세	
	폐구균폐렴	PCV	1~4회	2, 4, 6 개월 추가 12~15개월	

## 4. 자녀교육

### 1) 한국의 교육제도

- 보육시설: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시키는 시설
- 유치원: 3~5세 유아들이 취학 전에 다니는 교육기관
- 초등학교: 6년 과정으로 만 6세부터 입학 가능
- 중학교: 3년 과정
- 고등학교: 3년 과정, 일반계·전문계·과학·특수목적고등학교 등
- 대학교: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3년제인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

###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의 빈곤이나 기타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무료로 제공·지원하는 기관으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 이용대상: 저소득층가정 자녀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
- 신청방법: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신청을 하면 됨
- 이용시간: 주 5일 8시간 이상 이용 가능하며, 지역여건과 센터의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됨

#### ○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교육 프로그램	학습, 숙제지도, 예체능교육 등
복지 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연결
문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 참고: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www.jckh.org](http://www.jckh.org)

지역아동정보센터: [www.icareinfo.info](http://www.icareinfo.info)

### 3)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부모의 월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보다 적은 가구  
(2008년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월 398만원)
-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및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 ○ 기본보조금 제도 도입·시행

- 국·공립 시설에 비해 보육여건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육·교육비 차등지원 확대

- 저소득가구의 5세 미만 영유아 보육료와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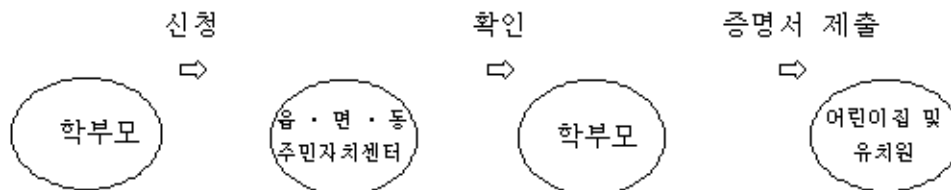
#### ○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교육비 지원 확대

- '09년부터는 만 5세의 취학 직전 아동이 있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무상보육·교육을 확대한다.

#### ○ 다자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2009년부터 두 자녀 이상이 교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교육비의 50%까지 추가 지원한다.

#### ○ 지원 절차



- \*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받지 않아도 됨)

#### ○ 신청방법

- 보호자(부모 및 기타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

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 필요한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5. 고용

### 1) 일자리 찾는 방법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잡넷([www.jobnet.go.kr](http://www.jobnet.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잡넷은 여러 취업사이트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정보를 한곳에서 구축한 검색사이트로 구직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 워크넷([www.work.go.kr](http://www.work.go.kr))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관련 사이트로 직업 및 일자리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http://know.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이버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도와준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http://www.jobcenter.go.k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무료취업 알선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며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이트에서 연결되는 지역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거주지와 가까운 전국의 지부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http://www.vocation.or.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다.

-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www.womenwork.or.kr](http://www.womenwork.or.kr))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취업 및 복지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지자체에서도 무료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 전화로 노동부종합상담센터(1544-1350), 노동부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여도 취업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2)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방법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www.jobcenter.go.kr](http://www.jobcenter.go.kr))

한국국적이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전직 실업자 훈련’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은 무료이며 식비와 훈련수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 직업훈련종합정보망([www.hrd.go.kr](http://www.hrd.go.kr))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종합정보망 HRD-Net을 통해 알아보면 직업훈련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타 직업훈련

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여성회관 등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직업훈련도 있다.

###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모성을 보호한다.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 포함,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다른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 포함)인 근로자가 해고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과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신청절차: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서·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인정 여부 통보 → 실업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 실업인정 → 실업급여지급

○ 산전후 휴가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사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가급여를 받게 된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 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산전후(유·사산)휴가급여신청서와 산전후(유·사산)휴가확인서(사업부 발급)제출

○ 육아휴직

- 한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고 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되며,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신청방법: 고용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제출

\* 참고 사이트: 노동부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www.ei.go.kr](http://www.ei.go.kr).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http://www.welco.or.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http://www.4insure.or.kr)

## 6. 생활보장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에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한다.

#### ○ 신청요건

- 가구의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한국국적취득자로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한국국적이 없고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부서에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주거급여를 제하고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2008년도 현금급여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원/월, 7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187,766원씩 추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87,611	656,544	859,357	1,059,626	1,245,484	1,433,250

- 주거급여: 주거를 위한 집을 빌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08년도 주거현금급여액은 아래 표를 참조한다. (원/월,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3,000원씩 추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000	12,000	17,000	21,000	25,000	29,000	34,000

○ 교육급여(해당자 1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6,000원), 학용품비(44,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32,000원), 학용품비(44,000원) 지원

○ 해산급여: 출산비용 50만원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1인당 40~50만원

○ 기타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2) 자활근로

일한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 기술, 자금 등의 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 ○ 신청요건

- 소득인정액(가구원 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층 이하이며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국적 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 ○ 근로의 종류

- 시장진입형(기술 및 자격증 소지자):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창업이 쉬운 업종에서 근로하며 독립을 계획할 수 있다(예: 세차, 도매 등)
- 인턴형: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예: 이미용, 제과, 제빵 등)
- 사회적 일자리형: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며 자활능력을 키워 시장진입 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예: 간병, 세탁 등)
-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약한 업종으로 관내 사업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 ○ 근로조건

- 근로의 종류에 따라 주당 4~5일, 1일 5~8시간 근무를 하며, 임금(일당 2만원 ~3만원)과 참여기간(6~12개월)에 차이가 있다.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역자활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등과 상담을 거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 \* 문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02-324-1892~3, [www.jahwal.or.kr](http://www.jahwal.or.kr))

### 3) 긴급지원

#### ○ 신청요건

입신 중이거나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 ○ 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생계곤란 시 기본 1개월~최대 4개월 간 현금 또는 현물 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1인 증가 시마다 189,140원씩 증가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1회 300만원 이내의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지원
-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거소가 필요한 자에게 기본 1개월 ~ 최대 4개월 간  
주거비임대료 또는 보호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
- 기타지원: 긴급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 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산·장례 비용 (각  
50만원), 난방비(10월 ~3월, 6만원 현물지원), 연체전기료(50만원)지원 등 지원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지원요청 → 시·군·구로 연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검사
- 적정성 심사 후 지원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환수한다.

\*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4) 모자복지 지원

남편 없이 미성년자를 키우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금전적인 지원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신청요건

한국국적이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라도 남편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자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 지원내용

- 집이 없는 경우: 시설보호(보호기간/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모자가정(3년/2년)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하고 자립준비가 부족한 모자가정(3년/2년)  
 모자임시보호시설: 남편의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받는 모자가정(6개월/3개월)
- 재가보호(복지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지원/아동양육비 지원(만 6세 미만, 월 5만원)/ 복지자금대여(2천만 원 이내의 전세자금 또는 사업자금, 장기저리)/ 영구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한 뒤 결정사항 및 통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다른 복지지원제도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08년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 수급자 기준(원/월)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24,308원씩 증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차상위 소득기준	555,656	941,138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3

\* 차상위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7. 그 외 정보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육아 또는 지리적인 접근성 등의 문제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가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 지도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 부부, 부모자녀, 시부모 및 기타 가족관련 상담
- 한국생활 적응, 다문화 이해, 자녀양육 및 가정문제 등 상담을 통한 고충처리역할 수행
- 지역사회복지관, 보건소, 공공기관 등 연계

####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출산을 앞둔 결혼이민자에게는 산전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단기간의 출산전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양육 및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족 및 친인척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 피임법, 임신, 출산, 육아정보 제공
- 다문화가정 문제예방 및 해결, 후속조치를 위한 기관연계
- 실생활에 필요한 문화 및 생활, 영양, 건강, 교육, 관공서 등 정보제공
- 부모의 자녀학습 및 학교생활지도 등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
- 한국생활문화 교육 및 결혼이민자 출신국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 ▶ 방문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어디서나 1577-5432

방문교육서비스는 무료이며,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족은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1577-5432)로 전화를 걸면 가장 가까운 서비스 기관으로 연결돼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에 전화하면,

- 전문상담원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 언어로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인격모독·가족간의 갈등·차별·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긴급호보가 필요할 때 안전한 긴급피난시설 또는 보호시설과 연계해 도움을 주고, 긴급 상황에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의료·법률·수사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 홈페이지([www.wm1366.org](http://www.wm1366.org))를 통한 사이버 상담, 이메일 상담도 가능하다.
- \* 모든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송인동 1253 동보빌딩 306호

### ■ 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한다.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다문화가정문제 상담·심리치료·의료지원·법률지원
- 임신출산교육·육아지도·산전산후 돌봄·신생아용품 지원
- 신체·정신·성적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 임산부 등에게 쉼터 제공
- 한글교육·컴퓨터 교육·무화체험행사·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 상담가능외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태국어

- \* 홈페이지([www.wmigrant.org](http://www.wmigrant.org))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178-68 4층
- \* 전화: 02)3672-8988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및 요금을 감면해 준다.

- 주민세(개인 균등할)비 과세
- TV 수신료 면제
- 주민등록표열람·발급수수료·주민등록증 재발급수수료 면제
-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및 하수도기본량 면제(서울시의 경우)
- 종량제폐기물수수료 감면(쓰레기봉투 지급)
- 복지전화서비스(유선전화: 가입비·이전비·월 기본료·114안내료 면제, 통화료(150도수/월))

-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감면(1만원 범위/월)/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인터넷접속료 30% 감면)
- 전화기본요금 중 1,000~1,200원/월 감면(지역별로 상이(복지전화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 수급자는 제외))
  - 전기요금 20% 할인

### ■ 보건복지콜센터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준다.

-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 복지 서비스: 보육,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 모자복지 등
-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가정폭력, 자살, 아동학대, 응급의료 등
- 의료: 장례,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의료분쟁, 예방접종 등

### ■ 생활과 관련된 기관 홈페이지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취업 직업훈련 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 href="http://www.immigration.go.kr">www.immigration.go.kr</a>
	잡넷	<a href="http://www.jobnet.go.kr">www.jobnet.go.kr</a>
	노동부종합상담센터	<a href="http://www.job.go.kr">www.job.go.kr</a>
	워크넷	<a href="http://www.work.go.kr">www.work.go.kr</a>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a href="http://www.jobcenter.go.kr">www.jobcenter.go.kr</a>
	한국직업정보시스템	know.work.go.kr
	직업훈련종합정보망	<a href="http://www.hrd.go.kr">www.hrd.go.kr</a>
	여성인력개발센터	<a href="http://www.vocation.or.kr">www.vocation.or.kr</a>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a href="http://www.womenwork.or.kr">www.womenwork.or.kr</a>
	고용보험	<a href="http://www.ei.go.kr">www.ei.go.kr</a>
	근로복지공단	<a href="http://www.welco.or.kr">www.welco.or.kr</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a href="http://www.4insure.or.kr">www.4insure.or.kr</a>
생활보장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team.mohw.go.kr
	보건복지콜센터	<a href="http://www.129.go.kr">www.129.go.kr</a>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a href="http://www.jahwal.or.kr">www.jahwal.or.kr</a>
인권보호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a href="http://www.wm1366.org">www.wm1366.org</a>
	이주여성인권센터	<a href="http://www.wmigrant.org">www.wmigrant.org</a>
	대한법률구조공단	<a href="http://www.klac.or.kr">www.klac.or.kr</a>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 href="http://www.lawhome.or.kr">www.lawhome.or.kr</a>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가족모니터링단 온라인 카페	cafe.daum.net/tmfcenter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tmfc.familynet.or.kr

■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전화번호

지원기관	전화번호	긴급상황	전화번호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범죄신고	112
국민건강보험상담	1577-1000	화재·구급·구조신고	119
노동부고용지원센터	1588-1919	성매매·학교폭력	117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학대	1391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응급질병상담·병원안내	1339
국민건강보험상담 (외국인전용)	02)3270-9161 02)3270-9338	통역서비스	1644-0644 1577-0177

■ 주한 대사관

국명	전화번호	주소
방글라데시	02)796-405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캄보디아	02)3785-104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34
중국	02)738-1038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
에콰도르	02)739-2401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인도네시아	02)783-56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일본	02)2170-5200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카자흐스탄	02)391-8906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71-5
말레이시아	02)795-920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
몽골	02)798-346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미얀마	02)790-38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파키스탄	02)796-825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3
러시아	02)318-2116	서울시 중구 정동 34-16
스리랑카	02)735-2966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태국	02)795-3098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우크라이나	02)790-569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베트남	02)739-2065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가정·성폭력·성매매피해자 상담·의료·수사·법률 통합지원 네트워크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 신체건강 및 가족정서적 건강 관련 서비스

제 목	대 상	신 청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직장가입자 사업자가 직접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주소지 관할 공단
의료급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02-2100-6235) -보건복지 콜센터 129 -해당 시, 군, 구청 사회복지과 -읍, 면, 동사무소
무료진료사업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 거주 중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 국적의 여성 배우자와 그 자녀	의료원/적십자병원/국립의료원/ 시·도지사 인증 의료기관/시·도 보건위생과/보건(지)소/무료진소 보건복지부공공의료팀(031-440-9134~6)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 직접내방 전화상담(1577-0199)
방문보건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	-지역 내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02-2110-6290)
건강가정지원센터	- 모든 가족 - 가족의 정서적 문제해결을 원하는 가족 - 가족내 의사소통 문제를 가진 가족 - 보다 가족내 행복증진을 원하는 가족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웹사이트 ( <a href="http://www.familynet.or.kr">www.familynet.or.kr</a> )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 통역서비스 지원 기관

기 관	전화번호	지원언어
노봉부, 지방노동관서 (19개 센터)	1544-1350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스리랑카어/태국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중국어/영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88-2144	영어/중국어/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파키스탄/필리핀어/태국어/우즈베키스탄어/스리랑카어/방글라데시어
한국산업인력 공단	02-3271-9451	영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스리랑카어/몽골어
한국국제노동재단	1577-0177	영어/베트남어/몽골어/중국어/태국어
서울 글로벌 센터	2-1688-0120	
서울의 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577-5432	통번역사 활동

■ 자녀교육을 위한 포털 사이트

구 분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어린이용	주니어 네이버	jr.naver.com
	야후 꾸러기	kr.kids.yahoo.com
	다음 꿈나무	kids.daum.net
	엠키즈	kids.empas.com
초등학생 교육용	에듀피아	www.edupia.com
	에듀박스	www.edubox.co.kr
	에듀넷	www.edunet4u.net
	에듀모아	<a href="http://www.eduoa.com">www.eduoa.com</a>
도서관	국립도서관	<a href="http://www.nl.go.kr">http://www.nl.go.kr</a>
	국회도서관	<a href="http://www.nanet.go.kr">http://www.nanet.go.kr</a>

■ 예방접종정보 & 아기의 예방접종관리

구 분	홈페이지 주소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a href="http://nip.cdc.go.kr">http://nip.cdc.go.kr</a>
예방접종 행정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홍역퇴치 5개년 사업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a href="http://ir.cdc.go.kr">http://ir.cdc.go.kr</a>
보건소 대표홈	<a href="http://chc.mohw.go.kr">http://chc.mohw.go.kr</a>

■ 교통관련 포털 사이트

구 분	홈페이지 주소
노선 1~4호선 서울 메트로	<a href="http://www.seoulsubway.co.kr">www.seoulsubway.co.kr</a>
노선 5~8호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사	<a href="http://www.smart.co.kr">www.smart.co.kr</a>
기차 승차권 예매	<a href="http://www.korail.com">www.korail.com</a>
국내항공선 대한항공	<a href="http://www.koreanair.co.kr">www.koreanair.co.kr</a>
아시아나 항공	<a href="http://www.flyasiana.com">www.flyasiana.com</a>

■ 학교폭력 피해자 신고방법

-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센터: 국번없이 117
- 위기상담센터: 1588-9128
-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긴급전화 1388

■ 서울문화관광: [www.visitseoul.net](http://www.visitseoul.net)

<참고 서울 베스트 100(2008), 서울특별시 관광진흥담당관

■ 서울특별시 운영 120 다산 콜센터

- 서울시 관련 모든 문의 국번없이 120 (휴대폰·시외 02-120)
- 상담분야  
교통, 수도, 주택건축, 임대차 상담, 환경오염, 예산낭비 신고, 문화체육행사 안내, 외국어(영,중,일)상담, 무료법률상담 등 서울시 관련 모든 문의 안내·상담
- 상담시간: 평일 08:00~19:00, 주말 등 휴일 09:00~17:00  
(야간: 상담예약, 당직실 연결 등)





# **다문화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 부부관계, -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관계, 가족 의사소통**

**박정운 교수(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다문화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 부부관계, -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족관계, 가족 의사소통

## 1.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

### 1)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일반적으로 U자형의 곡선을 그린다

### 2) 부부 적응

#### (1) 부부 적응 유형

##### ① 갈등이 습관화된 유형

부부는 긴장, 갈등, 말다툼이 계속 되며 서로 비난하는 유형이다.

##### ② 생기를 잃은 유형

결혼초기에는 사랑하는 감정이나 적극적인 관계가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하고 주로 부부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가지는 유형이다.

##### ③ 소극적-동조적 유형

외형적으로는 생기를 잃은 유형의 부부와 유사하나 다른 점은 결혼 초기부터 부부가 서로 몰입되지 않는 유형이다.

##### ④ 생기있는 유형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자녀를 사랑하는 등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직업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유형이다.

##### ⑤ 통합적 유형

부부가 그들의 생활에서 보다 많은 부분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며 성실하게 참여하는 유형이다.

#### (2) 부부 적응의 영향요인

##### ① 결혼 전 요인

##### ② 사회 인구학적 요인

##### ③ 상호작용요인

## 2) 부부 역할

### (1) 역할

- 개인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으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주어지는 행동유형이나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한다.
- 부부역할은 역할기대, 역할인지, 역할수행, 역할평가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 (2) 맞벌이 부부역할

- 맞벌이 부부역할 유형  
맞벌이의 동기에 따라서 생계형, 내조형, 자아실현형, 여가활용형이 있다.
- 맞벌이 부부역할 수행의 문제
  - 시간갈등
  - 역할갈등
  - 자녀양육 문제 : 보육시설, 보육비, 정부지원 부족 등

## 3) 부부권력

### (1) 권력기반

- 특별한 상황에서 가족성원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을 의미한다.
- 권력기반은 보상권력, 강제권력, 합법적권력, 전문성권력, 관계권력을 포함한다.
- 권력과정은 의사결정이나 협상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상호작용기술을 의미한다.
- 권력결과는 권력의 상호작용 결과 누가 이기며 누가 마지막 결정권을 소유하는가로 분류되는데 남편지배형, 부인지배형, 부부자율형, 부부공동형(협동형)이다.

## 4) 부부 갈등

### (1) 갈등 요인

친밀감, 근본적 차이,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권력의 비균등성, 일상생활의 불일치, 서로 다른 역할기대, 경쟁성을 포함한다.



## (2) 갈등해결 유형

### ① 관계추구형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노력하는 유형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맞으려고 한다.

### ② 냉담자형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유형이다.

### ③ 무기력자형

삶의 어떤 부분에서 조직력이 부족하여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다.

### ④ 과잉반응자형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빠르게 충고하고 도움을 주는 유형이다.

### ⑤ 비난자형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긴장을 하며 전투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유형이다.

## (3) 갈등해결 장애요인

인신공격,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 책임의 회피, 원인보다 증상에 치중, 지나친 지성화, 의사소통의 부족, 의견의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부족, 피로, 극도의 분노 등이 해당된다.

## (4) 부부갈등 건설적 해결방안

- 성인의 입장에서 협상하기
- 최후통첩 하지 않기
- 한 사람이 지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지는 것이라는 인식하기
-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하기
- 비난과 공격을 회피하기
-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 불일치를 덮어두는 방법으로 애정을 사용하지 않기
- 치사하게 싸우지 않기 : 자신의 속내 감추기, 쉬지 않고 질문하기
- 핵심 쟁점과 현재 상황에 초점을 두어라.
- 긴장완화로 유머사용하기
- 타임아웃(정지), 파울(반칙) 등을 부르기
- 결말을 내리려고 노력하기

## 2) 부모자녀관계

### (1) 부모됨의 선택

- ①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입장

- 사회적지지 : 무자녀 부부에 대한 사회적 압력
  - 개인적 보상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기회 증가
  - 인류의 보존
- ② 자녀 출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
- 인구 증가의 문제
  - 모성 본능에 대한 비판
  - 자녀로 인한 부담감
  - 경제적 이유

## (2) 부모의 역할

- ① 영유아기의 보호와 양육 역할
- ② 자녀 욕구 충족시켜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
- ③ 현대 사회에서는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 특성이 점차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 (3) 바람직한 부모역할

- ① 양육책임감 : 자원제공자와 양육자로서의 역할
- ② 양육참여 : 발달적 지지자, 돌보기 및 지도자, 함께 하는 활동자로서의 역할

=> 자원제공자로서의 역할은 모든 연령의 자녀에게 중요,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발달적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 하는 활동은 연령이 어릴수록 중요하다.

## 2. 결혼이민자가족의 가족관계

### 1) 결혼이민자가족의 적응유형

- ① 순종형  
부부가 결혼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 열세하고 약한 쪽이 우세하고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형이다.
- ② 타협형  
부부가 서로의 문화, 습관, 가치관 등을 충분히 토로하며 서로의 것을 배워가며 타협하는 형이다.
- ③ 일치형  
서로 다른 점이나 일치점을 충분히 토로하고 어느 한 쪽으로 기울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수용하면서 win-win 형으로 만들어 가는 유형이다.

## 2) 결혼이민자 가족의 특성

- 초혼과 재혼비율에서 재혼비율이 높으며, 가구구성에 있어서 부부가족과 시댁과의 동거 비율도 높다(보건복지부, 2005).
- 노부모 부양은 아들, 딸에 관계없이 공평해야 하고, 남편과의 가사분담도 함께 해야 한다는 양성 평등의식이 높다. 의사결정 경향은 공통결정이 많으나 재산관리는 남편이, 자녀양육은 아내가 우선시 되고 있다.(박경은, 2007)
- 부부관계
  - 결혼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았다.(설동훈, 2006, 채옥희 외, 2006)
  - 농촌의 결혼이민자 부부의 연령, 국적취득여부, 상호작용 정도, 언어 및 의사소통 정도, 가부장적 태도에 따라 결혼적응이나 결혼만족도가 달랐다.(양순미, 2006; 장운정, 2007; 채옥희, 2006)
  - 부부갈등원인은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경제적 문제, 음주 등 이었고 폭력경험자 중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많았으며, 신고율은 매우 미미하며, 신고율이나 상담소 이용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설동훈, 2006)
  - 부부갈등해결은 '모국친구'와의 상담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이 가족, 친척이었고, '의논상대가 없음' 비율도 부분적으로 있었으며, 이주여성은 자녀양육, 직업, 친인척과의 관계, 여가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 남성은 개인적인 차이와 일상생활분야, 친인척 관계 등에서 어려움 경험하였다.
-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자녀간의 친밀감과 결속도 높은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 자녀양육이 부부간에 비일관적 태도이어서 엄격하게 양육하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는 아내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아동특성보다는 부모특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주변의 정서적 지지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도희 외, 2007).
  -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 중 양육비 부담(사교육비)의 문제, 숙제 봐 주기(박경은, 2007; 설동훈, 2006; 보건복지부, 2005), 엄마 불인정, 의사소통의 문제(박경은, 2007) 등이 제기되고 있다.
  - 자녀양육은 대부분 이민자 본인이나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 보육 시설 이용에 있어 비용과 연령, 또래와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 자녀와의 대화에서 외국인 어머니들은 이중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박경은, 2007), 부모자녀간 대화정도는 초혼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는다.
  - 결혼이민자 가족 자녀의 생활에 대한 조사에서(우룡, 2007) 조사대상자 청소년들은 가

족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시댁식구와 이주 여성 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불편하며, 본가(친정)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 방문 등이 용이치 않은 점도 불만사항이었다.

### 3. 가족 의사소통

#### 1) 부부의사소통 원리

- 부부간 의사소통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 모든 의사소통은 내용과 관계의 두가지 측면이 있다.
- 모든 사람은 언어적 형태와 비언어적 형태로 의사소통 한다.
- 의사소통자 간의 관계는 단락짓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모든 부부간 의사소통은 관계를 반영하며 대칭적 관계이거나 상보적 관계로 구분된다.

#### 2) 가족의사소통 유형

##### ① 사슬형

양끝에 위치하는 가족원은 한 가족원과만 의사소통하고 중간에 위치한 가족원들은 두 가족원과 의사소통하는 유형이다.

##### ② 원형

사슬형과 유사하지만 사슬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족원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유형이다.

##### ③ Y형

메시지가 한 가족원을 통해 한 가족원 혹은 둘 이상의 가족원에게 전달되는 유형이다.

##### ④ 바퀴형

중심이 되는 한 가족원은 모든 가족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나머지 모든 가족은 중심이 되는 한 가족원과만 의사소통하는 유형이다.

##### ⑤ 완전통로형

모든 가족원들간에 양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 3) 부부의사소통 유형(언어화와 감정노출의 정도에 따라 분류)

##### ① 차단형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잘 표현하지 않으며 감정노출이 적어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유형

##### ② 억제형

자신의 상태를 언어로 잘 표현하지 않으나 감정은 잘 노출하여 다른 사람이 감정의

변화를 쉽게 알 수 있는 유형.

③ 분석형

언어적 표현이 많으나 자신의 감정노출은 적은 유형.

④ 친숙형

언어적 표현이 잘 되고 감정도 직접적으로 언어로 표현하여 자신을 개방하는 유형.

4) 부부 의사소통 장애요인

① 의사소통 규칙의 차이

② 성차에 대한 이해부족

영역	남 성	여 성
스트레스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만이 보낼 수 있는 동굴로 들어간다.</li> <li>-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해결이 되어야 기분이 좋아진다.</li> <li>- 냉담함, 망각, 부주의, 무반응, 건성, 감정표현이 약해진다.</li> <li>- 신문, 휴식, 게임, 운동시합 등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무대를 원한다.</li> <li>-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야 기분이 좋아진다.</li> <li>- 우울, 분노, 답답함, 흥분, 감정표현이 거칠다.</li> <li>- 자신의 문제, 걱정거리, 실망 등을 두서없이 쏟아낸다.</li> </ul>
의사소통 표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적, 논리적, 추리적</li> <li>- 사물(사건) 지향적</li> <li>- 문제해결, 결론이 중요</li> <li>- 백마디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관적, 감정적, 구체적</li> <li>- 관계지향적</li> <li>- 대화 그 자체가 중요</li> <li>- 한마디 말을 백마디로 늘여서 표현</li> </ul>

③ 상대방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④ 자아상의 문제이다.

⑤ 부정적 감정의 통제문제이다.

⑥ 물리적 환경의 문제이다.

⑦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이다.

## 5) 가족간 의사소통 촉진방안

- (1)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다.
- (2) 상대방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 (3) 상대방과의 심리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 (4) 가족간의 공동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
- (5) 의사소통 규칙을 정한다.
- (6) 듣기기술을 사용하고 경청하라.
- (7) 말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한다.
- (8) 감사와 칭찬, 인정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 6) 분노 변화 시키기 (정현숙, 2006)

- (1)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라.
- (2) 자신의 분노를 포기하라.
- (3)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내용	화나지 않는다	약간 화난다	중간 화난다	매우 화난다	극도로 화난다
1. 방금 사온 가전제품이 포장을 풀고 플러그를 꽂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2. 수리공이 수리를 끝낸 후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	1	2	3	4	5
3.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냥 넘어갔는데 유독 당신만 지적되어 주의를 받고 있다.	1	2	3	4	5
4. 당신 차가 진흙탕이나 논두렁에 빠졌다.	1	2	3	4	5
5. 당신이 어떤 사람한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대꾸도 하지 않았다.	1	2	3	4	5
6. 당신이 아는 사람을 보고 아는 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을 못 본 척 한다.	1	2	3	4	5
7. 당신이 커피를 들고 거실로 걸어가는데 아이가 뛰어가다가 치는 바람에 커피가 다 엇질러졌다.	1	2	3	4	5
8. 당신이 옷걸이에 옷을 걸어 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닥에 옷을 떨어뜨리고서도 다시 걸어 놓지 않았다.	1	2	3	4	5
9. 당신이 슈퍼에 갔는데 주인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1	2	3	4	5
10. 빨간 신호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누르고 있다.	1	2	3	4	5
11. 약속시간에 임박해서 상대가 오늘 약속을 취소한다고 전화했다.	1	2	3	4	5
12. 배우자가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틀렸다고 우겨댄다.	1	2	3	4	5
13. 당신이 집중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방해를 한다.	1	2	3	4	5
14. 옆집에서 책이나 도구를 빌려갔는데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15. 당신은 바빠서 야단인데 배우자가 이러쿵저러쿵 투덜거린다.	1	2	3	4	5
16. 중요한 문제를 배우자와 상의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응해 주지 않는다.	1	2	3	4	5
17. 당신이 슈퍼에서 무를 사왔는데 다 찢어 버렸다.	1	2	3	4	5
18.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있다.	1	2	3	4	5
19. 공중전화가 망가져 당신의 돈 50원을 삼켜 버렸다.	1	2	3	4	5
20. 가족들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1	2	3	4	5

본노의 총점: \_\_\_\_\_ 점

# 다문화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

: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비생활교육

계 선 자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다문화가족을 위한 소비생활교육

## 1. 필요성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정부, 각 기관 및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어, 경제문제, 자녀문제 중에서도 생활경제, 소비자정책 및 지원은 다문화정책의 전반의 흐름속에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자리매김 못하고 있는 상황(배순영, 200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본계획(2009~2011)에서 소비자역량강화 중 하나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 실행 즉,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포함(공정거래위원회, 2008). 또한 시민단체 협동으로 결혼이민자 소비자 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등(공정거래위원회·녹색소비자연대, 2008~2009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도 실시) 다문화소비자 정책 및 교육 등 서비스는 이제 시작이며, 그 내용도 단기간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실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소비자 경제교육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시장형태, 화폐에 대한 소개부터, 소비생활, 물건값을 비교하는 방법, 유통기한 등 제품의 표시확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겪게 되는 소비자문제나 소비자문제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주로 교육되고 있음(녹색소비자연대, 2009다문화가정 소비자·경제교육 자료집). 즉 다문화가정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도모하며, 소비자 피해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경제교육을 실시.

현대사회는 뉴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가정에서의 소비생활문화는 물질적으로 더욱 확대되면서 풍요로워 졌고, 소비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동질적, 동시적 소비 트렌드가 보편화 되면서 가정 내의 소비생활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각 가정에서는 이러한 소비트렌드의 영향으로 고급소비생활문화, 친환경적 웰빙 소비생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추구.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인 주부는 출신국에서의 소비생활문화와 한국가정에서의 소비문화가 다르기에 가족간의 소비욕구 및 행동이 다르기에 더욱 경제생활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에서의 소비문제를 살펴보고, 소비자로서 소비문화이해, 소비자권리

와 책임, 재정관리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다문화가정 생활코디네이터가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소비자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도 경제적상황, 교육수준, 지역적 배경, 소비습관 등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나, 결혼이민 여성의 경우 문화적 소수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가중시키기에 이에 대한 대책과 서비스 필요

### ■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비생활 불만족 이유

- 2006년 국내거주 외국인의 소비생활불만족 등 소비행위문제 실태조사결과(한국소비자원, 2006)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소비생활 불만의 주된 원인은 언어소통 곤란(35.9%), 외국인에 대한 배려부족(28.3%), 경제력 부족(22%), 정보부족(19.7%), 국가의 문화 제도적 차이(16.6%) 등. 결혼이민자의 경우 특히 정보부족이 가장 우선적인 소비생활불만족(36.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언어소통 곤란, 외국인에 대한 몰배려 순으로 나타남

## 2. 소비생활문화에 대한 이해

(출처: 계선자, 이연숙 외 공저(2009), 가족과 문화, 신정(7월 근간) 계선자원고 일부임)

### 1) 소비생활문화의 의미

소비행위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욕구자체는 자생적 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 제도, 규범 등에 의해 창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생활문화는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 소비행위의 유형, 소비에 대한 공통적 사고방식 등으로 구성되어진 생활양식을 말함. 즉 소비생활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습득된 지식, 믿음, 기술, 행동들을 모두 포함하는 소비생활양식이며, 아울러 소비자의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만들어내는 소비에 대한 가치와 신념의 체계를 의미(김종구외, 1997).

현대사회에서 소비생활문화는 우리 가족의 삶의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 형성에도 크게 관여.

소비생활문화는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중화되면서 “취향” 또는 “기호”로서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로도 규정된다. 예컨대 소비재는 한 사회에서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며, 표현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용되면서 소비행위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문숙재, 2005) 그러나 사회의 장에 따라 통용되는 상징과 문화적 규칙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생활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손상희, 1997)

소비생활문화는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또한 소비자들은 누구나 단순히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는 개인의 취향, 기호,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소비생활문화를 형성하며 소비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화된 소비행동 즉 베블렌 효과, 속물 효과, 편승 효과, 터브 효과에 의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이 행동을 취하는 경향.

**○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주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남편과 함께 가정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나아가야 하는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출신국에서의 문화적 가치관, 제도, 규범 등에 가지고 있는 신념, 경제관념 및 소비생활습관 등이 한국의 소비문화와 다른점이 많음. 즉, 의식주 생활양식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한 부부간 이견으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며, 가족들의 생활양식과 소비문화에도 영향. 이에 다문화가정,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도 우리의 의식주 및 시장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어 새로운 소비문화 트렌드가 생기고 있는 실정.

**○ 다문화가정 소비생활문화 특징**

- 
- 
- 
- 

**※ 생각해 봅시다**

-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장의 변화  
(과거 남대문 시장 도깨비 시장이라 불리며 수입품 판매상가- 이제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국가별 상품판매시장 증가 등으로 우리의 생활양식에도 일부 변화 등)
- 우리 주위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의 소비생활문화

**○ 소비생활문화와 사회화된 소비 행동**

-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 속물 효과(Snob Effect)
-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
- 터브 효과

- **편승 효과**는 무조건 다른 사람의 소비성향을 쫓아가는 소비행동으로 같은 가격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품을 소비하려는 경향이 강함. 이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재화의 기능적 성질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대중적인 소비성향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남들이 모두 사교육을 시키고, 조기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서 사교육과 조기유학을 시키려는 부모의 경우 편승 효과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인기 TV 드라마에 출연한 유명 연예인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이 불티나게 잘 팔리는 경우도 이러한 편승 효과의 단면 보여주는 예.
- 다문화가정의 경우 일부 결혼이민자 여성은 오래전 우리의 어메리칸 드림 처럼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면 자국의 나라에서 보다 수입도 많고, 한류 드라마 등에서처럼 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게 혼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사람의 소비성향을 쫓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많은 편.

※ **생각해 보기**

- 나의 소비행동은 어떠한가?
- 내 이웃, 내 멘티인 다문화가족, 결혼이민 여성의 소비행동에 미칠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생활코디네이터 활동 시 주의할 점은?

2) **한국의 소비생활문화 트렌드**

- **트렌드**: 일시적인 유행과는 달리 최소한 10년은 유지되는 큰 흐름

(1) **빈곤에서 풍요의 소비생활문화**

1950년대, 60~70년대, 88올림픽 이후, 현재..

(2) **자녀사랑으로 넘치는 소비생활문화**

소수 자녀증가, 교육열풍,

(3) **체면중시의 과소비생활문화**

부모중심의 혼례비용, 한턱문화 등등

(4) **공동체 소비생활문화**

- 관혼상제나 두레·품앗이, 선물문화, 혼수문화 등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소비생활문화의 대표적 예는 두레와 품앗이를 들 수 있다. 두레가 마을사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면 품앗이는 개인적 혹은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문화로서 품앗이를 통해 일하고,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 노래,

춤도 함께 나눔으로써 나눔의 미덕을 보여주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는 정, 가는 정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간 품앗이를 계속하면 할수록 서로간의 정은 더 깊어짐. 품앗이의 전통은 현대사회에서도 이어져 결혼식, 장례식, 생일잔치와 같은 공식적인 의례에 부조금을 주고받거나, 이웃 간에 떡을 나누어 먹는 것도 품앗이의 좋은 예.

- 또한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각 가정에서는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누어 하는 품앗이 운동이 많이 확산. 아이들 과외, 할인점 장보기, 아이 돌봐주기 등 예전에 외부에 맡겼던 일들을 이웃과 서로 도우며 함께 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육아 품앗이는 아이들을 잘 아는 엄마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함께하는 공동육아.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들을 모아 당번을 맡아 부모가 번갈아 공부방을 열고 직접 교사 되기. 또한 지역주민들끼리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김치 담그기, 자동차정비, 컴퓨터교육 등 이웃 간에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필요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품앗이 은행이 있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소비생활문화를 현대사회에 적합하게 계승·발전한다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 소비생활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참고: 2009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 센터와 공통필수사업으로 “이웃사촌 브릿지” 사업실시. 이 사업은 23개 서울시 자치구 센터에서 실시중인데 일부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멘토 또는 멘티로 하여 정서지원, 안부챙기기, 문화체험 등 실시중임)

○ **다문화가족과의 품앗이 생각해 보기**

- 
- 
- 

**(5) 웰빙 소비생활문화**

**(6)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문화**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제품 중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동안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고철덩어리 등 쓰레기가 발생되어 각종 공기,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 그리고 엄청난 음식물찌꺼기, 자동차 매연 등은 환경오염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 소비사회의 자원남용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환경 친화적 소비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서 주목. (환경 친화적 소비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

즉 소비사회의 자원남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 물, 대기를 오염시키고 고갈시킴으로써 회복불가능하게 만듦. 이에 따라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는 지구 생태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존속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원의 남용 억제해야함. 환경오염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소비자

에게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 생산과정에서 환경관리비용이 제품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화될수록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품가격에서의 환경관리비용 부담 커짐. 또한 소비생활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

즉 환경 친화적 소비의 전환이 필요. 환경 친화적 소비의 하나로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소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필요.

○ 소비의 절제

○ 환경 친화적 대체물과 환경 친화적 제품의 이용

-

-

### 3) 합리적 소비생활교육

#### (1)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소비생활문화

#### (2) 합리적 소비생활문화의 활성화 방안

○ 환경 친화적 의식과 소비행동의 전환

○ 체면중심의 명품/ 고급/ 과시소비생활문화 지양

○ 사용가치 중심의 소비생활문화 정착

○ 가족중심의 건전한 소비생활문화

○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소비생활문화 확산

#### ■ 합리적 소비습관/행동 들이기

“ 10원 절약의 소중함을 아는 자는 10억의 위대함도 안다.”

- 각 가정의 소비습관은 생각하기 나름. 재화의 가치는 상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용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더 현명.

○ 과대 포장한 음식은 가능 한한 피하자.

○ 장보러갈 때 장바구니를 사용하자라.

- 장보러갈 때 살 물건 만 사도록 하자.
- 주방용 세제는 적정량 사용하자.
- 음식은 남기지 않을 만큼 만들자.
- 냉장고의 문 여는 횟수를 줄이자.
-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하여 버리자.
- 친환경제품을 애용 하자
- 주변에 친환경제품의 기대효과를 적극 홍보 하자.
- 환경오염 최소 제품을 구매 하자
- 폐품을 재활용 하자.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 유지, 관리 하자
- 가족중심의 여가생활, 소비를 계획 하자.
- 아웃과 함께 품앗이  
(공동 구매, 아이돌보기, 과외, 김장하기 등)를 통한 공동체 소비행동)

#### ※ 생각해 보기

- 우리가정에서 할 수 있는 소비습관 비법
- 결혼이민자 가족의 소비습관을 보고 내 멘티가족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

### 3.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 1) 소비자의 의미 :

- 소비생활을 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사용하는 모든 자연인.
-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최종소비자만을 지칭
- 넓은 의미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게·학교·회사·기관·단체·정부 등등 조직도 포함

#### ※ 소비자 성격

- 획득자, 배분자, 구매행동자, 사용자, 처분자, 영향자,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수행

#### ※ 프로슈머란?

## 2) 소비자 권리(8대권리)와 소비자 책임의식

### (1) 소비자 권리

- ① 안전할 권리 :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생명 및 재산상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② 알 권리: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③ 선택할 권리 :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성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 참석, 기업 소비자 상담실 등등)
-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 물품의 사용과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관련기관 등)
- ⑥ 교육을 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옹호되도록 하기 위한 권리
- ⑦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 소비자 스스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2002년 소비자보호법 제6차 개정안에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명시되고 환경친화적 소비와 관련된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가 규정됨

### (2) 소비자 책임- 5대 책임

- 1980년 아세안 소비자보호선언 이후 국제소비자연맹(IOCU)에 채택, 많은 나라에서 실시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 참여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 단결에 대한 책임)

## 3) 소비자 문제 유형 및 해결방법

### (1) 소비자 문제 의미

소비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족 상태

### (2) 소비자문제의 유형

- ① 정보 문제 : 불완전하거나 그릇된 정보제공, 정보부족 혹은 정보과잉문제, 정보과부하문제, 정보유출 문제
- ② 표시·광고 문제 :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 및 광고, 비방표시 및 광고, 광고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 등



- ③ 안전문제 : 식품, 의약품 안전문제, 각종 가구, 가전제품, 장난감 등 공  
산품 안전문제, 승강기 및 놀이시설의 안전문제 등
- ④ 가격 문제 : 부당한 가격, 가격홍포, 정찰제 불이행 등
- ⑤ 품질 문제 : 품질 불량, 함량부족, 가짜상품, 정찰제 불이행
- ⑥ 거래 문제 : 할부거래 문제, 신용카드 거래 문제,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다단계 판매의 문제, 전자상거래 문제 등
- ⑦ 계약·약관 문제 : 계약 불이행, 불공정 약관문제 등
- ⑧ 구매 후 문제 : 잘못된 수선, 요구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요금, 교환  
이나 환불의 어려움, 다른 물건 배달, 송상된 제품 배달, 배달 지연 등  
(채정숙·유두련·김정희(2004). 정보사회의 소비자과 시장. 도서출판 신정)

**(3) 소비자 피해** : 소비자문제가 심각하여 소비자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 **(4) 소비자 문제 해결방법**

(녹색소비자 연대 2009 결혼이민자 여성 경제교육 자료집)

- 상품을 구입한 가게나 물건을 만든 회사의 소비자 상담실에 연락해서 문제를 설명하고  
교환, 수리, 환불 등 보상 요구
- 한국소비자원, 각 지역의 소비자 단체에서 정보를 제공받거나 중재 요청
- 2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 청하  
기
- 3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법원에 소송을 하여 문제를 해결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문제의 상담과 피해보상
- 소비자 안전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 개선
- 각종 상품에 대한 품질, 성능, 안정성에 대한 검사 실시
- 소비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 소비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 **소비자단체** :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해 주는 일  
 소비자 피해 신고 시 적절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불만처리

- 녹색소비자 연대                    1577-9895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1588-0050
- 서울YWCA                        02-3705-6060
- 소비자시민모임                 02-739-5411
- 전국주부교실중앙회            02-2266-5870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02-325-3300
- 한국소비자연맹                 02-795-1042
- 한국YMCA전국연맹            02-754-7891

#### 4. 재정관리에 대한 이해

출처: 계선자 외(2009), 가족과 문화, 서울: 신정 근간-7월 발간예정 교재

1) **재정관리의 필요성** : 재정관리는 인생 항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

- 가정의 재정적 자립 안정
- 재정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예방
- 생애 만족의 극대화
- 예기치 못한 경제적 위기의 극복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가계의 재정적 손실예방

※ 재정관리를 위협하는 요인

- 저축과 소비 유형의 차이
- 저축에 대한 계획의 부재
- 신용카드의 과다 사용
- 구매, 도박 중독
- 실업/ 실직

2) **재정목표 설정하기**

우리 가족원은의 재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벌기), 가족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해야 하며(쓰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하고(모으기), 자산소극의 극대화를 위해 재테크를 해야 하며(굴리기), 노후에 궁색하게 지내지 않기 위해 노후생활 설계를 해야 한다(노후 대비하기). 이를 위해서는 근검절약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장단기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재정 목표는

가족원의 요구에 따라 목표의 내용, 설정 빈도, 달성 기간에 따라 설정

(예, 무형의 것 또는 소비재/기간상으로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로 구분 될 수도 있다)

○ 재정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우며 목표달성 기간, 자금조달 방법, 필요한 액수 등을 산정해야 한다.

- 목표를 세울 때는 실행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나누어 설정하라
- 가족생활주기 단계를 고려하여 장·단기 목표를 세워라.
- 향후 1년, 혹은 3년, 5년, 10년 내에 이루고 싶은 재정 목표 구체화 하라.
-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라
- 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
- 재무 목표 설정 후 가정경제 3단계 전략을 세워보라

**가정경제 평가기**

■ 1단계: 계획 수립(plan)

- 가족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했는가?
- 자녀 교육 설계(진로와 교육비)를 계획했는가?
- 은퇴 계획(노후생활비 등)이 있는가?
- 교육 및 은퇴 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했는가?

■ 2단계: 실행(do)

- 1년, 5년, 10년 단위의 장·단기 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했는가?
- 자산을 부동산, 주식, 채권, 비상자금 등으로 분산투자하고 있는가?
-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웠는가?
-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재무설계사(FP)가 있는가?

■ 3단계: 사후점검(see)

-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 가족구성원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역할을 재점검하는가?
- 계획대비 실적이 미진한 부야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교육 및 은퇴 자금 조달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했는가?

출처: 동아일보, 2005.1.13)

3) 가계의 씬씀이 조정 하고 가계 투명하게 경영하기

○ 예산세우고 지키기

- 가계예산을 세우는 것은 소득과 지출을 맞추는 것으로 씬씀이 적절히 통제해서 비능률을 없애고 낭비 최소화해 투자수익 꾀하는 데 매우 효과적.
- 예산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 습관화,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과 가족간 가계문제로 갈등 예방

■ 예산 설정 할 때 고려사항

-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서 쓴 돈의 지출내용 검토
- 1개월 1년을 병행하여 회계기간 정하기
- 예비비를 먼저 5~10% 확정해 놓고 지출항목별로 금액을 배분하기
- 예산을 실행할 때마다 가계부에 기록하기
-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회의를 열어 투명하게 결산하기

- 가계의 대차대조표 작성하기
- 가족원이 함께 가계를 경영하기
- 결산은 꼭 하고 가계부를 기록하기
- 자녀 교육설계와 노후 설계 동시에
- 가정경영을 위한 정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하라

※ 상기 내용을 다문화가정이 요청시 코디할 때 주의 할 점은 무엇인가?

- 
- 
- 

■ 장단기 재정목표

- 남편, 부인의 단기, 장기 재정목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까 논의하기

※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이 원한다면

개략적으로도라도 자원 및 목표 파악해 보기와 소득과 지출의 흐름 파악하기

예) 부인은 베트남에 월 30만원을 보내기로 하고 혼인했으나 처음 5개월은 남편이 부인의 친정부모님께 보냄.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못보내고 있어 부인이 우울해 하거나 부부간 다툼이 있다면 코디네이터로서 나는 어떻게 할까?

■ 대차대조표 작성하기

- 아래의 표 왼쪽에  
재산 목록(주택가격,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귀금속, 저축 등 금융자산...)을 적는다.
- 오른쪽에는 부채(은행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할부금, 빌린 돈 등)를 적는다.
- 왼쪽의 재산 합계에서 오른쪽의 부채 합계를 뺀다.

재 산		부 채	
재산목록	현재 금액(원)	부채목록	금액(원)
-현재 살고 있는 집 가격이나 보증금 -정기예금 -부동산 -투자신탁 -보험금 -자동차 -보석 장신구 -금 - - -		-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금 - 남에게 집을 빌려준 경우 전세보증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빌린 돈 - - - -	
총계	원	총계	원
순자산(재산-부채)	원		
평가			

■ 평가

- 표를 보고 왼쪽 재산이 많아 순자산이 생기면 가계 재정은 안정적  
오른쪽 부채가 더 많으면 가계재정은 불안정
- 부채가 더 많으면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 최소 1년에 한 번은 대차대조표 작성하라

## ※ 아이디어 전략 나누기- 조별 활동

### □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소비생활,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

(예, 금융기관 활용하기, 부채(대출) 줄이기, 시장가기전에 물건구매계획 세우기, 시장 함께 가기, 대형마트 등을 탐방하며 가격비교, 상품이름, 정보, 크기, 마크 등 살펴보기, 대차대조표(가정 전체것이 어렵다면 생활비나 용돈 등을 가계부에 기입하기, 자녀의 용돈 및 경제교육, 물건 고르기, 품질마크, 위해정보를 제공해주는 마크, 공산품 안전 그림표지, 의류 등 크기 표시, 계량단위 등(집크기, 육류, 채소 중량단위 등),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녹색소비 알려주기, 가전제품 사용, 전기와 가스 절약방법, 가계부 쓰기, 국제전화 싸게 걸기, 절세하기 등등)

- 5~6인 1팀으로 구성 하여  
강사의 설명을 듣고 팀원간 토론을 통해 기획하기
- 팀별 내용을 전지에 옮긴 후 발표
- 평가 및 의견나누기

### 참고문헌

- 계선자·이연숙·이정우 외(2009), 가족과 문화, 신정(7월 발간예정)
- 김기옥·허경옥·정순희·김혜선(2001) 소비자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 김명자·계선자·강기정·김연화·박미금·박수선·송말희·유지선·이미선  
(2009), 아는 만큼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양서원.
- 김민정·김성숙(2005) 소비문화와 트렌드, 태일사
- 김상일·강이주·이희숙·허경옥·정순희(2000) 소비자 의사결정, 교문사
- 문숙재·여운경(2005) 소비트렌드와 마케팅, 신정
- 박경미(1998) 현대소비문화와 한국소비문화에 관한 고찰, 소비자학연구 9(1), 17-32
- 배순영(2008), 다문화사회 소비자정책 과제와 방향, 한국소비자원.
- 안길상(2001) 네트워크사회의 소비트렌드, 산업과 경영 13(2), pp261-276.
- 장흥섭·안승철(1999) 현대소비자론 삼영사
- 제일기획(2000) 2000년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행동, 제일기획 브랜드컨설팅그룹
- 채정숙·유두련·김정희(2004), 정보사회의 소비자와 시장, 도서출판 신정.

# 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를 위한 사업안내 및 토론

김 연 화 팀장(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팀)

# 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를 위한 사업안내 및 토론

## 1.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에게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천 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결혼이민 여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한국에서의 가족, 사회생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기 간** : 2009.6.17~10.30

양성교육 2009. 6.17~ 6.19 09:30~17:30 (총 24시간)

보수교육 - 자치구센터별 3시간(7월~10월 중 실시)

- 서울시센터주최 보수교육 및 사례발표

(2009.9.9 09:00~12:00) 3시간

활 동 : 2009.7. ~2009.10.30

3) **대 상** :

- 다문화가족생활코디네이터 - 자치구 센터 추천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에 대한 기초 이해 및 전문지식을 갖고 전문 활동가로서 자격을 갖춘 여성
- 결혼이민자 여성, 가족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과 가족

※ 지정 시범센터 : 관악구, 중랑구건강가정지원센터 : 5명 생활코디네이터  
그 외 자치구 센터 : 1-2명 추천자



4) 추진체계

구 분	담당업무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위원TF팀 구성</li> <li>-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1월-11월)</li> <li>-다문화가정 요구도 조사분석(3월-6월)</li> <li>-양성교재 집필 및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6월)</li> <li>-사업예산 집행(1월-11월)</li> <li>-코디네이터 활동 관리(7월-10월)</li> <li>-보수교육 및 사례발표회 (9월)</li> <li>-자치구 센터 실무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6월~11월)</li> <li>-프로그램 평가 및 정산(11월)</li> <li>-사업평가 및 보고서 제작 배포(12월)</li> </ul>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참여 (1월-11월)</li> <li>-실무자 및 이민자 심층인터뷰 협조(3월)</li> <li>-코디네이터 양성교육생 추천, 이용 결혼이민자 선정 (6월)</li> <li>-코디네이터 활동 연계 및 슈퍼비전(7월~10월)</li> <li>-보수교육 및 평가지원(7월~10월)</li> <li>-자조모임 및 회의 진행(7월~10월)</li> <li>-활동보고서 수합 평가 및 보고(11월)</li> </ul> <p><b>※ 지정시범 기관인</b> 관악구,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상기 업무 이외에 사업설명회 별도 실시로 다른 자치구 센터와는 차별화된 부가 프로그램 실시.</p>

## 5) 사업 내용

### (1) 연계 및 활동 횟수

- 시범센터는 코디네이터 1인 결혼이민 여성가족 5 연계
- 시범센터 제외 센터 코디네이터: 1인당 2가정 연계  
각 연계 결혼이민 여성이나 가족에게는 5회 서비스 실시  
5회중 1회는 가정방문 지원서비스 실시

### (2) 활동 내용 \_ 양심영 교수, 강기정 교수 강의 내용 참조

-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자,
- 지역사회 생활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서비스연계자,
-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관리 및 설계자,
- 다문화 가족의 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자임.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행사업계획에 따라 진행

※ 추후 공문으로 사업지침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발송.

### (3) 문서 작성법 : 유인물 참조(별도제공)

서식이해 및 올바른 작성법, 제출기한

- 활동 신청서
- 서약서
- 활동영역점검표
- 다문화가족 이용욕구조사표
- 이용가족 서약서
- 이용가족정보 기록지
- 활동계획서
- 활동일지 : 별도 유인물 참조
- 모니터링 기록지
- 서비스 종결 기록지
- 기 타

(4) 비용 처리

- 
- 

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생활코디네이터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및 다문화가족과의 관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와의 관계

○ 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과의 관계

○ 기관방문 및 다문화가정 방문 시 유의사항

3. 토론 및 발표 :

○ 우리가 가진 보물찾기 : SWAT 분석

○ 지원동기 및 포부

○ 활동시 예상되는 어려움

4. 질의 응답

## <참고 사항> 2009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 ■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최근 우리사회는 국제결혼의 급증, 외국인 유학생, 새터민 증가, 국제교류 등으로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혼 증가로 결혼 이민자 여성 개인과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이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다문화가족 현황(2008년 5월 현재)을 보면 서울거주 외국인은 서울인구의 2.2%를 차지하고 결혼이민자 여성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5,000명에서 2007년 28,000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 간 이혼 또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가족갈등 및 가족건강성 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배려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울시에는 국비지원센터 4곳, 자치구지원센터 2곳)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내 23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부분이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배우자 및 가족 대상 문화이해교육, 가족문화탐방, 다문화가족 여성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자녀 언어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2009년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담당부서를 조직하고 일차적으로 결혼이민자 여성과 가족의 요구를 파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결혼이민자 여성과 그 가족이 서울살이, 가정생활적응 등에 도움이 되도록 기존 자료를 수합하여 재구성한 자료집을 제작하고, 자치구 센터로부터 센터에서 활동중인 자격을 갖춘 지역여성을 1~2명 추천을 받아 생활코디네이터(멘토) 양성을 통해 자치구 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초기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통합을 꾀하는 문화교량자, 다문화가족의 통합적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보조, 지역사회 생활정보제공과 관련기관 서비스연계자, 다문화가족의 생활관리 및 설계 코디, 다문화가족의 가족문제예방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코디네이터이다. 이와 관련 교육수료 후 자치구 센터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후 자치구 센터의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과 서울살이 조기적응을 도와 가족건강성 향상을 돕는 활동을 한다.

현재 3~5월에 걸쳐 결혼이민자, 정책전문가, 실무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하고, 5~6월까지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재를 개발, 6월 17일~19일까지 자치구 센터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통해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양성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는 자치구 센터 다문화사업 실무자의 지도하에 7월부터 10월까지 지역내 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센터 2곳은 관악구센터, 자치구 센터 중 2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지원을 위한 생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생활적응과 함께 지역 여성의 나눔공동체문화조성 및 일자리 창출의 기초자료제공 측면에서도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시의 맞춤형 다문화가족 생활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코디네이터 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 문의: 다문화가족팀(319-9169) 출처: 뉴스레터 4호 2009.5 >

## ■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1577-9337)

2009.6 현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소파1길 2	318-0227(대표전화) 318-816(가족사업팀) 318-8169(다문화가족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8-5 2층	861-3020-3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7-12	3414-9966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강북구 번2동 318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층	987-2567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우현길 34	2606-2017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1571-1	883-9390
광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 3층	458-0622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777-22	830-0450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1동 841 3층	803-7747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995-6800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401호	957-0760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136-1 2층	1센터) 599-3301 다문화) 599-3260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19	3142-5482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9-31 예림빌딩 4층	322-7595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5 서초구민회관 2층	576-2852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73-1 3층	3395-9447
성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라이시움 102호	3290-1660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27-1	443-3844
양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57-16 4층	2065-3400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신길1동사무소 4층	2678-2193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여성문화회관 1층	797-9184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26-45 3층	376-3761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764-3524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 학림관3층	2260-3898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2-2	435-4142
강동구,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7월~8월 개소 예정		

##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9.6 현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 생활과학대학 401	957-1074	국비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거점센터(서울) : 동대문구 센터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사당2동 1136-1	599-3260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14-2 천주교 노동사목회관 내	953-0468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동 465-2	846-5432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27-1	403-3844	(구비지원) 방문사업 x 한국어 문화, 상담,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10 여성문화회관 1층	797-9184	(시비+구비지원)  다문화 가족방문교육 -자녀양육 코디네이터지원사업

**1577-5432**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연결)

**1577-9337**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

## ■ 메모

## 결혼이민자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사례

- 종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 ■ 메모

※ 본 자료집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교재로  
관련법, 기관 및 정보제공 등은 일부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발간 자료인  
"다문화이해(2008)" 자료집 등을 수정편집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의  
자료제공과 결혼이민여성멘토링 프로그램 자료집 제공과 자문해준 서울여성가족재단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서울건강가정-문화다문화가족사업-09

---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생활코디네이터 양성교육교재**

---

---

발행인	송향섭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발행일	2009년 6월 15일
저자	양심영·강기정·계선자·이영호·박정윤 장서연·장명선·홍미기·김연화
기획·편집	김연화·윤송희(다문화가족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1길 2
전화/팩스	Tel. 02) 318-8169, 0227/ Fax. 02) 318-0228
홈페이지	<a href="http://family.seoul.go.kr">http://family.seoul.go.kr</a>

---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저자나 본 센터의 동의 없이 무단 인용이나 인쇄배포는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